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953-01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분법 연구

2019. 12. 17.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953-01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분법 연구

2019. 12. 17.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분법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2. 17.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계 홍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손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원)

000 차 례 000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연구의 추진체계	7
4. 연구의 추진일정	9
제2장 우리나라의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10
1.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연혁	10
2.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분석	17
3. 농어촌 개발계획의 수립·활용현황	61
4.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문제점	72
제3장 주요외국의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95
1. 독 일	95
2. 영 국	103
3. 미 국	108
4. 프랑스	114
5. 일 본	118
6. 시사점	130
제4장 농어촌정비법의 입법체계 개선방안	132
1. 선택가능 관련법제 정비방향 모색	132
2. 분법을 위한 유사사례·기준 분석	143
3. 농어촌정비법의 분법화 방안 제시	173
제5장 결 론	283
1. 입법절차 및 추진전략	283
2.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28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가) 농촌지역개발의 헌법적 요청**

- 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헌법 제121조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도시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과 예산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생활권, 경제권 등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음
- 그 밖에도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 이 헌법 제120조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가적 경제계획의 필요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개별적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한편,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음
- 결국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도시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농·어촌지역을 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 및 농촌지역개발 관계법령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는 전술한 농어민의 주거권, 생활권, 경제권 등 기본권의 충실한 보호를 위한 농촌지역개발 관련법령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라는 입법정비·개선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의 입법체계 정비는 농촌지역개발의 최상위법에 해당하는 헌법적 요청, 즉 농촌지역개발 관련법령의 체계적 정합성 강화에서 그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음

(나) 통합적 계획체계 구축의 미흡

- 전술한 농촌지역개발의 최상위법적 근거인 헌법에 기초하여 「농어촌정비법」(1995.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2004.6) 등이 각각 제정됨
- 이 중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촌지역개발의 근거를 제시하는 “근거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절차법”으로 각각 기능하고 있음
- 특히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내용이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차이가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절차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총 80여 차례 개정을 거쳐 운용되고 있고, 농업농촌종합대책(2004) 및 농촌경관대책(2006)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계획적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 계획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임
 - * 농어촌정비법은 사업의 추진 체계 및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2차례 전부개정을 거쳤고,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하여 23차례 일부개정을 거쳤으며, 55차례의 타법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한편, 농어촌정비법은 농촌산업의 육성 분야가 추가되는 등 각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어 산만한 입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사업 간 계획수립과 추진절차에서 중복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음

(타)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 농촌다움의 보전,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농촌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발생, 각 사업 간 통합·연계의 필요성 증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정비법의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입법체계 정비에서는 중앙·지방 농정의 연계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농정의 실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先)계획·(後)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민박, 관광농원 등 지역개발·정비와 성격이 다른 농촌 활성화 관련분야는 분리하고, 분야별 계획의 수립, 사업의 시행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중복적 규제 및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국내·외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농촌지역개발체계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농어촌정비법의 분법 등 입법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는 헌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연구는 농어촌정비법의 입법체계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한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연구로서,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법률을 연구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지역개발사업과의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1】 농촌지역개발사업 근거법률과의 관련성 정도

소부 관처	법령명 (약칭)	관련성 정도			관련사업	관련규정
		고	중	저		
농림부 해수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 38, 39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 § 31, 35, 38
		●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 § 11, 38
		●			•농어촌경관계획수립	• § 30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시범	• § 29, 38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 § 11, 35, 36, 37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	• § 31, 35, 38
	●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사업	• § 30의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리모델링법)		●			
	농어촌정비법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 § 73, 74
●				•농공단지조성사업	• § 77, 80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 § 52~71, 101~ 103, 130	
●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 § 71	
●				•새뜰마을사업	• § 2·10호, 58~ 62, 114~116	
●				•농어촌경관계획수립	• § 5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시범	• § 52~71(준용)	
●				•향토산업육성사업	• § 72	
●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사업	• § 5	
농림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	• § 50
		●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사업	• § 4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농지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농촌융합산업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농진청)	• § 13
	농촌진흥법	●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농진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치유농업 등의 신규지역개발사업분야에 적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농림부 해수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농교류법)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 § 6, 12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농진청)	
	식품산업진흥법		●			
국토부	건축기본법			●		
	건축법	●				•세부사업시행 시에 건축법에 따른 규제 있음
	경관법	●			•농어촌경관계획수립	• § 9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 및 지구구의 규제 및 인허가 규제
	도로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			•농공단지조성사업	• § 5, 8
	주택법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하천법		●			
	산림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기본법		●			•산림경영자원육성	• § 11, 22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 4, 18, 19, 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 2, 3, 13, 14, 20
산림보호법			●			
산림복지 진흥에			●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경영자원육성 • § 64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경영자원육성 • § 4, 10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 § 4, 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 § 접경지역성장기반조성 • § 18
	자연공원법		●		•생태탐방시설 및 에코촌 조성 • § 41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탐방시설 및 에코촌 조성 • § 54
행안부	환경영향평가법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			•생태하천복원 • § 33
	하수도법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 63
		●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 § 63
폐기물관리법	●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 4, 56	
산업부 기재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 10, 34, 35의2, 35의3, 40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 § 16
		●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 § 7의2, 9
		●			•특수상황지역개발(행안부) • § 34
		●			•성장촉진지역개발(국토부) • § 3, 34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중기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육성 • § 20

[출처] 박창원·임상봉·김진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제도개편방안 연구, 농어촌연구원, 2017, 80-84면(약간 수정하여 재인용).
 [약칭] 법령의 약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례를 기본으로 함

- 이와 같이 농촌지역개발사업과의 관련성을 볼 때,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 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농촌융합산업법, 도농교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과의 관련성 및 소관부처 등을 고려하여,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농촌융합산업법, 농어촌리모델링법 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함
- 다만, 연구의 수행 상 필요에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계획법, 산업입지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령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표-2】 연구대상 주요법률의 약칭

약칭	법률명칭
농업식품기본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리모델링법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촌융합산업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농교류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연구의 방법

- 이 연구에서는 입법론적 연구방법, 문헌조사 연구방법, 비교법적 연구방법, 워크숍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자 함

【표-3】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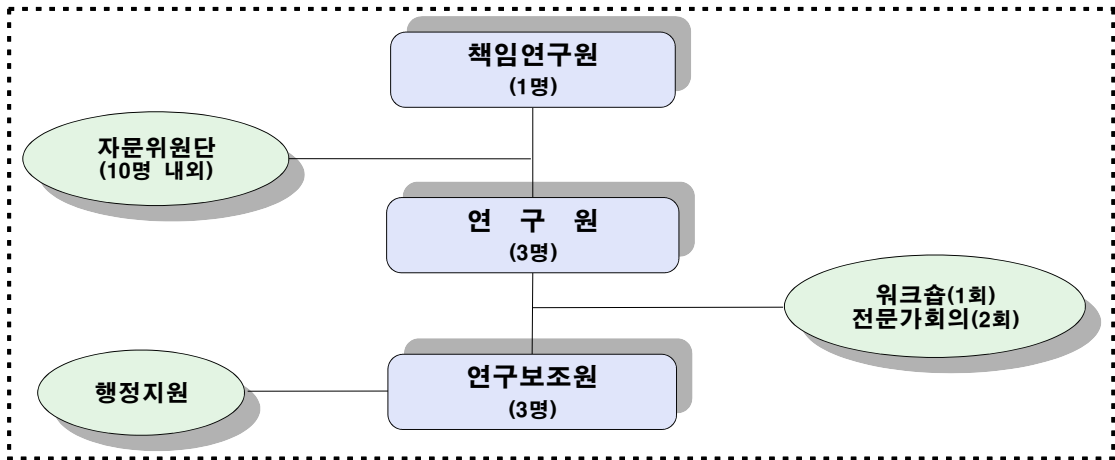
방법론	주요내용
입법론적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연혁에 따른 법체계 변화과정 연구 •입법체계 정비방안의 법리적 분석 •입법체계 정비방안의 입법기술적 타당성 분석
문헌조사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관련법령 등의 조사연구 •관련법제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 및 정책자료, 회의록 등 분석
비교법적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관련법령의 내용 및 체계 등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비교법 연구결과를 통한 입법체계 정비방안의 타당성 강화
워크숍 등 전문가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성과물의 실무적 가치 제고

3. 연구의 추진체계

(1) 연구진 구성

- 이 연구는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연구의 형태로 추진함

【그림-1】 연구진 구성



[2] 역할의 분담

- 책임연구원은 사업을 총괄하고, 통어촌정비법 분법안의 입법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연구원은 국내외 주요 법령 및 제도의 조사 등을 담당하는 등 협업을 통한 연구를 추진함

【표-4】 연구진별 역할분담

구 분	역할분담 내역	비고
책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총괄 •농어촌정비법 입법체계 개편안(분법안)에 관한 법리적 분석 및 입법기술적 타당성 검토 •전문가회의, 세미나 등 주관 •일본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법령 조사·분석 	1명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분법안의 내용 및 체계 분석 •농어촌정비법 분법안의 초안 작성 •농어촌정비법 분법안의 신규조문대비표, 입법해설 등의 작성 및 검토 •주요외국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법률 조사·분석 	3명
자문위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내용의 법리적 타당성 검증 •연구방향의 합리성 유지 •전문가회의 등에서의 참석 및 의견개진 	10명 내외
연구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자료 및 관련법령 수집·정리 •주요 행정업무 수행 •보고서, 자료집 등 편집 및 발간업무 수행 	3명

4. 연구의 추진일정

○ 이 연구는 총 6개월로 진행될 예정이며, 계약 후 월별 주요 추진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5】 연구의 추진일정

구 분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계약 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선행연구 검토/착수보고회 개최	=====					
◆관련자료의 수집·정리	=====					
◆국내외 관련법령 및 제도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농어촌정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도출			=====			
◆중간보고회 개최			=====			
◆농어촌정비법 조문안 검토·작성				=====		
◆최종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서 수정·보완 및 제출						=====
추진진도(%)	10%	30%	50%	70%	90%	100%

제2장

우리나라의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1.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연혁

(1) 관련사업의 연혁

(가) 근대화 이전

- 정착농업이 시작된 신라시대, 고려시대부터 농촌개발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개발은 오래된 역사를 가짐
- 이 시기의 본격적인 계획취락, 조성사례로는 1920년대 군산의 미면간척지, 김제의 광활간척지, 1930년대 전남 보성군 득량간척지 등을 들 수 있음

(나) 1950년대-1960년대

- 1950년대 초·중반까지는 한국전쟁 등으로 농어촌정비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됨
- 1950년대에는 식량부족 등에 따른 농업발전과 농촌재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것이 1958년 농촌지역개발 시범사업으로 채택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농촌개발사업이 시작됨
- 1962년 4월에 농촌진흥청이 발족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소규모 예산투자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 1970년대-1980년대

- 196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화함으로써, 도시·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도·농 격차가 심화되기에 이룸
- 1970년에는 다수확 신품종 보급 등으로 농민소득이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이에 따라 농촌의 경제적 여력이 커져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대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이 추진됨

- 이 새마을사업은 1970년 4월에 마을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1974년에는 개발대상 마을이 전국 33,000여 개로 확대됨
- 새마을사업은 단기간에 농촌사회와 경제·문화·생활환경 및 주민의식의 총체적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마을단위 개발방식의 한계에 직면함으로써, 농촌·도시 중심 정주생활권의 종합적 농어촌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됨
- 1984년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에 1개 군씩 “지방 정주생활권개발 시범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것이 1985년에 “농어촌지역개발계획”으로 변경됨
- 당시의 “농어촌지역개발계획”에 입각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거주환경개선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은 “주민의 개발수요 수렴→중앙정부 예산요청→중앙정부 예산지원→사업시행”의 절차로 추진되었으나, 유사사업의 부처별 분산, 주민의 자부담금 증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라) 1990년대-2000년대

- 1990년대에는 농업중심에서 탈피하여 농·어업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부처별 농촌개발 관련 사업이 크게 증가함
- 1991년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2009년 폐지)이, 1994년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는 등 이 시기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는 “농촌공간의 정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및 제도의 형성기”로 평가할 수 있음
- 당시의 주요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2000년대에는 도농교류·교류촉진사업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에서 도시민까지 확대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 농어촌지역개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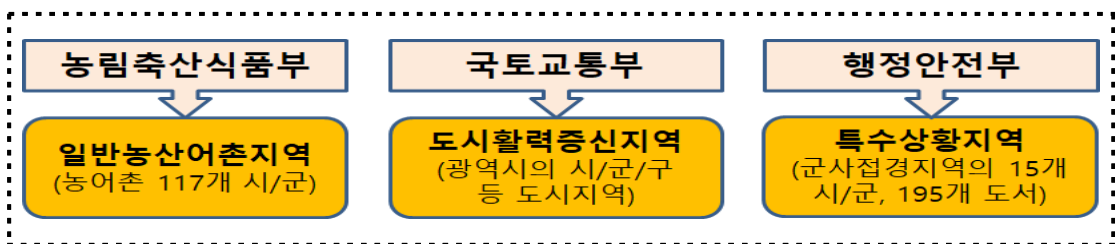
추진됨

- 2004년에는 「농어촌지역개발법」이 제정되고, 마을단위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체계적·계획적인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당시의 주요 사업으로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음

(바) 2010년대 이후

- 2010년부터 지방의 자율성 부족, 유사 중복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함
- 포괄보조금제도는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는 제도를 의미함
-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국을 3+1지역으로 구분하여 3개의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됨(210여 개의 지역개발 계정사업이 22개 군으로 통폐합, 성장촉진지역은 별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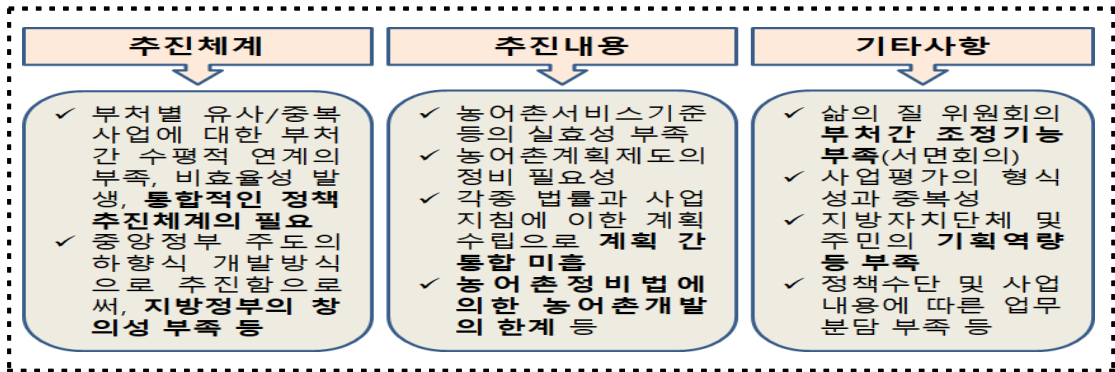
【그림-2】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바) 평가

- 이상에서 살펴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연혁을 추진체계, 추진내용, 기타 사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3】 농촌지역개발사업 주요연혁 평가



(2) 관련법제의 연혁

(가) 근대화 이전

-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법제의 원류는 1906년 4월에 제정된 「수리조합조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수리조합조례」는 1917년 「조선수리조합령」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 「수리조합조례」와 「조선수리조합령」은 1961년의 「토지개량사업법」, 1970년의 「농촌근대화촉진법」,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5년의 농어촌정비법 등으로 연계됨

(나) 1950년대-1960년대

- 1960년대에는 농어촌 정비 및 개발에 관한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시기에 해당함
- 예컨대, 「토지개량사업법」(1961.12), 「지하수개발공사업」(1969.01), 「토지개량사업 장기채정리 특별조치법」(1963.03), 「개간촉진법」(1962.02), 「농경지조성법」(1967.01) 등이 각각 제정됨
- 이 중에서 「토지개량사업법」은 1960년대 농어촌 정비 및 개발의 기본법으로 기능함

(다) 1970년대-1980년대

- 1970년대는 농가주택개량, 농촌의 생활호나경 개선과 소득증대, 농촌생산기반

및 취약지구 정비의 추진기반이 조성된 시기에 해당함

- 이 시기에 제정된 법률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1970.01), 「국토이용관리법」(1972.12),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을 들 수 있음
- 새마을운동의 근거법률에 해당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70년대 농어촌 정비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근거법률에 해당함
- 1980년대는 관련입법의 제·개정 부족 등으로 법령에 기반을 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정비 및 개발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음
- 예컨대, 1983년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촌공업단지사업과 농촌관광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지 못함
- 또한 1986년의 「도서개발촉진법」, 1988년의 「오지개발촉진법」의 경우도 농어촌 개발정책과 연계성이 없음

(라) 1990년대

- 1990년대의 대표적인 입법으로는 「농어촌발전특별법」(1990.04), 「농어촌도로정비법」(1991.11), 「농어촌특별세법」(1994.03), 농어촌정비법(1994.12)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1990년대의 다기능적·복합적 농어촌 개발정책의 종합적 추진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은 1990년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 정책의 수립·운용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음

(마) 2010년대 이후

- 2000년대에는 농어업인삶의질법(2004)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농촌의 복지기반,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개발의 종합적 추진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이 시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2009), 「어촌어항법」(2005),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2012) 등의 입법조치가 행해짐

○ 특히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은 상향식 어촌발전모형 수립에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도시·어촌 간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리

○ 이상에서 살펴본 근대화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의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6】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의 주요 연혁

시기	근거법령	주요내용	주요사업
1970년대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 증진 •농가주택의 개량	•농가주택개량사업
	•대통령 지시	•농민의 자조·자립·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정시개발사업, 복지·환경사업을 추진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국토이용관리법	•취락지구개발(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취락지구정비사업
1980년대	•도서개발촉진법	•도서지역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개선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오지개발사업
1990년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농어촌도로 개설·확장·포장·보전에 관한 사항 규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농어촌도로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촉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업 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과 농어촌 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의 이용·개발 등 임업발전을 위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휴양도시개발사업, 목조주택 전원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촌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 촉진 농어촌지역에서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식품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발전계획
200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소도읍지원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읍 지역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도읍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낙후지역, 농어촌과 산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삶의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의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어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의 통합적·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종합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 발전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 주민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종합개발계획

2.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분석

(1) 농어촌정비법

(가) 입법연혁

- 농어촌정비법은 1994년 12월에 제정(1995년 6월 시행)되어 2007년과 2009년에 걸쳐 2 차례의 전부개정과 22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당시 제정이유를 보면,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개발 및 정비사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확대, 농어촌 주택과 도로 등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현대적 농어촌조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즉, 농어촌정비법은 종전의 농지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종전의 관개·배수시설 등 논 위주의 사업 외에 농업주산단지 조성사업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됨

【표-7】 농어촌정비법의 입법연혁

일시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
1994.12.22(제정) 1995.06.23(시행)	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의 개발 및 정비사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의 주택·도로 등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며, 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함 •이를 통하여 현대적인 농어촌을 조성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제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의 농지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종전의 관개·배수시설 등 논 위주의 사업 외에 농업주산단지 조성사업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함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휴양사업을 지도·육성하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관광농원 사업·주말농원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함 	
1997.01.13(개정) 1997.07.14(시행)	개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업의 구조개선과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환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반시설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농업기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이 폐지될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시행 중인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은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면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에 따른 환지지정면적을 확대하여 농지의 필지세분화를 방지함 	
1999.02.05(개정) 1999.02.05(시행)	개정 이유	•민박농어가의 지정제도 개선 등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함	일부
	주요 내용	•민박농어가의 지정제도, 농어촌휴양지의 입장료·시설이용료에 대한 신고제도, 농어촌휴양지사업의 휴·폐업 신고제도 및 농어촌주택·토지·시설의 전매제한제도를 폐지함	
2000.01.28(개정) 2000.07.29(시행)	개정 이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이법으로 이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부생활권개발사업, 농공단지의 개발지원사업 등 농어촌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18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85조의2~제85조의5)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구역 안의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경지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 구성되는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환지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강화함(제43조 제7항 단서) 	
2001.12.29(개정) 2002.01.01(시행)	개정 이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에 현행 시·군의 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함(제2조 제1호의2, 제31조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등)	
2002.01.14(개정) 2002.07.15(시행)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시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은 시행계획의 공고·열람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절차를 간소화함(제10조)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제12조) •요청이 있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16조 제2항) 	
2002.12.26(개정) 2003.01.10(시행)	개정 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에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제2조 제8호의2)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포함시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이 	

		<p>적절하게 관리·처분되도록 함(제15조 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과 농어촌 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지원개발의 상호연계를 강화함(제35조 제7호) 	
2005.08.04(개정) 2005.11.05(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화·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입·운영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관리를 강화함(제2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8조의3) 	
2005.05.31(개정) 2005.12.01(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다른 농어촌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의 동 중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구역을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포함시킴(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9조, 제31조 등) 	
2007.04.11(개정) 2007.04.11(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상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문장의 구조도 어문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률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전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간결성·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함 	
2007.08.03(개정) 2008.02.04(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농어촌용수구역의 고시 등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자율성을 도모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시·도지사 사무의 지방이양(제7조, 제8조, 제19조, 제22조, 제67조, 제79조, 제80조)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인가(제12조 단서, 제15조 제5항)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강화(제18조 제2항, 제111조)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준공 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제20조)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정비(제4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76조 제1항, 제102조) 	
2008.03.28(개정) 2008.03.28(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생활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오지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거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에도 소관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생활정비사업에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함(제2조 7의2, 7의3,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1항 등) 	

2009.06.09(개정) 2009.12.10(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의 자율성·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함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전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함(제8조)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함(제9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제18조, 제19조)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던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2조)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보완하고(제26조), 관련규제를 완화함(제27조, 제85조, 제86조) 	
2011.07.14(개정) 2011.07.14(시행)	개정 이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조성 및 확충이 포함으로써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일부
	주요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범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추가함(제2조 제6호)	
2011.11.14(개정) 2012.02.15(시행)	개정 이유	•수몰이주민이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일부
	주요 내용	•저수지 축조 등으로 인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0조의2)	
2012.02.17(개정) 2012.02.17(시행)	개정 이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석면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하며,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사업을 포함함(제2조 제10 차목, 제55조 제6호)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제17조, 제24조 제1항, 제88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함(제56조 제1항 제1호의3)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제118조) 	
2012.10.22(개정) 2012.10.22(시행)	개정 이유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는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마련의 주체를 확대함	일부

	주요 내용	•(현재 장관, 시·도지사가 수립) 시장·군수·구청장도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제1항)	
2014.03.18(개정) 2014.03.18(시행)	개정 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후견제도로 변경됨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한지사의 결격사유를 개정함	일부
	주요 내용	•한지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제29조 제1호)	
2014.10.15(개정) 2015.01.16(시행)	개정 이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일부
	주요 내용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여 현실화함(제130조 제1항)	
2015.01.06(개정) 2015.07.07(시행)	개정 이유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일부
	주요 내용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에 대한 조식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 제16호 라목) •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21조 제4항·제5항)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안전교육 이수 의무,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함(제86조의2)	
2016.12.02(개정) 2016.12.02(시행)	개정 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어촌정비법상 관련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일부
	주요 내용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어촌정비법상 관련규정을 정비함(제121조 제2항)	
2016.12.27(개정) 2016.12.27(시행)	개정 이유	•현실과는 맞지 아니한 용어를 정비하고, 국고의 손실방지과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등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할 필요가 있음	일부
	주요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임을 명확하게 함(제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폐기·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제110조 제6항) •농업기반시설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과 같이 「민법」 제281조에 따른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도록 함(제110조의3)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제1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2018.02.21(개정) 2018.08.22(시행)	개정 이유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	일부

		<p>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매각·직접사용·일시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화·화옹·영산강 지구 등의 지역은 당초 사업완료 기간보다 2년에서 6년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여 최소 2020년부터 최대 2027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전망이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함(제14조의2) 	
2018.12.14(개정) 2018.12.14(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지 상류지역에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지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2항) •신고민원의 처리절차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85조, 제87조, 제106조) 	
2019.01.15(개정) 2019.02.16(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대상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4조 제2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8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86조 제2항·제3항) 	

(나) 입법체계

- 농어촌정비법은 총 9개의 장과 13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지며, 상세한 입법체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8】 농어촌정비법의 입법체계

장/절	조	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조사
	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3장
농업생산
기반정비

제1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의 시행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제8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2조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지 추진	
	제13조	매립·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제1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4조의2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2절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관리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9조		안전관리 교육	
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3절 환지 및 교환 ·분할·합병 등	제25조	환지계획	
	제26조	환지계획의 인가	
	제27조	환지업무의 대행	
	제28조	환지사의 자격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제30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제31조	환지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32조	환지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33조	권리변동의 신고	
	제34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35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	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기능 교환	
	제37조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38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9조	토지가격의 평정	
	제40조	수해자총회	
	제41조	환지심의위원회	
	제42조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	
	제43조	교환·분할·합병의 시행	

		제44조	교환·분할·합병의 결정방법
		제45조	교환·분할·합병의 효과
		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할·합병
		제47조	교환·분할·합병의 청산금 등
		제48조	지료 등의 감액·반환 또는 증액 청구
		제49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제50조	지역권의 효력
		제51조	지료 등의 청구기한
제4장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제52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원칙
		제53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향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64조	빈집정비
		제65조	집집정비 절차 등
		제66조	자진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7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8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
		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70조의2	간선시설의 설치
		제71조	기술지원 등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 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지원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75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76조	평가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7조	농공단지 개발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제7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제79조		생산제품이 판매지원	
제8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6장	제1절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 어 촌 관 광 휴 양 자 원 개 발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3조	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	지도·감독 등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제9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절 한 계 농 지 등 의 정 비	제91조	한계농지 등의 정비 기본방침
		제92조	한계농지 등 정비의 종류
		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제94조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제95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
		제96조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제97조	관련규정의 준용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99조	투자
		제100조	한계농지 등의 매매 등
제7장 마 을 정 비 구 역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2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10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5조	사업지역·지구의 고시 등	
	제10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8조	자금지원	
	제10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제8장 보 칙	제110조의2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제110조의3	구분지상권이 설정등기 등
		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113조	선수금
		제114조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15조	특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제116조	허가 취소 등
제117조	지정 해제		
제118조	청문		

제9장 별 칙	제119조	보고와 검사
	제120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제121조	토지이동의 신청 특례
	제122조	다른 등기의 정지
	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제12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제125조	농어촌정비협약
	제126조	수리계
	제127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1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0조	벌칙
	제131조	양벌규정
제132조	과태료	

(타) 입법목적

-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산업육성,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과 한계농지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이와 같이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산업육성사업 등의 핵심적인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됨

(태) 주요사업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4호)
- 즉,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에 관하여 제5호(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제10호(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9】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구 분	정 의(제2조)	근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 확대 개발사업 •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 기타 농지의 개발·이용에 필요한 사업 	제5호
생활 정비 환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래의 사업 •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빈집의 정비 •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사업 •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 기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호
농어촌 특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농어촌산업 청의조향을 기초로 작성) 	제15호
농어촌 휴양 관광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거나 기타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기타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증가를 목적으로 투숙객에 	제16호

	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한계농지등 정비사업	•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한계농지 등)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	제18호

(㉞) 추진절차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이러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4조)
 - * 농어촌정비법 제3조에서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이와 같이 수립된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주요사업별 “기본계획”(제8조, 제58조, 제73조) 및 “시행계획”(제9조, 제59조, 제74조)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이러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기초하여 “마을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01조)
- 농어촌정비법의 실효성 확보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 또는 불법점용, 조성용지의 불법전매, 불법 관광휴양사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제130조~제132조)

(㉟) 분석

(ㄱ) 용어의 불일치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제4호)
- 이 중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제5호)과 “생활환경 정비사업”(제10호)

및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제18호)의 경우는 제4호의 정의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농어촌산업”(제15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제16호)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및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령의 이해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ㄴ) 장별 비체계성

- 농어촌정비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제1장(총칙), 제2장(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7장(마을정비구역), 제8장(보칙), 제9장(벌칙)을 들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제3장(농업생산 기반정비), 제4장(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제5장(농어촌산업의 육성), 제6장(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을 들 수 있음
- 첫째, 제2장의 명칭과 규정내용을 볼 때,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제4조)을 위한 “자원조사”(제3조)인지, “자원조사”를 위한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내적 정합성이 저하되고 있음
 - * 또한 “자원조사”(제3조)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제3조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강행규정 형태를 취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함
- 둘째, “농어촌정비사업”(제2조 제4호)의 정의규정에 기초하여 각 장별로 사업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규정상 사업의 목적 및 내용으로 볼 때 불필요한 장의 구분으로 입법체계의 복잡성이 발생하고 있음
- 즉, 제5장(농어촌산업의 육성)과 제6장(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은 사업의 목적 및 내용으로 보아 통합하여 규정할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입법조치로는 정의규정을 개정하거나 분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ㄷ) 강한 독립구조

-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제2장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제6조)을 규정하고, 제3장에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의 원칙(제52조) 및 기본방향(제53조)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 및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의 원칙과 기본방향이 아니라 각 장별로 해당 사업별 원칙과 기본방향을 각각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각각의 원칙과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법체계적·내용적 강한 독립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물론, 각 장별로 해당 사업추진의 세부적 원칙과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수범자로 하여금 해당 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편의상 장점은 부정할 수 없음
- 다만, 농어촌정비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핵심적 규율사항인 농어촌정비사업의 다양한 원칙과 기본방향을 각각의 장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장별 단절을 초래하고, 결국 “법체계 내적 정합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2] 농업식품기본법

(가) 입법연혁

- 농업식품기본법은 1999년 2월 5일에 「농업·농촌 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2000년 1월 1일 시행),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2번의 전부개정과 16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표-10】 농업식품기본법의 입법연혁

일시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
1999.02.05(제정) 2000.01.01(시행)	제정 이유	•농업의 경쟁력 및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정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 시킴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적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킴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 법과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농업·농촌 관계 법률을 정비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제4조) •가족농·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여성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시책 수립·시행 의무(제16조)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상담, 교육훈련 및 자금 지원, 농업관련단체의 육성 등(제17조, 제18조)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벤처농업의 육성, 농업관련 지적 재산권의 보호 및 농업의 정보화 등 시책의 수립·시행(제25-제29조) 	
2001.03.28(개정) 2001.03.28(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제4조 제3항) •농림부장관이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식량의 적정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2조) 	일부
2003.12.11(개정) 2003.12.11(시행)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1년부터 도입된 후계농업인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후계농업인”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변경(제12조 제1항)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2조 제2항) •농업인 및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업적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권자를 종전의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제15조 제5항) 	일부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구축이 필요 •이에 「농업·농촌 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률의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미래 농정의 기본 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함 	
2007.12.21(개정) 2008.06.22(시행)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의 명확화(제1조)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제3조 제8·9호, 제4조 제4항, 제7조, 제22조, 제51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제6조, 제10조, 제50조-제52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제3조 제9호, 제9조, 제45조-제4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제14조~제17조)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제27조 제2항)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제12조, 제13조, 제56조~제58조) 	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술·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제36조, 제38조)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제40조 제3항)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제41조) 	
2009.05.27(개정) 2009.11.28(시행)	개정 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취지에 맞게 어업·어업인·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으로써,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농수산물의 생산 이후 관리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전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수산관련 용어의 정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수산물생산 후 관리기술 진흥 등(제20조, 제35조) •수산자원 및 어장의 이용과 보전(제30조~제32조)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소득,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및 실질 농어업인의 재취업과 생활안정 등의 지원(제39조, 제41조) 	
2011.03.09(개정) 2011.03.09(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농업용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용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겨울철 유휴 농지의 적극적 활용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로 하여금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2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함(제33조 제3항) 	
2011.07.25(개정) 2012.01.26(시행)	개정 이유	•균형적인 쌀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소비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업 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수립·시행하도록 함(제26조)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기계화 영농사·영여사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4조)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까지 포괄하는 농어업 정책자금을 지원·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3조 제3항·제4항) 	
2011.11.22(개정) 2012.05.23(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의 소중함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농어업인의 날”을 법률에 규정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등의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의 날” 규정(제4조의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제11조의2) •통상정책 시행 관련규정의 보완(제13조 제2항·제3항,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포함사항 보완(제14조 제2항) 	
2012.12.18(개정) 2012.12.18(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의 수립·시행하도록 함 •농어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등의 수입 증가로 농어업 등에 미칠 영향이 큰 경우 정부가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산간지역 등 농업생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9조의2)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4조) •농수산물 등의 수입증가로 국내 농어업 등의 발전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 	
2012.10.22(개정) 2013.01.23(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귀농 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 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29조의2) 	
2013.03.23(개정) 2013.03.23(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으로 분리함(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농림수산식품부에 두었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어촌 정책심의회로 구분함(제15조) 	
2013.08.13(개정) 2013.11.14(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현행 물량중심의 식량자급목표의 기준에 열량 자급률을 추가하며,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14조 제1항) •식량자급목표 수립 시 열량 자급률을 추가함(제14조 제3항 제5호) •위기 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23조 제3항) 	
2014.03.18(개정) 2014.03.18(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가축사료의 가격상승으로 국내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상승이 필요하며, 이에 이모작 등을 통하여 국내의 사료작물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일부
	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식량 및 식품 	

	내용	자급목표의 한 내용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추가함(제14조 제3호의2)	
2014.05.20(개정) 2014.11.21(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환경 변화는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함 •그럼에도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상황임 	일부
	주요 내용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47조의2)	
2015.06.22(개정) 2015.06.22(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산림·수산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업무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등의 연구·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에 권한을 위임·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영향평가 등과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제47조의2 제5항) •현행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설립근거를 명확하게 함(제63조의2) 	
2017.03.21(개정) 2017.03.21(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함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못한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었을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4조 제2항)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제23조의2 제1항) 	
2018.09.18(개정) 2018.09.18(시행)	개정 이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 및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7조)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2018.02.21(개정) 2019.01.01(시행)	개정 이유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음	일부
	주요 내용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2019.01.15(개정) 2019.07.16(시행)	개정 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일부
	주요 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제14조 제5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제36조의2)	

(나) 입법체계

○ 농업식품기본법은 총 4개의 장과 7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입법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1】 농업식품기본법의 입법체계

장/절	조	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제4조의2	농업인의 날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9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단체의 육성
	제11조의2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2조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 책의 수립·시 행	제14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5조	정책심의회
	제16조	기본계획의 추진
	제1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제1절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발전계획 의 수립·시행	
	제2절 안전한 농산물 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3조의2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24조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29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제29조의2	귀농업인의 육성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0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제31조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32조	농지의 보전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3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제34조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제35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제36조의2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육성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8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제39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40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41조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제42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제43조의2	치유농업의 진흥
제6절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제44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제45조	전통 농경문화의 계승 등
	제46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제47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제47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48조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제49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제49조의2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제50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1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2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3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제54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8절 통일대비 농업· 농촌 및 식품산 업 정책과 국제 협력	제55조	북한의 농업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제5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제58조	농업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제59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제60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제6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62조	조세의 감면
	제63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제63조의3	농업정책보험금용원의 설립
제4장 보칙	제64조	별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 주요내용

-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적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제1조)
- 특히 농업식품기본법 제5조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천명하고 있음
- 또한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서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개발·보전, 식품산업 등의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특히 농업식품기본법 제3장에서는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제7절)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제48조), 지역 간 소득균형(제49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제50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제51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제52조),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제53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제5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제48조, 제54조 등)

(라) 분석

-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에 해당함
- 이러한 기본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농업식품기본법은 대부분 프로그램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의 절차법에 해당하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의 “기본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하는 기준법”이라 할 수 있음

[3] 농어업인삶의질법

(가) 입법연혁

- 농어업인삶의질법은 2004년 3월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2004년 6월 시행), 총 16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입법과 산촌이 제외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표-12】 농어업인삶의질법의 입법연혁

일시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
2004.03.05(제정) 2004.06.06(시행)	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FTA의 확산 및 세계무역기구농산물협상의 진전으로 농림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함 •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제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제6조) •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함(제10조) •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질환의 예방·치료, 자녀 보육비, 여성의 복지증진, 생활안정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12조~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직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제20조~제28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 진흥, 농산어촌 정보화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제29조~제34조) •권역별 주거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에 관한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8조) 	
2005.08.04(개정) 2005.11.05(시행)	개정 이유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하여 규정함	일부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2007.07.13(개정) 2007.07.13(시행)	개정 이유	•농산어촌인구의 여성화·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일부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산어촌여성의 보육여건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제18조)	
2008.12.26(개정) 2009.06.27(시행)	개정 이유	•섬지역 농림어업인의 경우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용으로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일부
	주요 내용	•섬지역 농림어업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3)	
2010.07.23(개정) 2011.01.24(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향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0호, 제4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의 영향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9조의2) •농어촌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충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3) •(기존 향토산업)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함(제31조 제1항 제2항)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38조의2) 	
2011.07.25(개정) 2012.01.26(시행)	개정 이유	•농어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의 특성을 분석·평가하여 보완하기 위한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제45조) •농어업인삶의질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함(제46조) •농어업인 복지사업 관련 정보요청 및 전산망 통합연계의 근거 	

		를 마련함(제47조)	
2012.12.18(개정) 2012.12.18(시행)	개정 이유	•도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도시민과 고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연안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3항)	
2013.03.23(개정) 2013.03.23(시행)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일부
	주요 내용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변경함(제10조 제3항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운용하던 농어촌영향평가지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용하도록 함(제19조, 제24조 등)	
2012.10.22(개정) 2013.04.23(시행)	개정 이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일부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농어촌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2013.06.12(개정) 2013.12.13(시행)	개정 이유	•농어업인삶의질및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	일부
	주요 내용	•농어업인삶의질및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사회안전망 구축,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작업자의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도록 함(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7조의2)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석면의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제29조 제1항 제7호의2)	
2014.03.18(개정) 2014.03.18(시행)	개정 이유	•농어촌지역 복지의 형평을 위하여 영양개선 시책의 대상을 확대함	일부
	주요 내용	•농어촌 지역에는 고령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및 소년·소녀가장 농어업인 등 영양취약계층 또는 공존하므로, 이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제19조의2)	
2014.10.15(개정) 2044.10.15(시행)	개정 이유	•농어업인삶의질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취소에 청문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일부
	주요 내용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인을 보호함(제46조 제4항)	
2015.07.20(개정)	개정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	일부

2015.07.20(시행)	이유	통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에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조건불리지역의 정의규정에 “어업” 관련내용을 추가함(제40조 제1항) 	
2015.02.03(개정) 2015.08.04(시행)	개정 이유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일부
	주요 내용	•농업유산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함(제30조의2)	
2016.12.02(개정) 2017.06.03(시행)	개정 이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일부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2017.10.31(개정) 2017.10.31(시행)	개정 이유	•영양취약계층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미흡한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제2항)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 노력의무를 부과(제21조 제3항) 	
2018.02.18(개정) 2019.03.19(시행)	개정 이유	•농어업인삶의질및농어촌지역개발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나) 입법체계

- 농어업인삶의질법은 총 6개의 장과 6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입법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3】 농어업인삶의질법의 입법체계

장/절	조	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농어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7조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제8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제10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제10조의2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1조	재정지원
	제3장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2조
제13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7조의2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의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제19조의3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 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5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4조	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제28조의2	농어업인 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0조	농어촌 경관의 보전
	제30조의2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제30조의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제6장 보 칙	제31조	농어촌산업 육성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제32조의2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4조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5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제35조의2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35조의3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영 및 요금 지원
	제36조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제38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8조의2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제39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제41조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제4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등
	제43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44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제45조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6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다) 주요내용

- 농어업인삶의질법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촌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2조에서는 도·농 간 생활격차 해소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의 균등한 생활,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기틀의 마련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3장에서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제4장에서는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제5장에서는 농어촌지역개발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보고(제42조)를 규정하여, 국회의 감시기능에 관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라) 분석

- 이와 같이 농어업인삶의질법은 농업식품기본법에 기초하여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의 예산상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법적 성격의 법률”에 해당함
- 농어업인삶의질법에서는 주로 “시책 마련 의무”→“예산상 지원근거”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제13조) 및 국민연금보험료(제16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제17조) 등 실제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농업식품기본법으로 이관해도 될 조항이 다수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과 관련하여 보면,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촌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제38조)의 경우,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지역개발의 적합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4] 농촌융합산업법

(가) 입법연혁

- 농촌융합산업법은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농업의 고부가가치 기반형성, 농촌경제의 활성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2014년에 제정된 후, 총 3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름

【표-14】 농촌융합산업법의 입법연혁

일시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
2014.06.03(제정)	제정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제조·가공·유통·관	제정

2015.06.04(시행)	이유	<p>광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산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산업 간 융합이 강화되는 경향에 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제도가 미비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농촌지역의 농특산물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의 활력을 제고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정의함(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인 등의 단독 또는 공동의 신청을 받아 검토·평가한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8조)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7조) •농촌융복합산업 시행자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처리,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제28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시·도지사→장관), 지구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35조) 	
2017.03.21(개정) 2017.09.22(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등을 도입하고,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음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융복합시설을 정의하고(제2조 제4호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승인제도를 도입함(제8조의2) •생산관리지역이라도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8조의3)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1년 이내 사업 미착수, 1년 이상 사업 중지 등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등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허가 등 의제제도를 확대함(제9조) •특례 적용 등으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증의 승계 등 제도를 개선함(제11조, 제13조) 	
2018.02.21(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의 신속·투명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 	일부

2018.03.22(시행)	이유	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실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3조 제3항)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13조 제4항) 	
2018.12.24(개정) 2019.06.25(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의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제6조 제4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4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证的 취소 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제14조 제1항 제2호) 	

(나) 입법체계

- 농촌융합산업법은 총 6개의 장과 4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입법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5】 농촌융합산업법의 입법체계

장/절	조	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제8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8조의4	원상회복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르는 허가 등의 의제	
	제10조	인증의 표시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1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인증의 승계 등
	제14조	인증의 취소
	제15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7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18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	창업지원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제21조	관련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22조	사업조정 신청
	제23조	판로지원사업
	제24조	협회의 설립 등
	제25조	금융지원 등
	제26조	홍보 및 교육
	제27조	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제28조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제29조	유희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제29조의2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선지원
제5장 보 칙	제30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신청 등
	제31조	지구의 지정 등
	제32조	지구 지정의 효과
	제33조	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	지구 지원
	제35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운영
	제3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37조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38조	보고·검사 등
	제38조의2	사업장 폐쇄 등
제6장 별 칙	제38조의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9조	청문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㉔) 주요내용

- 농촌융합산업법은 “농업의 융복합산업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제1조)
- 농촌융합산업법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인 또는 농촌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제2조 제3호)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촌융합산업법에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제6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제(제8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육성(제30조~제3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농촌융합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지원제도를 통하여 창업희망자 또는 6차산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해당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㉕) 분석

-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농촌융합산업법상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 재화 또는 용역의 복합적 결합·제공(유기적·종합적 융합), 부가가치 창출 또는 증진을 그 개념적 요소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제2조 제15호)으로 정의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산업”의 경우는 농촌의 개발·정비라는 상대적으로 거시

적 관점에서 보는 개념임에 비하여, 농촌융합산업법상 “농촌융복합산업”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소득원 창출이라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표-16】 농어촌정비법과 농촌융합산업법상 농(어)촌산업의 개념 비교

구분	농어촌정비법(농어촌산업)	농촌융합산업법(농촌융복합산업)
수단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u>유·무형의 자원 활용</u>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u>유·무형의 자원 이용</u>
내용	•식품가공 등 <u>제조업</u> , 문화관광 등 <u>서비스업</u> 및 이와 관련된 산업	•식품가공 등 <u>제조업</u> , 유통·관광 등 <u>서비스업</u>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u>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산업</u>
목적	•농촌의 개발 및 <u>정비사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u> •농촌의 <u>소득증대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u> • <u>현대적인 농촌을 조성하고, 국가의 균형발전</u> 에 이바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을 다른 산업과 연계하여 <u>종합·복합산업으로 육성</u> •새로운 농업의 <u>소득원 창출 및 부가가치</u> 제고를 통하여 <u>농촌의 활력을 제고</u>
효과	•농촌의 개발·정비를 통한 환경조성 등의 일환으로 농촌산업 육성	•농가소득의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내외 <u>상생협력</u> ,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 다만, 농촌융합산업법상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산업”의 경우, 농어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라는 주체적 측면과 복합적 결합·제공의 측면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둘째, 농촌융합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제(제8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육성(제30조~제35조) 등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소득지원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지원조직, 전문기관, 인력양성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음

[5] 농어촌리모델링법

(가) 입법연혁

- 농어촌리모델링법은 2013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2014년 6월 시행), 2017년에 1차례 일부개정(다른 법률의 제명을 반영하는 수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농어촌리모델링법은 총 27개의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여, 마을정비 사업기간을 약 8개월 정도 단축시키고 있고,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주택 개선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표-17】 농어촌리모델링법의 입법연혁

일시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
2013.06.04(제정) 2014.06.05(시행)	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인의 농어촌 귀농·귀촌 추세로 인하여 농어촌의 공간구조 재편이 필요함 •농어촌마을의 노후 불량주택의 개·보수, 간선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함 	제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총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0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면적 등이 포함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제16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이나 기타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전매를 금지함(제30조) •기타 용도, 무상양여 등 각종 인허가 의제(제37조) 및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근거 등을 규정함(제42조) 	
2017.11.28(개정) 2017.11.28(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17조 제1항) 	

(나) 입법체계

- 농어촌리모델링법은 총 6개의 장과 4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전체적 입법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8】 농어촌리모델링법의 입법체계

장/절	조	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	총괄계획가의 운영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9조	정비구역 해제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	사업시행자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특례
		제13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4조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절 실시계획 등	제16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19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0조	손실보상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3조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5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26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제29조	대지의 용도	
	제30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1조	건축물의 철거 등	
제4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3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4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제36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7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4장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	제38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9조	보조 및 용자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5장 보 칙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2조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4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장 벌 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㉔) 입법목적

- 농어촌리모델링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제정됨(제1조)
-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그 제정 및 시행이 농업생산기반의 조정이나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등에 한정되어 있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적·실효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어촌리모델링법이 제정되기에 이룸

(㉕) 주요내용

- 농어촌리모델링법 제2조에서는 “정비사업”을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부속 건축물 포함), 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제4호)으로서, 아래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19】 농어촌리모델링법상 정비사업

구분	사업내용
전면 재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과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이 극히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결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

연계형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결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재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여 연결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의 리모델링,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재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또한 농어촌리모델링법 제2조에서는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향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의 주택을 열거하고 있음(제6호)

【농어촌리모델링법상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주택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주택
-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농어촌주택
-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 이러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촌리모델링법에서는 농어촌마을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6조),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및 지원(제16조, 제3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농어촌리모델링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아래와 같은 총 27개의 인·허가 의제규정을 뚝으로써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있음

【농어촌리모델링법상 인·허가 의제규정】

- 제17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때**(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

지전용 허가

-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
-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생략>

- 한편 농어촌리모델링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실시예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제13조 제3항),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7조) 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바) 분석

- 농어촌리모델링법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과 노후·불량주택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농어촌리모델링법은 농어촌정비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등에서 중복성 및 실효성 저하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ㄱ) 정비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의 중복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어촌리모델링법상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농어촌주택·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의 개량 또는 건설을 개념

적 요소로 하고 있음(제2조 제4호)

- 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 개발사업을 개념적 요소로 하고 있음(제2조 제4호)

【표-20】 정비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의 관련조항 비교

정비사업(농어촌리모델링법)	농어촌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u>정비 기반시설을 정비</u>하고 <u>농어촌주택</u>(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u>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u>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전면 재정비사업 : <u>정비기반 시설과 노후·불량 농어촌주택</u>이 극히 열악한 <u>기존 마을과 연결한 지역</u>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u>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u>하는 사업</p> <p>나. 연계형 개발사업 :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결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을 <u>확충·재정비</u>하고,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여 연결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p> <p>다.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u>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의 리모델링</u>, 정비기반시설의 <u>확충·재정비</u>를 통하여 <u>주거환경을 개선</u>하는 사업</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u>농어촌정비사업</u>"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p> <p>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p> <p>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p> <p>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p> <p>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p> <p>10.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u>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u></p> <p>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p> <p>다. <u>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u></p> <p>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우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p> <p>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p> <p>바. <u>빈집의 정비</u></p> <p>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p> <p>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p> <p>자. <u>농어촌 주택의 개량</u>(신축·중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p> <p>차.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p> <p>카. <u>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 이와 같이 농어촌리모델링법상 “정비사업”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특히 그 중에서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정비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의 내용적 중복으로 인하여 “정비구역”과 “마을정비구역”의 내용적 중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ㄴ) 노후·불량 농어촌주택과 빈집의 중복

- 농어촌리모델링법은 “노후·불량주택”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6호), 그 구체적인 농어촌주택을 열거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정비사업” 중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하나로 “빈집”을 포함시키고(제2조 제10호 바목), “농어촌주택”과 “빈집”을 각각 따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11호, 제12호)

【표-21】 노후·불량주택과 빈집의 관련조항 비교

노후·불량주택(농어촌리모델링법)	빈집(농어촌정비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6.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p> <p>가.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주택</p> <p>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주택</p> <p>다.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농어촌주택</p> <p>라.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바. 빈집의 정비</p> <p>차.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p> <p>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p>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

- 이와 같이 농어촌리모델링법상 “노후·불량주택”과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관련사업의 중복성이 발생하고 있음

(6) 도농교류법

(가) 입법연혁

- 도농교류법은 2007년 12월 제정되어(2008년 6월 시행) 총 6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표-22】 도농교류법의 입법연혁

일시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
2007.12.21(제정) 2008.06.22(시행)	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농교류활동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이를 통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제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함(제5조, 제6조)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도를 도입함(제15조)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 및 활용(제17조~제20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제도의 도입(제21조) 	
2009.05.27(개정) 2009.05.27(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을 실시하는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업식품기본법과의 농어촌 개념을 맞추는 등의 내용을 정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어촌의 개념을 농업식품기본법과 맞춤(제2조 제1호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정비함(제28조 제4항 등) 	
2011.03.29(개정) 2011.09.30(시행)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체험교육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제4호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제5조 제1항 등) •유치원 및 학교의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3항 등) 	
2012.06.01(개정) 2012.12.02(시행)	개정 이유	•농어촌민박사업의 농어촌관광사업의 평가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사업의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도를 도입함(제13조)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제17조 제1항) 	
2013.03.23(개정) 2013.03.23(시행)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 등에 따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등을 위한 권한 및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함	일부
	주요 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제25조 등)	
2013.06.12(개정) 2013.06.12(시행)	개정 이유	•농어촌과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함	일부
	주요 내용	•도농교류의 날을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2017.11.28(개정) 2017.11.28(시행)	개정 이유	•교육 등을 통하여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일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의 목적에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을 추가함(제1조)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제26조의2) 	

(나) 입법체계

- 도농교류법은 총 7개의 장과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입법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23】 도농교류법의 입법체계

장/절	조	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도농교류의 날

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6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1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2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3조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제15조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제16조		농어촌정부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제17조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	〈삭제〉
	제19조	인증의 취소
	제20조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제21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2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제23조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제6장 보 칙	제24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5조	홍보 및 조사·연구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6조의2	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별 칙	제27조	별칙
	제28조	과태료

(타) 주요내용

- 도농교류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제1조)
-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농교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

여금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즉, 구체적으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제5조~제7조),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제12조~제16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제21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라) 분석

- 도농교류법은 도농교류를 통한 다양한 농어촌체험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의 외부환경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도농교류지원기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도농교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배제」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는 관련사업의 추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도농교류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제5호)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제16호)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3. 농어촌 개발계획의 수립·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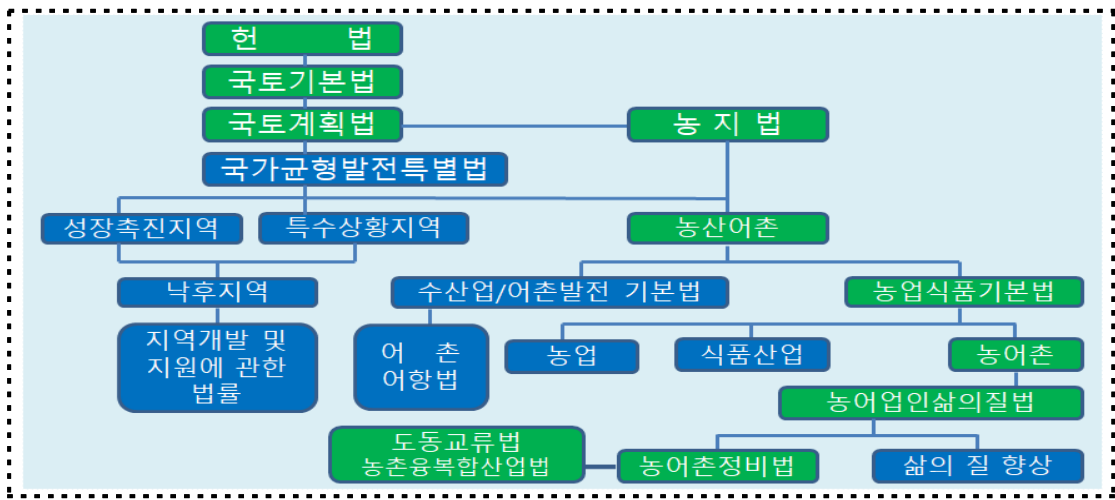
(1) 농어촌 계획법제 개관

(가) 국토기본법

- 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계획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고 하여, 국가의 농어촌 계획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국토기본법은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 등 국토계획의 수립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토기본법은 토지이용·관리법제의 정점에 위치함

- 국토계획법상 농촌지역개발 계획수립의 근거는 균형 있는 발전(제3조), 지역 계획의 수립(제16조), 부문별 계획(제17조)에서 찾을 수 있음
- 이상에서 서술한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및 농어촌지역개발 주요법령을 중심으로 계획법제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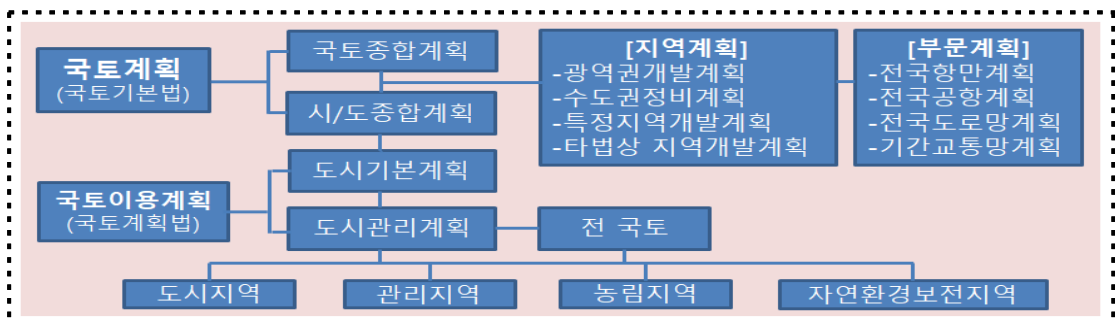
【그림-4】 농어촌 계획법제의 체계



(나) 국토계획법

- 국토계획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책임을 구분하고, 국가계획에 적합한 국토개발 추진의 기본법에 해당함
- 국토계획법에는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농촌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음

【그림-5】 국토계획법상 계획체계



(타)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법률

-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중비종합계획(제4조), 농어촌경관관리계획(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제7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제8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제9조),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계획(제15조), 환지계획(제25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계획(제54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제59조),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제73조), 농어촌산업육성 시행계획(제74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계획(제96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제101조) 등 **총 14개의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업식품기본법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함),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1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제5조)(이하 “농어업인삶의질계획”이라 함),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제6조), 시·도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제7조), 시·군·구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제7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제38조)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리모델링법에서는 농어촌마을정비종합계획(제5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제5조), 정비사업 실시계획(제5조)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상에서 서술한 농어촌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지역개발 관련계획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24】 농촌지역개발 관련계획의 현황

근거법령	계획명칭	수립주체	의무	수립내용
농업식품 기 본 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1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목 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 표 및 그 추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 	○	
농어업인 삶의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u>자연환경경 및 경관보전</u>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행 계획 (§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계획 (§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 	○	

	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계획 (§ 7)			
	•지역종합개발 계획 (§ 3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 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의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농어촌의 경관 보전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농 어 촌 정 비 법	•농어촌정비종합계획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대상지역의 현황 •주요 농어촌정비사업내용 •추정사업비
	•농어촌경관관리계획 (§ 5)	•사업시행자	○	•생략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역의 위치와 규모 •토지이용계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그 밖에 대상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과 동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개요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입·지출예산서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 •사업효율 분석결과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 9)	•사업시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개요 •세부설계도서 •사업비 수입·지출예산서 •사업비 명세서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어 촌 용 수 이용합리화계획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u>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사항</u>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지계획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정비계획 (§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성과 목표 및 지표 •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 <u>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u> •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u>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u> • <u>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u> • 교육·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u>농어촌산업 육성</u>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 <u>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u>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 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명칭 • 사업목적 •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의 명세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시행 기간 •사업시행자 •사업효과 •세부 설계도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 관리 및 처분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산업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학자·연구기관 간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연차별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산업육성 시행계획 (§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 포함) •사업의 종류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현황과 배치계획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마을정비 계획 (§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자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도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농어촌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 어 촌 리 모 델 링 법	•농어촌마을정비종합계획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 대상지역(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제외) •추정사업비 •정비사업의 목표 •<u>노후·불량 농어촌주택</u>,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u>공동형 농어촌주택</u>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u>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u> 관한 사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정비계획 (§6)	•시장·군수·구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u>경관·전통마을·농어촌정비</u> 등에 관한 계획 •<u>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u> •<u>공동형 농어촌주택</u> 설치계획 및 어린이 활동 공간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u>환경보전에</u> 관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 실시계획(§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의 명칭, 목적 및 위치·면적 • 정비사업 시행방식 및 기간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정비사업 계획서 • 경관· 전통마을·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사항 •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분양 및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환지계획(환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분석

- 첫째, 농어촌개발 관련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어촌산업, 경관, 환경보전, 농어촌주택, 도로 및 상·하수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중복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농어촌정비법 제15조)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계획은 없으며, 이는 계획체계상 위계의 불명확성을 가중하고 있음
- 셋째,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침(2018.7)”에서 농발계획, 삶의질계획 등 법정계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칙의 상위법령 개·폐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넷째, 농촌계획의 다양성·복잡성에 비하여 대부분 세부적·구체적 수립지침 마

련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립 후 고시에 관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워, 행정계획 수립의 절차적 불완전성을 가중하고 있음

(2) 계획의 수립·운영 현황

(가) 수립·운영 현황

-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리모델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24개의 계획 중 8개만이 수립·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16개의 계획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표-25】 농촌지역개발 주요계획의 수립·운영 현황

근거법령	계획명칭	수립주체	고시절차	수립지침	수립의무	계획기간	수립여부
농업식품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	5년	○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14)	•시·도지사	×	×	○	5년	○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14)	•시장·군수·구청장	×	×	○	5년	○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5)	•정부	×	×	○	5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	-	○	1년	▲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계획(§ 7)	•시·도지사	×	×	○	5년	▲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계획(§ 7)	•시장·군수·구청장	×	×	○	5년	▲
	•지역종합개발계획(§ 3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	×	-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종합계획(§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농어촌경관관리계획(§ 5)	•사업시행자	×	×	○	-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7)		×	×	○	-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	-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9)	•사업시행자	×	○	○	-	○
	•농어촌용수 이용합리화계획(§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	-	▲
	•생활환경정비계획(§ 54)	•시장·군수·구청장	○	×	×	5년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58)	•시장·군수·구청장	○	×	×	-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59)	•사업시행자	○	×	○	-	○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73)	•시장·군수·구청장	×	○	×	3년	▲
	•농어촌산업육성 시행계획(§ 74)	•시장·군수·구청장	×	×	○	1년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96)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자	×	×	○	-	○
	•농어촌마을정비계획(§ 101)	•시장·군수·구청장	○	×	×	-	▲
농어촌리모델링법	•농어촌마을 정비종합계획(§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
	•정비계획(§ 6)	•시장·군수·구청장	○	×	×	-	▲
	•정비사업 실시계획(§ 5)	•사업시행자	○	×	○	-	▲

[출처] 김승중,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촌계획체계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2019(수정인용)
 [참고] 유(○), 무(×), 확인불가(▲), 무규정(-)

(나) 분석

- 이와 같이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의 3분의 1이 수립·운용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농촌계획의 수립·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총 24개의 계획 중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종합개발계획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8조) 등의 6개 계획을 제외하면, 나머지 12개의 계획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법정계획 수립의무 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계획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복적이거나 불필요한 계획의 통폐합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문제점

(1) 입법취지의 중복성

(가) 비교

-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리모델링법, 농촌융합산업법, 도농교류법의 목적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26】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의 입법목적 비교

법률명	입법목적
농업식품기본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농어업인삶의질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농어촌정비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함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농어촌리모델링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
도농교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1)	증진시킴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임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농촌융합산업법 (§1)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나) 분석

- 농업식품기본법의 경우, 농촌지역개발법제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으나, 관련법제의 주요내용을 포섭할 정도의 목적조항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타 법령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를 보면, 계획적·체계적 개발,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으로서, 개별 법률에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 특히, 농어업인삶의질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목적규정은 매우 유사하여, 목적규정만 보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개별 농촌지역개발 관계법률의 입법취지를 차별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입법연혁의 특수성

(가) 비교

- 농업식품기본법의 경우, 1999년 2월에 제정되어, 2차례의 전부개정에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개정의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은 크게 차이가 없음
- 농어업인삶의질법의 경우, 2004년 3월에 제정되어 전부개정 없이,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행에 이르

고 있음

- 농촌융합산업의 경우도 2014년 제정되어 전부개정은 없으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의 일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농촌융합산업법상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산업”의 경우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분법·제정된 것이 농촌융합산업법이라고 할 수도 있음
- 농어촌리모델링법의 경우, 2013년에 제정되어 2017년 11월에 1차례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다른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 법률의 명칭을 반영하는 정도의 개정일 뿐, 실제규정의 개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도농교류법의 경우, 2007년에 제정되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과 유사한 내용이 제정 당시부터 규정됨
-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1994년 12월에 제정되어, 2차례의 전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 1월의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음
- 또한 농어촌정비법의 2008년 3월 개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여,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 또한 특징으로 들 수 있음

(나) 분석

- 농어촌정비법은 지금까지 가장 오랜 입법연혁을 가지며, 2차례의 전부개정 등을 거치면서 관련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유사사업을 통합하려 하였다는 점을 특징적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기타 관계법률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정이후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개별법률로 분법·제정되어 “복수법화”되어 왔다

는 점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을 중심으로 보면 “통합법화”라는 연혁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농어촌 관계법의 전체적 입법체계를 보면 “복수법화”라는 연혁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3] 입법체계의 산만성

(가) 분야별 규정비교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를 통합·연계협력형 농촌개발이라는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27】 농어촌개발 관련법제의 분야별 규정 비교

구분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살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리모델링법	도농교류법	농촌융합산업법
<p>생활환경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 §1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32(농지의 보전) • §48(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 §49(지역 간 소득균형) • §49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 §6(시행계획의 수립) • §7(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 • §29(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38(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39(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정의) 제10호 • §52(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원칙) • §53(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54(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 §55(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 §56(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58(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59(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60(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 §61(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 §62(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 §63(사업시행자 지정특례) • §64(빈집정비) • §65(빈집정비 절차 등) • §66(자진철거지에 대한 지원) • §67(농어촌주택개발자금의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5(농어촌마을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6(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7(총괄계획의 운영) • §8(전반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 §9(정비구역 해제) • §10(행위제한 등) • §11(사업시행자) • §12(사업시행자 지정특례) • §13(농어촌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16(실시계획의 작성 등) • §17(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 §18(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 §19(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23(주택법 등의 적용 특례) • §25(자랑된 등 계약의 해지) • §26(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정의) 제7호 • §3(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68(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 § 69(조상용지의 용도) • § 70(조상용지의 전매행위제한 등) • § 70의2(간선시설의 설치) • § 71(기술지원) • § 101(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 102(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 § 103(마을정비구역지정의 제안) • § 117(지정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7(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 § 28(관리처분계획의 준용) • § 31(건축물의 설치 등) • § 32(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 33(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 34(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 35(간선시설의 설치) • § 38(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3(정의) 제9호나목 • § 10(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 44(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5(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5호) • § 30(농산어촌 결관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5(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 § 55(생활환경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6(실시계획의 수정 등) 제6호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3(정의) 제8호 • § 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 7(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 11(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 19(생산단체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 § 20(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 § 21(식품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31(향토산업의 진흥) • § 35(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제1호 • § 37(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목적) • § 2(정의) • § 4(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 § 72(농어촌산업 육성·지원) • § 73(농어촌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 74(농어촌산업 육성시행계획의 수립) • § 75(농어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7(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 § 35(간선시설의 설치) • § 38(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정의) 제7, 8, 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정의) 제2호 • § 6(기본계획의 수립) • § 8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 § 10(인증의 표시) • § 17(농촌융복합산업지원 전문기관 등) ㉔-6 • § 18(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등) • § 20(창업지원) • § 21(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p>체험 및 관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전 정책 공급) • §33(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 §34(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 현대화 촉진) • §35(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36(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37(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38(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40(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42(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 §43(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47(지구온난화 방지 등) ② • §50(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55(북한의 농업 생산체계의 조사·연구 등) • §57(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 §58(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59(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51(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목적) • §2(정의) 제16호 • §4(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정의) 제4-2호, 제4-4호다목, 제5, 6, 8호 • §5(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조(판로지원사업) 제5호, ② • §27(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 §28(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 §29(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 §30(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 §32(지구 지정의 효과) 제2, 4호 • §34(지구 지원) • §37(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39(청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52(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원칙) • § 55(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9호 • § 81(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 82(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 § 83(관광농원의 개발) • § 84(토지 및 시설의 분양) • § 85(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등) • § 87(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승계) • § 88(지도·감독 등) • § 89(사업장 폐쇄 등) • § 90(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 92(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 § 101(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 104(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호 • § 105(사업지역·지구의 고시 등) • § 106(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17(지정 해제) • § 118(청문) • § 130(벌칙) ④ 제 1, 2, 3호 • § 132(과태료) ① 제1,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6(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 • § 7(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관리 등) • § 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 10(「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 11(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 § 12(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 13(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 § 14(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 15(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 § 16(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 § 17(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 § 20(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 § 21(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 § 22(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 § 25(홍보 및 조사·연구)
--	--	-----------------------------------------------------------------------------------------------------------------------------------------------------------------------------------------------------------------------------------------------------------------------------------------------------------------------------------------------------------------------------------------------------------------------------------------------------------------------------------------------------------------------------------------------------------------------------------------------------------------------------------------------------------------------------	--	----------------------------------------------------------------------------------------------------------------------------------------------------------------------------------------------------------------------------------------------------------------------------------------------------------------------------------------------------------------------------------------------------------------------------------------------------------------------------------------------------------------------------------------------------------------------------------------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 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정의) 제9호나목, 바목 • §4의2(농업인의 날) • §9(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 §10(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 주민의 복지증진) • §11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22(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 §23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 • §24(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 §25(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 §26(전업농업인의 육성) • §27(여성농업인의 육성) • §28(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 §29(벤처농업 등의 육성) • §29의2(귀농업인의 육성) • §39(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41(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 §45(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 §46(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 §53(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54(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62(조세의 감면) • §63(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10(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 §12(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13(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 §14(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15(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16(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17(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 §18(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33(농산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 §34(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정의) 제10, 15호 • §34(특정 용도의 창설 환지 등) ① 제3호 • §55(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8호 • §81(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제1호 • §92(한계농지 등 정비의 종류) 제3호 • §125(농어촌 정비협약) 제1항 		
-------------------------------------------------	-------------------------------------------------------------------------------------------------------------------------------------------------------------------------------------------------------------------------------------------------------------------------------------------------------------------------------------------------------------------------------------------------------------------------------------------------------------------------------------------------------------------------------------------------------------------------------------------------------------------------------------------------------------------------------------------------------------------------------------------------------------	-----------------------------------------------------------------------------------------------------------------------------------------------------------------------------------------------------------------------------------------------------------------------------------------------------------------------------------------------------------------------------------------------------------------------------------------------------	-------------------------------------------------------------------------------------------------------------------------------------------------------------------------------------------------------------------------------------------------	--	--

	• § 63의2(농업정책보험금공원의 설립)							
환경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5(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 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80(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 101(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③ 제8, 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8(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나) 사업별 근거비교(1)

-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제를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류하면, 우선 기초인프라 구축, 소득증대, 도농교류, 역량강화, 주거공간조성, 사후관리,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분류는 “박창원·임상봉·김진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제도개편방안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7”에 따른 것임

【표-28】 기초인프라 구축 관련법제(1)

세부사업	근거법령	소관부처	근거조항(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부, 기재부	10, 34, 35의2, 35의3
	농어업인 삶의 질법	농림부, 해수부	38, 39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52, 71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 시행지침		-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2, 10, 58-61, 114-
농어촌 경관계획수립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5
	농어업인 삶의 질법	농림부, 해수부	30
	경관법	국토부	9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시범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법	농림부, 해수부	29, 38, 39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52, 71

【표-29】 기초인프라 구축 관련법제(2)

세부사업	근거법령	소관부처	근거조항(조)
어촌종합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부, 기재부	10, 34, 35의2
	농어업인 삶의 질법	농림부, 해수부	38, 39
	어촌어항법	해수부	6
어도개보수사업	내수면어업법	해수부	19의5, 19의6②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법	해수부	24
	보조금관리법	개재부	4①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법	농림부, 해수부	29, 38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55, 58, 71, 101, 108
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입지법	국토부	5, 8
	산업집적활성화법	산업부	32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77, 80

【표-30】 소득증대 관련법제(1)

세부사업	근거법령	소관부처	근거조항(조)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어업인삶의질법	농림부, 해수부	11, 35, 36, 37
	도농교류촉진법	농림부, 해수부	-
	농촌융합산업법	농림부	-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농업식품기본법	농림부	10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2
	농어업인삶의질법	농림부, 해수부	12, 14, 19, 29, 31, 35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해수부	38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해수부	4
	농어업인삶의질법	농림부, 해수부	31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	내수면어업법	해수부	5, 17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수부	13

【표-31】 소득증대 관련법제(2)

세부사업	근거법령	소관부처	근거조항(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내수면어업법	해수부	5, 17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수부	13·1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행안부	21
	도서개발촉진법	행안부	4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행안부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부, 기재부	34
농어촌 다원적 지원활용	농어업인삶의질법	농림부, 해수부	30의2
	농업식품기본법	농림부	45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5

【표-32】 소득증대 관련법제(3)

세부사업	근거법령	소관부처	근거조항(조)
농어촌자원 복합화산업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부, 기재부	16
	농업식품기본법	농림부	50, 51
	농어업인삶의질법	농림부, 해수부	31, 35, 38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73, 74, 77, 78
	산업입지법	국토부	5
	도농교류법	농림부, 해수부	6, 12
	식품산업진흥법	농림부, 해수부	3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업식품기본법	농림부	50
	농어업인삶의질법	농림부, 해수부	31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72
	농촌융합산업법	농림부	25

【표-33】 도농교류 관련법제

세부사업	근거법령	소관부처	근거조항(조)
해양관광 자원시설 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부, 기재부	34, 35의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수부	28①
농촌테마공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부, 기재부	16
	농어업인삶의질법	농림부, 해수부	31, 35, 38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73, 74
	도농교류법	농림부, 해수부	6, 12
농촌 관광자원 휴양자원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해수부	2, 81, 82, 84, 85

【표-34】 기타사업 관련법제

유형	세부사업	근거법령	근거조항(조)
역량강화	어촌특화 역량강화 사업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해수부)	6
주거환경 개선	창조적 마을 만들기	농어촌정비법	52-71, 101, 103, 130
		주택법(국토부)	2, 10, 23
사후관리	농촌지역 종합개발지원	농어업인삶의질법	11, 3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7의2, 9
		농어촌정비법	71

(㉔) 사업별 근거비교(2)

- 농촌지역개발법제를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또 다른 분류로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따른 분류로서, 거기에서는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지역개발, 농어촌용수관리 등의 분류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관련법제 및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35】 농업생산기반 관련법제

사업구분	목적	근거법령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양수장·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 •안전영농 기반구축과 환경개선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6- § 10, § 108

<p>지표수보강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시설 내한능력 부족으로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원공(저수지·양수장·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보강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6- § 10, § 108
<p>농촌용수 이용체계개편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수계 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이미 개발된 여유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에 의한 소규모 수리시설을 통합·재편하여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6- § 10, § 108
<p>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황강댐 담수 대비 임진강 수계 내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유지 •임진지구 내 평야부 용수간선(도수로)의 관수로화 필요 •영농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발전 및 안정적인 식량안보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6- § 10, § 108
<p>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하천수계 등을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용수개발·경지정리·간척·배수개선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및 영농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1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p>대구획 경지정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 구획이 작거나 용·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논을 재정비하여 편익영농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6- § 10, § 108
<p>배수개선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수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역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 •논에서의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 재배여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6- § 10, § 108
<p>기계화경작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지정리된 농경지 내 주요 경작로,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유통시설 간 농로를 확·포장하여 편익영농 및 농산물 유통개선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6- § 10, § 108
<p>밭기반 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적화된 밭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7, § 8, §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으로 용수개발·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p>농경지 안전성 조사 및 GAP 활성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주변 농경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로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 도모 •지역특산물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GAP인증을 위해 위해요소 관리지도, 인증신청 지원 등 GAP컨설팅 수행으로 우리 농산물의 신뢰 제고 및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61 (안전성 조사), § 6(농산물 우수 관리의 인증)
<p>조성토지 관리·처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에 대하여 임대 및 매각, 매각대금 징수, 내부개답 전 임시사용, 매각 전 일시사용으로 농가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관리기금 재원 적기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31
<p>농지활용 지원사업 (간척농지실태조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척지 대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 대규모 농어업 회사를 육성하여 농업수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제반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간척지의 농업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기본법 § 28 •농어촌정비법 § 1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실태조사)
<p>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통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실적을 기록·보존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사업성과 홍보, 농정시책 수립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1⑤⑥(농생산기반정비 설치사업)에 따른 일체의 시설

【표-36】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사업구분	목적	근거법령
<p>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34, § 35의2, § 4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 38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39(농어촌거점지역의 육성)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친환경 휴양·레저·체험 공간 조성 •지자체의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특법 § 16(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농어업인 삶의 질법 § 31, § 36 •농어촌정비법 § 55, § 73
농공단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유치 및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 5(산업입지개발지침), § 6(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장설립법) § 32(산업단지관리지침 등) •농어촌정비법 § 77(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 80(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농어촌지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전원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유지 및 농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 52~ § 76, § 101~ § 103, § 130
농촌지역개발 종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보조계획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삶의질법 § 11(재정지원), § 38(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농어촌정비법 § 71(기술지원 등)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되는 농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리모델링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농어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적 토지이용을 통하여 형성된 경관 및 전통농법 등 농촌 고유의 다원적 자원 및 농업유산자원을 복원·관리·활용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가치를 증진하고, 차세대에 계승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 46(전통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농어업인 삶의 질법 § 30 •농어촌정비법 § 5(농어촌 경관의 보전·관리)

<p>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농외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삶의 질법 § 35(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36(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 37(도농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촉진법)
<p>농촌지역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산업육성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특법 § 16(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인 삶의 질법 § 11(재정 지원) • 농어촌정비법 § 75(농어촌산업육성지원기구의 지정)
<p>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및 캠페인 추진 등 농촌재능나눔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확대를 통한 농촌 활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식품기본법 § 10 • 농어업인 삶의 질법 § 19의3
<p>농촌자원조사사업 (농업진흥지역실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지별 보전방식을 권역별 보편방식으로 개편하여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농어촌공사법) § 34(기금의 용도) • 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 31(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p>어촌특화발전 역량강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6차산업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6(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 27(특화어촌위원회), § 28(주민제안 등)
<p>어촌활력정착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지역의 활력 정착을 위하여 해양수산물 소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성과제고 지원체계 구축 •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단순한 개별 산업구조 방식에서 벗어나 어촌산업의 외연 확대 및 다각화를 위하여 어촌 6차산업화와 연계한 체계적인 정부정책 사업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어항법 § 49의2(어촌·어항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p>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수 저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규모 유휴저수지를 활용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어업법 § 5(시책마련), § 17(보조 등)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13(보조대상 사업)

	원 개발	
어촌의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 고유의 문화발굴 및 국가 지정 어업유산 관리·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통어업기술과 어촌의 다원적 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활용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기본법 §45(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농어업인 삶의 질법 §30(농어촌 경관의 보전) 농어촌정비법 §5(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집적화·현대화로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면어업법 §5(시책마련), §17(보조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3(보조대상 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을 통하여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활력을 창출하여 주민의 체감복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 삶의 질법 §29(농어촌의 기초생활 여건개선) 제1항 제5호 및 제2항, §35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표-37】 농어촌용수관리 관련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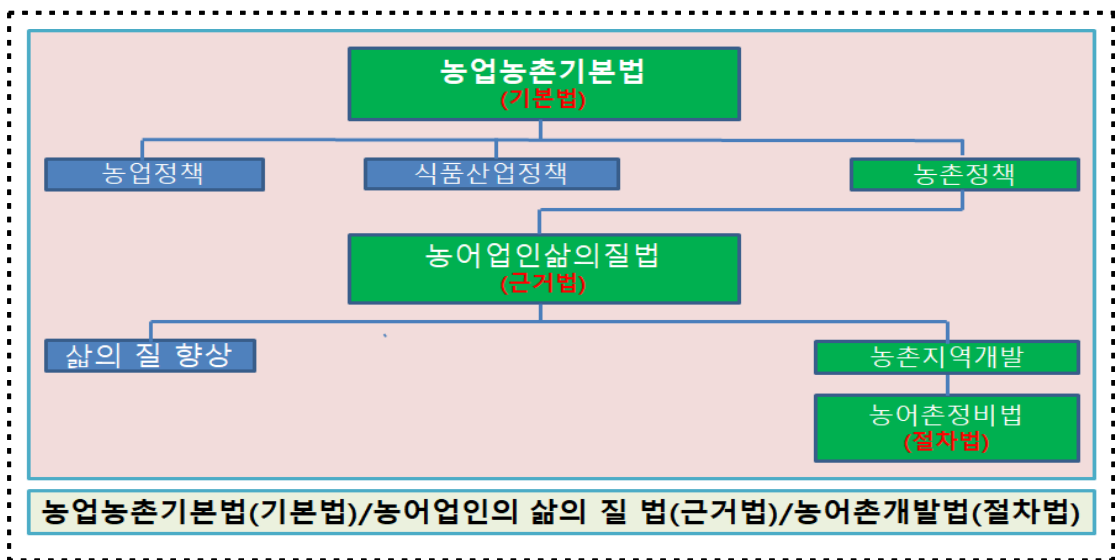
사업구분	목적	근거법령
수리시설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관리지역 내 수리시설(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보 등)을 활용하여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적량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16(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18(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9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2, §7, §8, §9, §18, §108
방조제 개보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 및 해일 등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 등을 보수·보강하여 재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2, §7, §8, §9, §18, §108 방조제관리법 §6, §7
농업용수 관리자동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반시설을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제어시설에 의하여 집중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물 관리 및 시설관리로 물 관리비용 절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2, §108

<p style="text-align: center;">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자연환경과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21(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
<p style="text-align: center;">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수 수질관리 정책수립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 §28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11
<p style="text-align: center;">지하수 자원관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 및 도서지방의 지하수 과다 개발·이용으로 인한 해수침투의 영향을 조사하여 염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15(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21(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 •지하수법 §5(지하수의 조사)
<p style="text-align: center;">양식용수 관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온·수질이 일정한 지하해수 공급으로 에너지 비용절감과 양식업 경쟁력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시책과 장려 등)
<p style="text-align: center;">재해복구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수해로 인한 수리시설 및 방조제를 신속히 복구하여 안전영농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대책법 §46(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p style="text-align: center;">대형기반시설 치수능력 증대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빈발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대형 농업기반시설의 풍수배제능력을 확보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6- §10, §108 •시특법 §15
<p style="text-align: center;">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지진·이상홍수 등의 재해로 예기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저수지·댐관리자의 책무) •자연재해대책법 §37(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20(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하천법 §26(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수리시설 재해예방 계측시스템 설치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물리탐사 기법과 연계한 장기계측을 실시하여 누수 및 제체변위 등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18(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지진재해대책법 §6(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라) 문제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대표적인 “근거법”으로서 특별법적 개념의 농어업인삶의질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들 수 있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법”으로서 농어촌정비법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아래와 같이 농어촌정비법은 전체적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핵심적인 현행법령에 해당함

【그림-6】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법제 기본구조



- 다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정별 중복 또는 사업별 근거규정의 복잡성·산만성으로 인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관계법률의 입법체계에 대하여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입법체계의 산만성이라는 문제는 농어촌정비법의 분법 및 농어촌 관계법률의 전반적 입법체계의 정비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농어촌정비법의 분법에 관한 제4장에서 서술하기로 함

[4] 기본법간 연계성 부족

(가) 농촌·어촌·농어촌의 법적 개념

- 농촌지역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업식품기본법, 수산업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등의 규정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서는 “농촌”을 “읍·면의 지역, 읍·면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기초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5-171호)에서 농촌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는 “농어촌”(제1호)과 “준농어촌”(제2호)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서는 “농산어촌”(제8호)을,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조에서는 “농어촌”(제1호) 등을 각각 정의하고 있음

【표-38】 관계법률상 농촌 및 농어촌 지역의 개념

법률명	정의규정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5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 <u>농촌</u>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농어촌</u> ”이란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 <u>준농어촌</u> ”이란 광역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 <u>광역시 자치구</u> ”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 <u>농지법</u> 」에 따른 <u>농업진흥지역</u> 과 「 <u>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u> 」에 따른 <u>개발제한구역</u> 을 말한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농어촌</u> ”이란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5호와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도농교류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농어촌</u> ”이란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농촌융합산업법 (제1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농촌</u> ”이란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5호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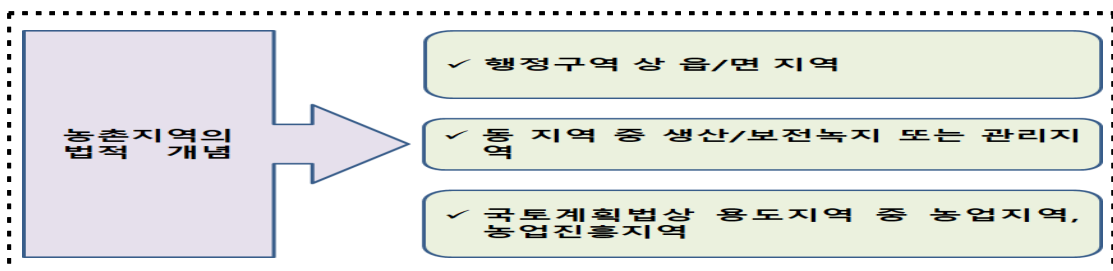
	른 농촌을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기본법) (제1조 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항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동역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귀농귀촌법 (제2조 제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여하튼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촌” 및 “농어촌” 등의 법적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6】 관련법률 상 농촌지역의 법적 개념(1)

법률	용어	의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산어촌	✓ 농촌, 산촌
농업식품기본법	농촌	✓ 읍/면의 전 지역,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도시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준농어촌	✓ 농어촌은 농촌과 어촌, 준농어촌은 광역시/자치구 중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업기본법	어촌	✓ 읍/면의 전 지역,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하천, 호수, 바다에 인접하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그림-7】 농촌지역의 법적 개념(2)



(나) 문제점

- 이와 같이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공통적으로 “읍과 면”을 포함하여 농촌의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종래 “읍” 지역을 농촌과 분리된 공간(도시)로 간주해 왔으나, “읍”과 그 주위의 마을을 통합한 공간적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농촌정책의 완결적 형성이 가능하게 됨
- 다만, 농어촌정비에 있어서 농업식품기본법은 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은 근거법, 농어촌정비법은 절차법이라는 구조에서 수산업기본법상 “어촌”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촌”의 발전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와 관련이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상황은 농업식품기본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독자적인 “농촌”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의 기본법적 연계성이 부족함을 의미하기도 함

제3장

주요외국의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1. 독일

(1)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개관

(가) 추진목적

-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지방의 충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나 각종 교육시설, 고용시장, 생활의 질 및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균형발전국가로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적은 국가에 해당함
- 독일의 경우, 연방주의로 인하여 각 주(Länder)에 대하여 독자적인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농촌지역개발은 주의 권한에 속하지만, 연방기본법(Grundgesetz)의 제정 이후에는 각 연방의 협력과 통합이 강조되고 있음
- 이로부터 연방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별 특화된 산업을 발달시키고, 산·학·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촌지역개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독일의 농촌지역개발 관련정책은 정체된 지역의 발전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입장에서 균형적인 경제개발을 통한 지역 간 삶의 기준과 고용격차의 감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나) 추진체계

-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연방기본법에 따라 각 주별로 독자적인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가 정책의 선택과 이에 대한 각종 지원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농촌지역개발정책을 주도하고 있음
- 이로부터 연방정부는 주로 각 주별 농촌지역개발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컨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이념·목적 등에 관한 공간정비법(Raumordnungsgesetz, ROG)을 제정하고, 각각의 주정부가 이를 구체화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공간정비법(ROG) “국토정비의 기본원칙”(Grundsätze der Raumordnung)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그 중에서 농촌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독일 공간정비법(ROG)상 농촌정비의 기본원칙】

- 독일연방공화국의 모든 영역에 “정주 및 자유 공간(Siedlungs und Freiraum)”을 개발해야 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영역과 거주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태계의 신진대사 기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별 영역에서 경제적·하부구조적·사회적·생태적·문화적 관계가 상호 조화적으로 나타나야 함(제2조 제2항 제1호)
- 이러한 정주 자유 공간에는 경지와 수자원, 동식물계 및 기상 등이 보장되거나 기능적으로 재창출되어야 하며, 정주 및 자유 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경제적·사회적으로 이용하여야 함(제2조 제2항 제3호)
- 농촌공간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생활 및 경제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적절한 인구구조가 창출되도록 해야 하며, 농촌공간에는 중심지역을 육성해야 함(제2조 제2항 제6호)
-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연방의 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이나 낙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조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발전의 전제조건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수준 높은 교육과 취업 가능성, 환경조건 및 하부구조의 개선이 포함되어야 함(제2조 제2항 제7호)
- 하천과 삼림을 비롯한 자연 및 경관은 보호·관리·개발되어야 하고, 지하수의 원천은 보호되어야 하며,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그 토질이 보전되거나 재창출될 수 있도록 함(제2조 제2항 제8호)
- 농업을 농가 중심으로 구조화된 경쟁력 있는 경제의 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인 전제조건이 창출되거나 확보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임업과 함께 토지와 결부된 농업이 보호되어야 함(제2조 제2항 제10호)

- 독일의 경우, 농촌지역개발정책의 기획·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위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기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의 집행을 각 주정부의 고유사무로 취급하는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각각의 주정부에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1969년의 연방기본법 개정으로 광역적 행정과제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가 명문화됨으로써, 협력적인 광역권 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독일의 광역권은 도시의 잠재력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광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기업·주민 등의 실질적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거기에 광범위한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추진체계 하에 독일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은 농업과 농촌의 여건변화를 지속적·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식량증산 : 토지생산성 향상(1950년대 초 까지)→ 농업구조개선 : 노동성생산성 향상(1960년대 초 까지)→생활환경정비 : 농촌구조개선(1970년 중 까지)→자연환경정비 : 농촌경역보전(1970년 이후)의 순으로 전개됨

[2] 농촌지역 개발법제의 내용

(가) 연방기본법

- 연방기본법은 농촌지역개발 정책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입법권한에 관한 규정에서 동등한 생활조건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연방과 주의 협력적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방기본법 제91조a에서는 연방의 주에 대한 협력을, 제91조b에서는 연방과 주의 협정에 의한 협력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독일 연방기본법 제91조a 및 제91조b의 주요내용】

- 연방기본법 제91조a조에 따른 연방의 주에 대한 협력
 - (1) 업무의 성격상 연방 전체 차원에서 중대하고 주의 생활상황 개선을 위하여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연방은 아래의 영역에서 주의 업무수행에 협력한다.
 1. 지역경제구조의 개선
 2.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
 - (2) 공동과제 및 협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에서 규정한다.
 - (3) (1)과 (2)의 경우 연방은 각 주에서 지출한 금액의 반액을 부담한다.
- 연방기본법 제91조b에 따른 연방과 주의 협정에 의한 협력
 - (1) 연방과 주는 지역적 범위를 초월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협정에 따라

아래의 사안의 촉진에 협력할 수 있다.

1. 대학 외부에서의 학술적 연구의 계획
2. 대학 내부에서의 학술적 연구의 계획
3. 대규모 장비를 포함한 대학에서의 연구용건물

(2) <생략>

(3) 비용의 부담은 협정으로 정한다.

- 이러한 연방기본법상 공동과제 조항에 기초하여 독일에서는 대학시설의 확장, 농촌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촌과 연안보호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공간정비법

- 공간정비법(ROG)은 연방 소속의 다른 지역과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접경지역 자체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시키는 “구서독 접경지원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 원칙에 따라 교육·문화·교통·공급 및 행정에 관한 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됨
- 이로부터 공간정비법은 국토개발의 이념으로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휘로 모든 지역과 공간에서 동등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국토공간의 발전”이라는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있음(제1조)
-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농촌공간 관련정책의 주체는 각 주정부이므로, 연방정부가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되어 있고, 이로부터 연방정부는 간접적으로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및 공간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즉, 농촌지역개발 관련정책의 추진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전반적 법제도의 제정이며, 공간정비법은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정부에 대하여 지역발전 및 공간 계획의 내용·목적을 제공하고 있음
- 농촌 및 지역발전과 공간 계획에 관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① 지역발전 및 공간 계획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 ② 교통에 관하여 주

정부 계획에 대한 연방정부 수준으로의 통합, ③ EU에서 대표로서의 역할, ④ 새로운 계획과 원칙의 제시, ⑤ 선진사례의 제시, ⑥ 공간개발 모니터링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에 지역발전 및 공간계획의 구체적인 수행과 세부적인 사항의 실시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의 행사는 없다고 볼 수 있음

(타) 주국토계획법(Landesplanungsgesetz)

-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 (도시)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별로 주국토계획법이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주국토계획”과 “주발전계획” 및 “광역지역계획” 등이 수립·시행되고 있음
- 이 중에서 “광역지역계획”은 주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눈 광역계획이며, “주국토계획”과 “주발전계획”은 지역계획 수립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기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농촌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니므로 농촌정비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정비의 방향 및 구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짐에 불과함

(략) 건설법전(Baugesetzbuch)

- 기존 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과 도시건설촉진법(Städtebauförderungsgesetz)을 통합(1985년)하여 만든 건설법전은 지역 개발 및 건설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에 해당함
 - * 이 연방건설법전은 총 247조에 이르며, 일반도시건설법(Allgemeines Städtebaurecht), 특별도시건설법(Besonderes Städtebaurecht) 및 기타 규정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됨
-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와 그 연합체인 시(Stadt)와 군(Kreis)은 이 연방건설법전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개발에 관하여 무제한의 계획고권을 가지며, 이 권한에 기초하여 “건설지침계획(Bauleitplan)”을 책정함
- 이 “건설지침계획”은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되는 게마인데 전역에 미치는

“토지이용계획(Flächennutzungsplan)”과 건축용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지구상 세계획(Bebauungsplan)”으로 이루어짐

- 농촌정비는 거주환경의 정비를 중심과제로 하므로 “건설지침계획”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 계획과 후술하는 농지정비법에 따른 농지정비계획의 상호조정 및 관련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

(바) 농지정비법(Flurbereinigungsgesetz)

- 독일에서는 농지정비법에 따른 농지정비사업(Flurbereinigung)을 통하여 농지뿐만 아니라 농촌공간이 통합적으로 정비되고 있음
- 이는 독일의 농지정비사업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통적인 경지정리뿐만 아니라 농촌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및 어메니티를 고려하는 농업 및 농촌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농지정비법에 따라 농지정비청이 농지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지정비결정에 따라 농지정비청이 농지정비를 명하고, 농지정비구역을 확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농지정비청은 이러한 농지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공간정비, 국토계획 및 계획된 도시개발, 환경보호, 자연보호, 경관유지, 농촌정주, 소도읍 정주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농지정비법 제37조 제2항)
- 농지정비법에 따른 농지정비사업은 사업을 발의·관리·감독하는 농지정비청과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소유자 연합체인 참가자조합(Teilnehmergeinschaft),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직종대표(농업회의소)에 의해 추진됨
- 기본적으로 농지정비청은 농지정비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이고, 정비사업의 추진은 참가자조합이 담당하며, 농지정비사업의 비용 중 행정 및 운영비는 농지정비청이 담당하고, 사업비는 참가자조합이 담당함
- 농지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로 농경지 및 임야이지만, 공공시설용지·택지 등의 비농업용지를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획적으로 비농업용지를 창

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마을재정비사업(Dorferneuerung)도 이러한 농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체적 농촌정비를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음

(바) 농업구조 및 연안 보호법

-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법은 농업과 임업을 보장하고, 유럽공동체의 공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연안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됨
- 이 법에서는 공동과업의 대상을 농업과 임업의 생산조건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 지속적으로 이행능력 있는 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업·어업·임업에서의 시장개선을 위한 조치, 북해연안과 동해연안과 해일에 대비한 조수영향권 내의 흐르는 지상하천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 등도 규정하고 있음

[3] 특징

(가) 공동과제의 기능적 중요성

- 독일의 농촌정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연방기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공동과제”로서, 이것은 지역개발 등 본래 주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국민 전체에 특별히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연방과 주의 공동과제로서 연방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말함
-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과제에 해당하는 것은 “대학건설 촉진”과 “농업구조 개선 및 해안보호” 및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방과 주가 각각 50%씩 재정을 부담하고 있음
- 예컨대,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의 공동과제는 농지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구조 개선조치 및 마을재정비에 대한 연방의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고,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의 공동과제는 농촌지역 등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거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나) 농촌정비 관련계획의 특성

-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농촌정비는 농지정비(Flurbereinigung)와 마을재정비(Dorferneuerung)라는 양축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음
- 독일의 농촌지역 정비에 관한 계획은 보통 종합계획(Gesamtplan)과 전문계획(Fachplan)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종합계획으로는 공간정비법에 따른 “연방공간정비계획”과 주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국토계획” 및 “광역지방계획”이나 건설법전에 따른 “건설지침계획”을 들 수 있음
- 전문계획으로는 특정부문의 개별법에 근거한 교통시설, 수리시설 등 특정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자연보호, 경관보전에 관한 계획 및 전술한 “농지정비계획” 등이 이에 속함
- 이와 같이 “건설지침계획”과 “농지정비계획”은 각각 종합계획 및 전문계획 중에서 특수한 계획의 위치에 있으며, 특히 전자는 형식적으로 종합계획이나 실질적·내용적으로는 전문계획으로 이해되고 있음
- 여하튼 “건설지침계획”과 “농지정비계획”은 모두 일정구역의 토지 이용을(전자는 도시적인 관점, 후자는 농촌적인 관점) 조정·확정하는 지구 수준의 계획수단으로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짐

(다) 마을재정비사업의 특성

- 마을재정비(Dorferneuerung)사업은 촌락지역에서 거주지구의 확대, 주택의 개·보수 및 이전, 도로의 확장, 배수로의 정비,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확보 및 관련시설의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 이러한 마을재정비사업에서 특징적인 것은 현대적 사회생활의 편리성이 추구됨과 동시에 역사적 경관이 보존되거나 재현되는 등 촌락의 전통적·개성적 발전을 중시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제도적으로 마을재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건설법전과 농지정비법을

들 수 있으며, 건설법전에 따른 마을재정비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상세계획이라는 수단을 통해 추진될 수 있고, 농지정비법에 따라서는 촌락지역을 농지정비 구역에 포함하는 형태로 환지수법을 활용하여 용지를 창출할 수 있음

- 결국 주민의 사업신청에 의해 지역 농업정비청의 사전심사와 주정부의 심사를 거쳐 마을재정비사업이 결정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정비청 및 지역주민 등의 공동노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2. 영 국

(1) 농촌지역 관련정책의 개관

(가) 추진목적

- 영국의 경우, 농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상당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지방간의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농촌 및 지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남동부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로부터 2003년부터 영국에서는 현대적 농촌·지역 정책을 광범위하게 채택하면서 생산성의 핵심적 동력(경쟁력, 창의성, 혁신, 기술력, 투자)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그 후의 농촌·지역 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과 모든 지역(도시와 농촌지역)의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성장 지역과 정체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히는 것과의 균형을 중요시하면서 추진됨
- 또한 농촌·지역 정책은 행정적 경계와 기능적·경제적 경계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장의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키고, 농촌·지역에 집중되는 쇠퇴공간의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

(나) 추진체계

- 영국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계획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of 1947)을 통하여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게 됨

- 농촌계획 수립체계를 살펴보면, 국가차원의 “국가계획정책프레임워크”(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NPPF)와 지역차원의 “지방개발계획체계(Local Development Framework, LDF)” 및 근린차원의 “마을/패리쉬계획(Village/Parish Plan)”으로 구성됨
 -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NPPF를 수립·제시하여 지방의 공간계획이 중앙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지방 차원에서는 “2004년 계획 및 토지수용법”(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의 제정 이후 기존의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차원의 LDF를 마련·시행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이러한 계획체계 하에서 농촌 및 지역개발 관련정책은 중앙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지역단위 개발기구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음
- 중앙정부는 농촌 및 지역개발 관련정책의 수립 및 계획지침을 설정하고, 전국 및 지역단위 개발기구에 해당하는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전국단위 지역발전기구는 지역단위에 지역별 RDA를 설치하여 새로운 고용창출, 상·공업의 활성화, 주거 및 여가공간의 건설, 주택을 위한 토지와 기반시설의 구축 등 다양한 지역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 및 내부투자를 증진하고, 광범위한 기업지원 조치를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개발기구를 두고 있으며, 지역발전기구와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농촌지역 관련법제의 내용

(가) 관련법제의 현황

- 영국의 경우, 농촌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1990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이라

할 수 있음

* 그 밖에도 1990년 계획<지정건축물 및 보전구역>법 Planning<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1990년 계획<위험물질>법 Planning<Hazardous Substances> Act 1990), 1990년 계획<개정에 따른 규정>법 Planning<Consequential Provisions> Act 1990), 1991년 계획·보상법(Planning and Compensation Act 1991)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도시 및 농촌개발 관련법률 외에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주거법(Housing Act), 신도시법(New Towns Act), 환경법(Environmental Act) 등도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도시 및 농촌개발 관련제도는 “1947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에서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그 후 다수의 개정을 거쳐 계획허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나) 계획허가제도

- 영국의 토지이용 관련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미개발지의 개발권이 국유화 되어 있어 개발로 인하여 생긴 이익을 환수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즉, 토지의 사적 소유권으로 인하여 개발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토지 소유자와 규제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토지소유자가 발생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일어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권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발생함
- 이에 따라 개발권을 토지 소유권에서 분리하여 개발가치를 국유화하는 내용이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도입되면서 현행 토지이용제도의 골격이 만들어진 것임
-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가치를 국유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현재의 이용가치보다 높은 시장가치를 확보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결국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됨
- 이로부터 영국의 개발규제(development control)는 개발행위에 대한 개별 심사

에 의한 허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즉, 모든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지방계획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 허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발전계획(development plan)과의 합치 여부”이며, 이로부터 “계획허가제도(planning permission)”로 불리고 있음

(ㄷ) 지원지역지원제도

- 영국에서는 농촌 등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개발지구제(Development Districts)가 도입됨
- 1982년에 제정된 “산업발전법(Industrial Development Act 1982)”에 따라 기존 특별개발지역, 개발지역, 중간지역 등 3계층 구조 중 특별개발지역이 폐지되고, 개발지역과 중간지역으로 구성된 2계층 구조로 단순화됨
- 지역기업보조금(regional enterprise grant)은 개발지역(DAs)에만 제공되는 것이었으나 1992년 이후 지역기업보조금(REG) 가운데 혁신보조금이 중간지역(IAs)에도 허용되며, 지역선별지원금(RSA)은 두 지역에 모두 제공됨

(ㄹ) 지역개발지원제도

- 1964년에 도입되어 지역개발촉진의 주요 정책수단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자동보조금제도 성격을 지닌 지역개발보조금(RDG)과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지원조건이 비교적 제한적인 지역선별보조금제도(RSA)만이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으로 존속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이전보조금 및 이자보조, 공장시설의 공급, 임대 감면제와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정부구매 특혜지원, 기업상담지원(enterprise initiative) 등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ㅁ) 농촌개발사업

- 영국의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전담부처를 통하여도 추진되지만, 농촌기구(Countryside Agency) 등의 비정부조직에서도 별도의 체계 속에서 농촌 대

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환경민감지역 보존사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ESA)을 들 수 있음
- 이 사업은 1987년에 친환경적 농촌 보존 및 관리시책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국가와 농가가 환경보전적인 농지이용관리협정을 10년 계약으로 체결하여 해당되는 토지 당 일정 액수를 매년 지원함
- 협정을 체결한 토지 소유자는 경관, 역사자원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계약상으로 지정된 토지관리 방식을 준수해야 함
- 계약 체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는 보상금 지급 이외에도, 농장의 환경자원 평가, 환경을 고려한 농업실천을 위한 조언과 기술지도 등이 있음
- 해당 농가는 ESA 대상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보전계획(conservation plan)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길 경우 정해진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둘째, 전원지킴이사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을 들 수 있으며, ESA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실시되는 보조금제도로서, 농촌위원회(Countryside Commission)에 의해 시범제도로 도입됨
- 이 사업은 아름답고 다채로운 경관의 유지와 보존,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사적 또는 고고학적 유적지의 보존, 황폐화된 토지의 복원, 새로운 야생동식물 서식지와 경관의 창출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함
- 10년간의 협정을 맺어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가나 토지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1ha당 일정 금액을 매년 보조함
- 셋째,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Hill Farm Allowance Scheme, HFA)을 들 수 있으며, 조건불리지역(Less Favored Areas)의 농·축업을 지원하던 정책의 연장선에서 2001년에 도입된 사업으로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농가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제공함
- 이 직접지불금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규모로 1ha당 일정 액수가 기본

적으로 주어지며, 생물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거나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등에는 추가적인 지원금이 제공됨

[3] 특징

-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의 농촌지역 개발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개별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계획허가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 계획허가제도의 도입·운영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함으로써, 농촌지역 토지의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의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개별 추진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업추진의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음
- 즉, 지역지원지정제도, 지역개발지원제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원의 경우, 토지보전계획의 준수, 환경 및 경관의 보호, 토지의 황폐화 방지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음

3. 미 국

[1] 농촌지역 관련정책의 개관

(가) 추진목적

- 미국의 경우 1961년에 “지역재개발법(Area Redevelopment Act of 1961)”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만성적인 실업 및 과소고용에 처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산업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도시 및 농촌지역 개발 및 지역산업육성 정책의 목적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연방정부의 보조금제도의 종류 및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의 농촌개발 및 지역개발 정책은 만성적인 실업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지역과 농촌을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함
- 그 후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경제적 쇠퇴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과 도시가 경기부흥에 필요한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책이 추진됨
- 이와 같이 미국은 장소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저개발 농촌지역이나 경제침체 또는 구조조정 지역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추진체계

-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의 특성으로 경제개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 정부가 담당하므로, 주 정부가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여 농촌 및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구조를 취함
- 주와 지방, 민간부문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고,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은 농촌지역 개발부터 노동력 조정과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섭하고 있음
- 특이한 점은 단일 부서나 기관이 정책을 감독하지 않는다는 점으로서, 9개 이상의 연방 부서들이 미국의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바, 농촌지역을 비롯한 지역경제 개발에 관한 연방 부서는 다음과 같음

【미국의 농촌지역개발 관련 주요부서】

- **상업 및 경제 개발 관리부(EDA)** : 상무성의 산하 기구인 EDA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직업을 지원하며, 미국의 경제 침체 지역의 산업적 상업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 공공근로와 경제개발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주요임무는 “혁신과 경쟁력을 장려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성공 속에 미국을 위치시킴으로써 연방 경제 개발 의제로 이끄는 것”임
- **주택도시개발부(HUD)** : 1937년 미국 주택법과 1965년 주택도시개발법에 따라 내

각 차원의 기관인 HUD가 창설되었으며, 그 주요임무는 주택 소유권을 개선시키고 공동체 개발을 지원하며, 주택에 대한 차별적이지 않은 접근을 허용하는 것임

- 농무부(USDA) : USDA는 19세기에 창설되었으며, 현재 임무는 건설한 공공 정책과 최고의 과학, 효율적 관리에 기초하여 식량과 농업, 자연자원,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전원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임무는 모든 전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경제적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임

- 한편, 미국에서는 농촌 및 지역의 개발과 도시계획 또는 성장관리 정책에 관하여 연방 차원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이나 성장관리 정책의 구조와 내용은 주정부에 의한 주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주마다 특색과 차이점이 존재함
- 따라서 미국이 경우 농촌·도시계획의 내용을 실제로 규정하거나 운용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치단체는 종합계획, 지역설정계획, 택지분할규제라고 하는 종래부터의 개발계획과 규제수단에 추가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설정계획, 계획단위개발, 개발권 이전, 특별지역 설정계획지구, 디자 인심사 등 다양한 계획과 규제 및 유인수단을 운용하고 있음

(2) 농촌지역 관련법제의 내용

(가) 농촌법제의 변화

- 미국의 농업정책은 WTO체제 이전까지는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지지와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생산조정 등이 주축을 이루어 왔으며, 정책의 내용은 법률로서 규정하여 왔음
- 미국의 주요농업정책은 193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배경으로 1933년에 가격지지로 농가소득 증대를 내용으로 하는 농업조정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소맥, 목화, 옥수수, 돼지 등의 생산을 조정하는 대신에 이들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일정가격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조지원, 즉 농산물의 가격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됨

- 1973년의 농업·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맥 등 기본 작물에 대해 농산물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가 시장에서 최저판매가격을 용자하여 보장하는 용자단가제도에 바탕을 둔 가격유지와 함께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차액(부족분)을 보상하는 차액지불제도를 도입함
- 1977년에는 농가비축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생산을 자극하여 1980년대의 생산과잉의 원인이 되었음
- 이로부터 1985년에는 농산물 수출증진계획이 작성되었고, 1986년에는 수출경쟁력이 저하된 쌀이나 목화에 대하여 유통용자(Marketing Loan)가 실행되었으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1985년 연방농업개선 및 개혁법(Fede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에서는 1980년대의 세계적인 농산물 과잉을 배경으로 한 농산물 가격하락과 수출부진에 기인하는 농업부진에 대처하기 위한 한 정책으로 ① 가격·소득지지제도, ② 수출진흥책, ③ 국경보호조치 등이 강화됨
- 1996년 농장법(Farm Bill 1996)에서는 종전의 핵심적 농업정책이었던 차액보상제도를 폐지하고, 고정차액보상제로 대체시켰으며,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함
- 그 밖에 1990년대 입법된 법률로는 1994년의 연방작물보험 개혁 및 농무부 조직개편법(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nd Department of Agriculture Reorganization Act of 1994), 1996년의 연방농업개선 및 개혁법(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등을 들 수 있음
- 그 후 2000년의 농업위험 방지법(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에서는 농업의 각종 위험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도록 함

(나)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

- 연방정부의 농촌지역개발법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미국 서부지방 개척

을 지원하기 위하여 1902년에 제정된 연방 개척법(Federal Reclamation Law of 1902)과 이를 부분적으로 개정한 개척개혁법(Reclamation Reform Act of 1982)에서 출발하며, 그밖에도 물 공급법(Water Supply Act of 1958)과 개척사업법(Reclamation Project Act of 1939) 등이 있음

- 주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지역개발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에 번스-포터 법(Burns-Porter Act)법을 제정하여, 주 수리사업을 위하여 17.5억 달러의 채권발행을 포함한 자금조달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다) 환경관련법제

- 국민의 환경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64년의 황야법(Wilderness Act of 1964), 1965년의 물고기와 야생생물 조정법(Fish and Wildlife Coordination Act of 1965), 1966년의 국가사적 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 1968의 야생과 경관적 하천법(Wild and Scenic Rivers Act of 1968), 1969년의 국가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등이 제정됨
- 이러한 환경관련법제의 성립에 따른 부수적인 입법과 대통령령, 연방정부 규정, 주법과 지방조례 등이 환경보존 방향으로 제정됨으로써,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도 환경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등이 보강됨

(라) 농장관련법제

- 과거 미국 농무부의 주요 농업정책은 농산물의 가격·소득유지, 생산조정 등이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1996년의 연방 농업개선 및 개혁법(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이 제정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됨
- 이 법률은 농업에 있어서 정부의 결정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그 지원을 줄이면서 소득 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늘려 나가기 위하여 제정됨
- 이 법률에 따른 농촌지역 전략계획에는 “농업이 생산적인 산업이 되도록 지원,

농촌사회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지원, 농장과 농촌의 주민에게 경제적인 사업기회 제공” 등이 포함됨

[3] 특징

(가) 관련정책의 유사성

-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 또한 비농업취업기회 부족과 저소득 문제, 인력육성에 대한 저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토지이용 갈등, 농촌 환경문제 등의 다양한 농촌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농무부의 농촌개발부서는 농촌개발정책의 주요 목표로 “농촌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은 5대 목표에 입각하여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됨

【미국의 농촌지역개발 관련정책의 주요목표】

- 지속가능개발로 농업 및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산물과 서비스의 생산성과 질 유지,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자연자원의 기반 유지, 생태계와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활력 유지 등을 강조
- 미국의 농촌개발 관련 정책수단 및 주요 프로그램은 미국 농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수립되어 있으며 지원방식도 다양함
-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 기술지원 등 다양한 접근이 있으며, 재정적 지원방식도 융자지원(loan), 융자보증(loan guarantee), 보조금(grants) 등으로 다양함
- 지원대상도 개별농가, 기업, 산업 등 그 영역이 다양하며 지원범위도 농촌주택개량, 지역편익구축, 협동조합 개발, 물 및 쓰레기 처리, 전력지원, 통신, 장거리 교육, 원격의료 지원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농촌지역 관련정책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농어촌 관계정책의 추진 목적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

(나) 보조금·주택지원 등의 다양성

- 농촌 및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개발부(HUD)에 의해 감독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는 공동체개발블록보조금과 공동체부흥/역량지원프로그램 등이 수행됨

- 1974년에 수립된 공동체개발블록보조금(CDBG)은 개발 필요성을 가진 공동체에 재원을 제공하는 유동적 프로그램으로서, 지방 정부와 주에서 1,209곳에 보조금을 지원함
- 또한 연방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와 보조금, 대부,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데, USDA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은 농촌에 해당하는 지역의 폭넓은 요구를 수용하고, 기본적 서비스(물, 쓰레기 처분, 통신, 전기)는 부대설비 프로그램에 포함됨
- 한편, 주택지원 프로그램은 농촌 및 지역의 공동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의료기관과 소방서, 경찰서 등)도 지원하며,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촌지역을 지원함
- 농촌주택지원국(Rural Housing Service, RHS)은 농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농촌주민에게 집의 개량·수리뿐만 아니라 소유기회를 갖도록 지원함
- 또한 농촌주택지원국은 농촌주민의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다세대 가구 주택건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그들이 임대하여 살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보조금, 조세감면, 기술지원, 임대료 등 매우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 프랑스

(1) 농촌지역 관련정책의 개요

(가) 추진목적

- 프랑스의 경우 1967년에 전체 농가의 약 1/3을 포함하는 4개의 “농촌재건권역”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촌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었으며, 별도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도로건설, 농촌산업화, 농촌관광 등을 추진함
- 그 후 프랑스에서의 농촌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 다소 획일적인 접근에서, 1980년대 이후 지역적 차이와 독특한 지역적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차별화된 시각으로 전환됨

- 즉, 프랑스의 농촌 및 지역에 관한 정책은 파리의 과도한 집중과 여타 지역의 낙후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간의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농촌 및 지역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함
-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화로 인한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농촌을 비롯한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농촌 및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프랑스 농촌 및 지역에 관한 정책은 지속가능한 국가개발전략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다양한 지방에서 경제개발의 조화와 사회적 정의, 세대 간 결속을 통한 건강과 환경보호 등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

(나) 추진체계

- 프랑스는 분권형 도시계획제도를 원칙으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으로 제시되는 국토계획 관리의 기본원칙이나 공간정비계획을 갖지 않고, 지방을 중심으로 국토관리가 이루어짐
- 프랑스 국토관리의 실행은 “도시계획법”에 주된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이 법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정비규정(Directives Territoriale d'Amenagement, DTA)이 있고, 개별도시 및 코뮌에는 각자의 지역도시계획(Plans Locaux d'Urbanisme, PLU) 및 토지이용계획이 있음
- 국토정비규정(DTA)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국토의 개발과 보전, 가치화를 위한 국토정비 및 균형을 목적으로 국토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음
- 지역도시계획(PLU)은 국토정비와 그에 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으로서, 코뮌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며 경제개발, 농업, 공간정비, 환경, 주거의 사회적 균형, 교통 등에 대한 수요를 명시하는 지역계획에 해당함
- 여기에서의 용도지역은 크게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구와 개발이 제한된 농업·자

연지구로 나누어지고, 농업·자연지구는 다시 도시화예정구역, 부분적 시설정비구역, 농업구역, 자연보호구역으로 세분화됨

[2] 농촌지역 관련법제의 내용

(가) 1960년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Loi d'orientation agricole)

- 이 법률은 “농업기본법”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프랑스의 농업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본법에 해당함
- 이 법률에서는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개발 농촌정착회사(SAFER)의 설립근거를 두었으며,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의 정책의사와 목표가 선언적으로 조문화됨과 동시에 그 정책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별적인 제도와 시책에 관한 실증적인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 1967년 토지이용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 농업기본법의 공공적 성격이 그대로 인정되어 프랑스의 농촌 및 지역 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나) 1980년 신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 등

- 1960년대 농지임대차 특별법을 제정하여 SAFER는 임차권도 확보하게 되었고, 이 밖에도 35세 미만의 청년농업자 자립촉진조성 제도와 산악지방 등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농업농촌문제가 대두되어 새로운 정책방향이 필요하였음
- 상기의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0년 신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1980년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기본적 이념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1980년 신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

-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가족농업경영을 되도록 다수 육성하는 기본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나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농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 발전시킴
-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응하여 특히 청년농업자의 자립촉진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유능한 젊은 후계자를 확보하는 정책과제를 반영함

- 새로이 자립하고 경영발전을 추진하려는 청년농업자의 토지부담을 경감함
- 농업경영구조 컨트롤제도의 강화와 농업임대차제도의 보완적인 정비, 경영자의 토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업토지집단=GFA”이라는 토지소유자 조합법인제도를 개선함
- 이농종신보상금제도도 같은 목적으로 재편함

○ 이 1908년 신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EC차원에서 농산물 시장가 격정책의 재검토와 그에 따른 사회구조개선정책의 도입에 따른 것임

(㉔) 1988년의 농업경영적응법 등

- 1988년의 농업경영적응법과 1990년의 보완법은 산악지역 및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과 농촌사회의 유지를 농업의 큰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제정된 것임
- 농업경영적응법은 경작포기와 유희지 증가도 한정된 산악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의 46%를 차지하는 조건불리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하였음
- 이 법률의 제정으로 SAFER의 기능이 확대되어 SAFER는 잠정적으로 농지관리를 수탁하고, 임대차의 개입 내지 전대수속을 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농지관리주체로서의 “농업토지조합제도”를 창설하여 지역차원의 이용권을 법제화하여 후계자육성사업과 같은 사업에 지원함

(㉕) 1995년의 농업근대화법 등

- 1995년에는 “농업근대화법”과 “국토의 정비와 개발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이 “농업근대화법”은 청년농업자의 자립조성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합과 같은 법인 경영의 발전을 더욱 강화하고, 세금의 경감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토의 정비와 개발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은 EU가 특히 동구권 가입으로 동쪽으로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프랑스 서부와 남서부가 EU의 변방으로 낙후될 것을 우려한 대책으로서, 산악지역과 조건불리지역의 농촌사회에

대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이 약한 지역을 “국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대책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발전이 취약한 조건불리지역은 “우선적 농촌개발구역”이라는 구역지정제도를 창설함
- 또한 이 법에서는 농업과 농촌정비에는 “농촌공간관리기금”을 창설하여 국토정비정책의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함
- 한편, 2005년의 “농촌부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국토의 3분의 1에 달하는 “농촌부흥지역(ZRR)”을 지정하여, 이어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다수의 지원수단이 제공됨

[3] 특징

- 프랑스의 경우, 계획과 감독 및 조정의 조화적 관점에서 농촌 및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지정지역지원제도(priority zones)와 재정인센티브 프로그램(financial incentive programs)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농업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 내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
- 이러한 인식하에 개입허가지역(Périmètres de Protection et de mise en valeur des espaces Agricoles Et Naturels périurbains, PAEN), 농업보호구역(ZAP) 등의 특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5. 일 본

(1) 농촌지역 관련정책의 개요

(가) 추진목적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를 위하여 기초소재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

자는 임해형 공업입지패턴으로 심화하였음

- 동경, 오사까,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벨트지역에 산업과 인구 집중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3대 도시권으로의 집중은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침체를 가져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발생시킴
- 지역간 불균형은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해소되기보다 더욱 악화되어 대도시권에서는 과밀로 인한 폐해가 격심해졌고, 농촌 등 지방권에서는 급격한 인구유출에 따른 과소현상이 두드러진 지역문제로 대두됨
- 일본의 농촌 및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전략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일본의 농촌 및 지역개발에 관한 국가전략】

-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 개발
-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 유지
- 재난의 충격에 견디는 사회의 건설
- 국가적 자원과 경관 관리
- 정부와 “새로운 공적 기관”(지역공동체, NPOs, 민간조직) 간의 파트너십 증대

- 이러한 5가지 전략목표를 가진 국가전략은 장기적이면서 포괄적인 공간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지역은 지역적 자산에 기초한 독특한 지역전략을 촉진시키고,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성장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결국 자율적인 개발지역에 기초한 공간적 구조와 역동적인 경제 및 국가의 부강을 도모하고 있음

(나) 추진체계

- 현재 일본의 국토이용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토교통성 소관인 토지기본법, 국토이용계획법, 국토형성계획법을 들 수 있음

* 국토이용계획법에 근거하여 국토이용계획(전국계획, 도도부현계획, 시정촌계획) 및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토형성계획법에 따라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 지방광역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국토 이용정비 및 보전 추진을 위한 종합·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며, 이는 전국계획, 도도부현계획, 시정촌 계획으로 분류되고, 기본계획에 따라 5개 용도지역 분류도 이루어짐
- 한편, 농촌계획과 관련하여서, 일본에서 농촌계획이라는 용어는 1919년 구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과 함께 그 대칭 개념으로 생성되어 농업경제학, 건축·토목학, 지역계획학 분야에서 각기 형성·발전됨으로써 3가지 측면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

【일본의 농촌계획의 개념】

- 사회경제적 농촌계획 : 농촌계획은 계획 대상지역 주민의 소득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선 행정 당국이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종합적 판단
- 물적 농촌계획 : 농촌계획은 농촌주민이 농촌에서 문화적인 삶을 누리기 위하여 행정 당국이 농촌의 물적 기반과 시설을 건설·정비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그 실시규범을 작성하는 것
- 지역계획적 농촌계획 : 일정한 영역을 가지는 지역을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계획으로서, 광역에 걸친 지역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농촌계획은 도시계획과 동일한 수준에서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시정촌계획” 외에도 시정촌에서 시정촌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시정촌기본구상”(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 즉,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촌 건설에 관한 기본구상(이하 “시정촌기본구상”이라 함)이 수립되고 있으며, 대도시정비계획, 지방개발계획 및 각종 진흥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음
- 이 시정촌기본구상은 시정촌 단위에서 토지이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 조례에 의한 지역의 조닝(zoning)을 통하여 시정촌기본구상을 토지이용과정에서 구현하고 있음
- 한편 농림수산성에 의해 추진되는 농촌지역정책은 2005년부터 수립되어 시행되

는 “식량 및 농업과 농촌지역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기초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에 의한 농촌지역정책은 농촌개발을 위해 농촌지역의 자원 보존과 관리, 지역자산에 기초한 농촌경제의 부흥, 농촌도시 간 결속, 농촌지역에서 삶의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 이상에서 서술한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계획과 개별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일본의 농촌계획 간의 전체적 관계】

- 도도부현이 수립한 계획에서 제시한 농지, 삼림, 택지 등의 토지이용전망을 토대로 도도부현 계획(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각 광역자치단체의 도도부현계획 및 개별법에 따른 각종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국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다양한 계획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조치에 의한 계획인 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은 시정촌토지이용계획 및 시정촌기본구상(종합계획)이 그 지침이 되며, 도도부현이 정한 토지이용기본계획의 5개 지역구분을 수정할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의 수립은 시정촌기본구상과 시정촌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토지이용방침 등과도 충분한 조정을 통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예산조치에 의한 계획은 도도부현이 중심이 되어 국토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개의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을 도모하고 있음

(2) 농촌지역 관련법제의 내용

(가) 토지기본법

- 일본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법제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은 토지기본법(土地基本法, 1989년 법률 제84호)라고 할 수 있음
- 이 법률은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과 이에 따른 국가지방공동단체·사업자·국민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토지이용의 확보를 도모하면서 적정한 수급관계와 지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작성 등(제11조), 적정한 토지이용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제12조), 토지거래의 규제 등에 관한 조치(제13조), 사회자본의 정비에 관련되는 이익에 대응한 적절한 부담(제14조), 세제상의 조치(제15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국토형성계획법

- 국토형성계획법(国土形成計画法, 1950년 법률 제205호)은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견지에서 국토의 이용·정비 및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형성계획의 책정과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토이용계획법(1974년 법률 제92호)에 따른 조치와 함께 현재 및 미래의 국민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경제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심의회의 조사심의 등(제4조, 제5조), 국토형성계획의 책정(제6조-제12조), 국토형성계획의 실시(제13조, 제1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토형성계획은 국토의 이용·정비 및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기본적 계획으로서, 토지·물과 그 밖의 국토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해역의 이용 및 보전, 지진재해·풍수해와 그 밖의 재해의 방제와 경감에 관한 사항, 도시 및 농산어촌의 규모 및 배치의 조정과 정비에 관한 사항, 산업의 적정한 입지에 관한 사항, 국토에서의 양호한 환경의 창출과 그 밖의 환경보전 및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제2조)

(다) 국토이용계획법

- 일본의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중심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국토이용계획법(1974년 법률 제92호)로서, 국토이용계획의 책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토지이용기본계획의 작성,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조치와 그 밖의 토지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토형성계획법(1950년 법률 제205호)에 따른

조치와 함께 종합적·계획적인 국토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제1조)

-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법의 국토이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공공복지를 우선하고, 장기에 걸쳐 안정되고 균형 있는 국토 이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책정됨
- 이는 전국계획·도도부현계획·시정촌계획으로 분류되는데, 국가·도도부현·시정촌이 각기의 구역에 대해 종합적·계획적인 국토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계획(장래구상)이며, 국토 이용에 관한 행정상의 지침이 됨
- 이 법률은 전국계획, 도도부현(都道府縣)계획, 시정촌(市町村)계획의 3단계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5조, 제7조, 제8조)
- 도도부현계획은 도도부현이 작성하는 토지이용기본계획의 기본이 되고, 도시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삼림지역·자연공원지역·자연보전지역이라는 5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제9조)
- 5개의 용도지역은 각각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58호, 이하 “농업진흥법”이라 함), 삼림법(森林法, 1951년 법률 제249호), 자연공원법(1957년 법률 제161호), 자연환경보전법(1972년 법률 제85호)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도시지역이란 모든 도시로서 종합적으로 개발·정비 및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구역에 상당하는 지역을 의미함
- 농업지역이란 농업용지로서 이용해야 할 토지가 있고, 종합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법 상 농업진흥지역에 상당하는 지역을 의미함
- 삼림지역이란 삼림의 토지로서 이용해야 할 토지가 있고, 임업의 진흥 또는 삼림이 가지는 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삼림법상 국유림, 현유림, 보안림, 지역삼림계획대상 민유림에 상당하는 지역을 의미함
- 자연공원지역은 우수한 자연풍경지로서, 그 보호 및 이용의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국정공원, 현립자연공원에 상당하는

지역을 의미함

- 자연보전지역은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원생(原生)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현조례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함
- 전국계획은 도도부현 지사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각의의 결정을 거쳐 정해진다. 전국계획 이외의 국가계획이나 도도부현계획의 기본이 됨
- 전국계획은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에서 ①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② 국토이용 목적에 부응하는 용도별 규모의 목표 및 지역별 개요, ③ 앞의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개요를 정함
- 도도부현계획은 전국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국토이용계획지방심의회와 시정촌장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시정촌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내각총리대신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 시정촌계획은 도도부현계획을 기본으로 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의 기본구상에 입각하여야 함
 - * 시정촌은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시정촌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계획을 도도부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요지를 공표함
 - * 도도부현지사는 이를 국토이용계획지방심의회 의견에 들어 시정촌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음
- 도도부현지사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전국계획(도도부현계획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전국계획 및 도도부현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국토이용계획지방심의회 및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어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정한 다음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함

(타) 농업진흥법

- 농지의 경우 2개의 기본적 법률에 근거하고 농업진흥법(농지의 용도구분)과 농지법(농지의 구분과 전용)임

- 농업진흥법은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임(제1조)
-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제6조, 제7조),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제8조-제13조의6),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제14조-제19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운영 시스템】

- 도도부현 지사는 농림수산성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을 정함
- 기본방침은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진흥에 관한 계획 및 도로·하천·철도·항만·공항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의 계획 및 도시계획과 조화되어야 함
- 기본방침에 의거, 도도부현 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지정을 받은 시정촌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정비계획)을 정함
- 도시계획법의 시가화구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으며, 집락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정비계획에서는 농용지구역 및 구역 내 토지의 용도 구분(농용지이용계획), 농업생산기반의 정비·개발, 농업경영규모의 확대 및 농지의 효율적·종합적 이용의 촉진을 위한 권리취득 원활화와 이용조정, 농업근대화시설 정비, 농업종사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 생활환경시설 정비, 삼림정비 등에 관해 정함
- 농용지이용계획에서는 농업진흥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확보 등을 위해 앞으로 대개 10년 이상에 걸쳐 농지 등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의 구획으로서 농용지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농업상 용도구분을 정함
- 농용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 보전과 유효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등의 전용 제한, 특정 이용권 설정, 개발행

(바) 농지법

- 농지법(1952년 법률 제229호)은 국내의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지가 현재 및 장래의 국민을 위한 한정된 자원이고, 지역에서의 귀중한 자원임을 고려하여, 경작자 스스로에 의한 농지의 소유가 수행해 온 중요한 역할도 인식하면서,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것을 규제함과 동시에, 종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작자에 의한 지역과의 조화에 기초한 농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촉진하고, 농지의 이용관계를 조정하며, 농지의 농업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경작자의 지위안정과 농업생산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이동 및 전용의 제한 등(제3조-제15조), 이용관계의 조정 등(제16조-제29조), 유희농지에 관한 조치(제30조-제4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라)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은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사회 생활권의 광역화, 국제화의 진전 등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활발한 사람의 왕래 또는 물자의 유통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대신 이 책정하는 기본방침에 대한 규정을 정함과 동시에, 도도부현이 작성하는 광역적 지역활성화 기반정비 계획에 근거하는 민간 거점시설정비사업계획의 인정 및 거점시설 관련 기반시설정비사업과 그 외의 사업 또는 사무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의 교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지역사회의 자립적인 발전 및 국민 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됨

(마) 특정 농산촌지역 기반정비법

- 이 법률의 정식명칭은 “특정 농산촌지역에 있어서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이 법률은 특정농산촌지역에 있어서 창의적인 방안을 살리면서, 농림업 그 외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업 그 외의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풍부하고 살기 좋은 농산촌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바) 집락지역정비법

- 농촌 지역은 혼주화·겸업화의 진전 등에 의해 효율적인 농업생산 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토지이용 면에서는 분가주택·농업용시설용지 외에 지역활성화에 관련되는 공공시설이나 공장·상점 등의 부지용지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잠식 형태의 농지전용으로 되어 농업생산과 생활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예가 많음
- 한편, 바람직한 토지이용질서의 형성, 농업구조개선에 의한 생산성 높은 농업의 확립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아름답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에 대한 요청은 차츰 강화되고 있으며, 농정의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음
- 거시적인 지역토지이용계획에 관계되는 도시계획법과 농업진흥법에 의해 정비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더욱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가능하게 하며,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양호한 영농조건 및 거주환경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7년 6월에 집락지역정비법이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의 공동소관으로 제정되었음
- 양호한 영농조건 및 거주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집락지역에 대해 농업생산 조건과 도시환경과의 조화를 취한 지역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진흥과 질서 있는 정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집락지역정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집락지역의 범위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일본의 집락지역정비법상 집락지역이 범위】

- 집락과 그 주변 농지를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 상황 면에서 영농 조건과 거주환경 확보에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우려가 있는 곳
- 자연·경제·사회적 조건에서 농업생산조건 정비와 도시환경 정비의 조화를 취하고 적정한 토지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상당규모의 농지가 존재하고 농지와 농용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 곳

- 상당수가 거주하며 공공시설 정비 상황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그 특성에 어울리는 양호한 거주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서 질서 있는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곳
-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곳 등

- 도도부현지사는 관계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어 집락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해 농림수산대신 및 건설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림수산대신과 건설대신은 국토청장관 및 기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승인함
- 도시계획에서 집락지역 정비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집락지구계획을 정할 수 있으며, 집락지구계획은 계획 목표와 구역 정비·보전에 관한 방침 및 집락지구시설(도로·공원 등)·건축물의 정비와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집락지구정비계획이라고 함)을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것임
- 시정촌은 농업진흥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달성함과 동시에 집락지역에 대해 거주환경과 조화되는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정비를 일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락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정할 수 있음
- 집락지역정비법은 농지 등의 분산 개발에 의한 토지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호한 영농조건 및 거주환경의 정비·확보의 일체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특징

(가)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이원화

- 1968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데 이어 1969년 농업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은 법적으로 분리됨
- 즉, 도시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농촌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농촌계획의 대상지역이 되고,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는 도시계획법과 농업진흥법이 함께 적용되며, 특히 농용지구역의 경우 농업진흥법과 농지법의 토지이용규제가 강하게 적용됨

- 일개 도시와 농촌의 영역을 넘어서는 계획제도로서 도도부현종합개발계획과 지방 종합개발계획, 수도권·근기관·중부권 등 권역별 정비계획이 있지만 이들 계획은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상위계획이며, 대상 지역 또한 광역임
- 도시계획구역이 도시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 농촌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은 대체로 도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정촌기본구상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계획이지만 농촌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계획이라 할 수 있음
- 즉, 일본은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을 분리한 이원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엄밀하게 말하면 공간계획으로서의 농촌계획은 국토계획체계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나) 농촌계획과 농업·농촌 정비사업의 다원화

- 도시계획은 토지이용계획·도시시설계획·시가지개발사업계획으로 구성되며,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집행됨
- 농촌계획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촌기본구상이 지역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이 되지만, 그 외에 농업진흥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과 국토청의 농촌종합정비계획 및 집락지역정비법의 집락지역정비계획이 함께 적용됨
- 도시계획은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농촌계획은 법령·계획소관부처 면에서 다원화되어 있는 것임
- 집락지역정비계획의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에 존재하는 농업진흥 지역이므로,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농업집락이므로 농촌계획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계획을 집행하는 사업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농림수산성·건설성·국토청·자치성·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와 생활환경정비에 관련되는 사업이 다종다양함
- 이러한 사업은 모두 법령을 근거로 삼아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시정촌기본구상 등

의 지역계획과 연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업계획과 사업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음

6. 시사점

- 이상에서는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농촌지역 관련 정책 및 법제에 관사하여 살펴보았으며, 농촌지역 관련법제의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39】 주요외국의 농촌지역 관련법제의 입법체계

국 가	관련법제	주요내용
독 일	•공간정비법(Raumordnungsgesetz, ROG)	•농촌지역 발전과 공간계획에 관한 연방정부의 기능(주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행사 없음)을 규정
	•주 국토계획법(Landesplanungsgesetz)	•주 국토계획, 주 발전계획, 광역지역계획 등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건설법전(Baugesetzbuch)	•지방의 지역개발 및 건설에 관한 해당 지역의 무제한적 계획고권을 규정
	•농지정비법(Flurbereinigungsgesetz)	•농지정비사업(Flurbereinigung)을 통한 농지 및 농촌공간의 통합적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영 국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계획허가제도, 지원지역지원제도, 지역발지원제도, 농촌개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
	•기타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주거법(Housing Act), 신도시법(New Towns Act), 환경법(Environmental Act)	•도시 및 농촌계획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해당 분야의 관련사항을 규정함
미 국	•지역재개발법(Area Redevelopment Act of 1961)	•만성적 실업 및 과소고용 등의 지역(농촌 포함) 재개발을 위한 경기부흥 관련 프로젝트 등을 규정
	•연방 농업개선 및 개혁법(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1996)	•농업에 있어서 정부의 결정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소득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강화, 사업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기타 황야법(Wilderness Act of 1964), 야생과 경관적 하천법(Wild and Rivers Act	•지역재개발법, 연방 농업개선 및 개혁법 등과 함께 환경관련 개별법 등에서

	of 1968), 농업위험방지법(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도 농촌지역 관련사항을 규정
프랑스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1960 Loi d'orientation agricole)	•조건불리지역 등에서의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사업 등을 규정
	•기타 농지임대차 특별법(1960), 신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1980), 농업경영적응법(1988), 농업근대화법(1995) 등	•산악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농업과 농촌사회의 유지 및 청년농업자의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일본	•토지기본법(1989), 국토형성계획법(1950), 국토이용계획법(1974)	•토지이용계획, 토지거래 규제, 국토심의회, 국토형성계획, 5개의 용도지역 등 국토계획의 전반적인 체계를 규정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관한 법률(1969)	•농지의 용도구분에 관한 법률로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조치 등을 규정
	•농지법(1952)	•농지의 구분과 전용에 관한 법률로서, 권리이용 및 전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조정, 유휴농지에 관한 조치 등을 규정
	•기타 특정 농산촌지역에 있어서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집락지역정비법 등	•특정 농산촌지역, 집락지역 등 지역특성에 맞는 농림업 및 산업의 진흥, 농산촌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와 같이 주요외국의 농촌지역 관련법제의 경우, 통일적인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국토계획 체계 속에서 다양한 농촌지역이 포섭되어 운용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즉, 주요외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농어촌정비법이라는 단일법에 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어촌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콘텐츠 측면에서는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입법체계의 정비에서는 크게 시사점을 도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됨

제4장

농어촌정비법의 입법체계 개선방안

1. 선택가능 관련법제 정비방향 모색

(1) 법제정비의 필요성

(가) 관련법령의 체계적 복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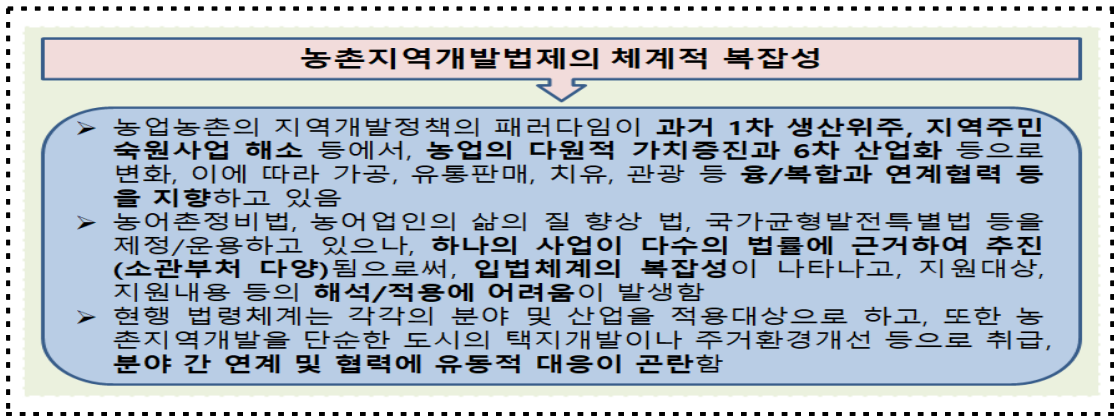
- 전술한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률상 각종 지원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40】 농어촌지역개발 관련법령상 지원체계 비교

관계법령	지원내용															
	기초조사	계획수립	구역지정	의사결정	의견청취	의제처리	시행계획	행위제한	준공검사	시설귀속	협의회	지원조직	모니터링	재정지원	인력양성	각종감면
국토계획법	○	○	○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	○	○	○	○	
농업식품기본법	○	○										○		○	○	
농어업인삶의질법	○	○									○		○			○
농어촌정비법	○	○	○		○		○	○	○	○	○			○		
도농교류법	○	○	○									○		○	○	
농어촌리모델링법		○				○	○	○	○	○	○	○	○	○		
농촌융합산업법	○	○	○		○	○	○				○	○		○	○	

- 이와 같이 최근 제정된 농촌지역개발 관련법령의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세부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내용과 함께 사업지원체계 및 재원확보, 인력양성, 모니터링 등의 정책사업의 전후방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어촌정비법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사업지원 법령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으나, 하드웨어적 사업 중심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어, 융·복합화 및 6차 산업화 등 급속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농촌지역개발 관련법령 간의 융·복합과 연계협력 부족 등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

【그림-8】 농어촌지역개발 법령체계의 복잡성



(나) 농어촌정비법의 체계내적 문제점

(ㄱ) 용어정의의 불일치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제4호)
- 이 중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제5호)과 “생활환경 정비사업”(제10호) 및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제18호)의 경우는 제4호의 정의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농어촌산업”(제15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제16호)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및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령의 이해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ㄴ) 장별 비체계성

- 농어촌정비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제1장(총칙), 제2장(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7장(마을정비구역), 제8장(보칙), 제9장(별칙)을 들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제3장(농업생산 기

반정비), 제4장(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제5장(농어촌산업의 육성), 제6장(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을 들 수 있음

- 첫째, 제2장의 명칭을 볼 때,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제4조)을 위한 “자원조사”(제3조)인지, “자원조사”를 위한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인지가 불명확한 상황임

* 또한 “자원조사”(제3조)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제3조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강행규정 형태를 취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함

- 둘째, “농어촌정비사업”(제2조 제4호)의 정의규정에 기초하여 각 장별로 사업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규정상 사업의 목적 및 내용으로 볼 때 불필요한 장의 구분으로 입법체계의 복잡성이 발생하고 있음

- 즉, 제5장(농어촌산업의 육성)과 제6장(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은 사업의 목적 및 내용으로 보아 “농어촌산업의 육성”으로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생산성이 낮은 미개발 농지로서, 향후 농촌지역개발을 위하여 농지, 농업관련 시설의 설치, 주택·택지의 개발, 관광 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어촌산업의 육성”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상 한계농지의 요건을 살펴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농지법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ㄷ) 강한 독립구조

-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제2장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제6조)을 규정하고, 제3장에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의 원칙(제52조) 및 기본방향(제53조)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 및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의 원칙과 기본방향이 아니라 각 장별로 해당 사업별 원칙과 기본방향을 각각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각각의 원칙과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법체계적·내용적 강한 독립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물론, 각 장별로 해당 사업추진의 세부적 원칙과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수범자로 하여금 해당 장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편의상 장점은 부정할 수 없음
- 다만, 농어촌정비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핵심적 규율사항인 농어촌정비사업의 다양한 원칙과 기본방향을 각각의 장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장별 단절을 초래하고, 결국 “법체계 내적 정합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다) 농업식품기본법 및 농어업인삶의질법의 문제점

- 전술한 바와 같이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에 해당함
- 이로부터 농업식품기본법은 대부분 프로그램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업의 절차법에 해당하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의 “기본방향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하는 기준법”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농어업인삶의질법은 농업식품기본법에 기초하여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의 예산상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법적 성격의 법률”에 해당함
- 다만, 농어업인삶의질법에서는 주로 “시책 마련 의무”→“예산상 지원근거”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제13조) 및 국민연금보험료(제16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제17조) 등 실체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농업식품기본법으로 이관해도 될 조항이 다수 존재함

(라) 농촌융합산업법의 문제점

- 농촌융합산업법상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 재화 또는 용역의 복합적 결합·제공(유기적·종합적 융합), 부가가치 창출 또는 증진을 그 개념적 요소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제2조 제15호)으로 정의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산업”의 경우는 농촌의 개발·정비라는 상대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개념임에 비하여, 농촌융합산업법상 “농촌융복합산업”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소득원 창출이라는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표-41】 농어촌정비법과 농촌융합산업법상 농(어)촌산업의 개념 비교

구분	농어촌정비법(농어촌산업)	농촌융합산업법(농촌융복합산업)
수단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u>유·무형의 자원 활용</u>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u>유·무형의 자원 이용</u>
내용	•식품가공 등 <u>제조업</u> , 문화관광 등 <u>서비스업</u> 및 이와 관련된 산업	•식품가공 등 <u>제조업</u> , 유통·관광 등 <u>서비스업</u>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u>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산업</u>
목적	•농촌의 개발 및 <u>정비사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u> •농촌의 <u>소득증대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u> • <u>현대적인 농촌을 조성하고, 국가의 균형발전</u> 에 이바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을 다른 산업과 연계하여 <u>종합·복합산업으로 육성</u> •새로운 농업의 <u>소득원 창출 및 부가가치</u> 제고를 통하여 <u>농촌의 활력을 제고</u>
효과	•농촌의 개발·정비를 통한 환경조성 등의 일환으로 농촌산업 육성	•농가소득의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내외 <u>상생협력</u> ,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 강화를 위하여 <u>농촌융복합산업 육성</u>

- 다만, 농촌융합산업법상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산업”의 경우, 농어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라는 주체적 측면과 복합적 결합·제공의 측면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마) 농어촌리모델링법의 문제점

(ㄱ) 정비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의 중복

- 농어촌리모델링법상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농어촌 주택·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의 개량 또는 건설을 개념적 요소로 하고 있음(제2조 제4호)
- 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 개발사업을 개념적 요소로 하고 있음(제2조 제4호)
- 이와 같이 농어촌리모델링법상 “정비사업”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 특히 그 중에서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정비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의 내용적 중복으로 인하여 “정비구역”과 “마을정비구역”의 내용적 중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ㄴ) 노후·불량 농어촌주택과 빈집의 중복

- 농어촌리모델링법은 “노후·불량주택”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6호), 그 구체적인 농어촌주택을 열거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정비사업” 중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하나로 “빈집”을 포함시키고(제2조 제10호 바목), “농어촌주택”과 “빈집”을 각각 따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11호, 제12호)

【표-42】 노후·불량주택과 빈집의 관련조항 비교

노후·불량주택(농어촌리모델링법)	빈집(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u>노후·불량 농어촌주택</u> ”이란 <u>장기간</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 <u>생활환경정비사업</u> ”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

<p><u>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u>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p> <p>가. <u>슬레이트</u>가 사용된 농어촌주택</p> <p>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주택</p> <p>다.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농어촌주택</p> <p>라.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u>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u></p>	<p>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바. <u>빈집의 정비</u></p> <p>차. <u>슬레이트</u>(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u>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u> 사업</p> <p>11. "<u>농어촌 주택</u>"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u>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u>(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12. "<u>빈집</u>"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u>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u>이나 건축물을 말한다.</p>
---------------------------------------------------------------------------------------------------------------------------------------------------------------------------------------------------------------------------------------------------------------------------------------------------------------------------------------------------	----------------------------------------------------------------------------------------------------------------------------------------------------------------------------------------------------------------------------------------------------------------------------------------------------------------------------------------------------------------------------------------------------------------------------------------------------------------------------------------------------------------------

- 이와 같이 농어촌리모델링법상 “노후·불량주택”과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관련사업의 중복성이 발생하고 있음

(ㄷ) 법령의 사문화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2013~2014) 이후 농어촌리모델링법을 근거로 추진한 사업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농어촌리모델링법의 효용이 저하되어 사문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과 농어촌리모델링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관한 입법조치가 필요함
- 이러한 통합방안의 입법조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농어촌리모델링법에 있는 일부 특례규정의 유지여부 등에 관한 법률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바) 도농교류법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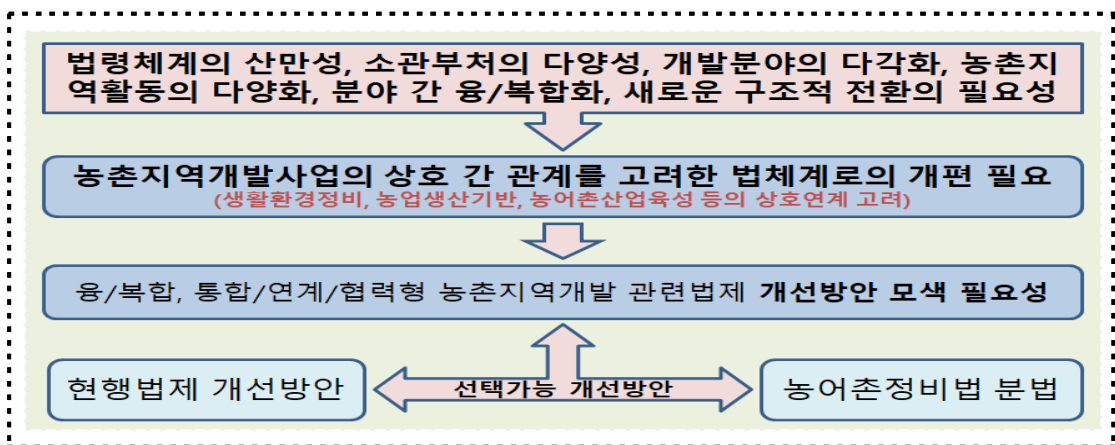
- 도농교류법은 도농교류를 통한 다양한 농어촌체험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의 외부환경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도농교류지원기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도농교류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제5호)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제16호)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로부터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경우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는 등 입법초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농어촌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농촌융합산업법, 「농어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유사사항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선택가능 정비방향

(가) 기본적 방향

- 전술한 농촌지역개발 관련법령상 지원체계 및 입법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개선의 기본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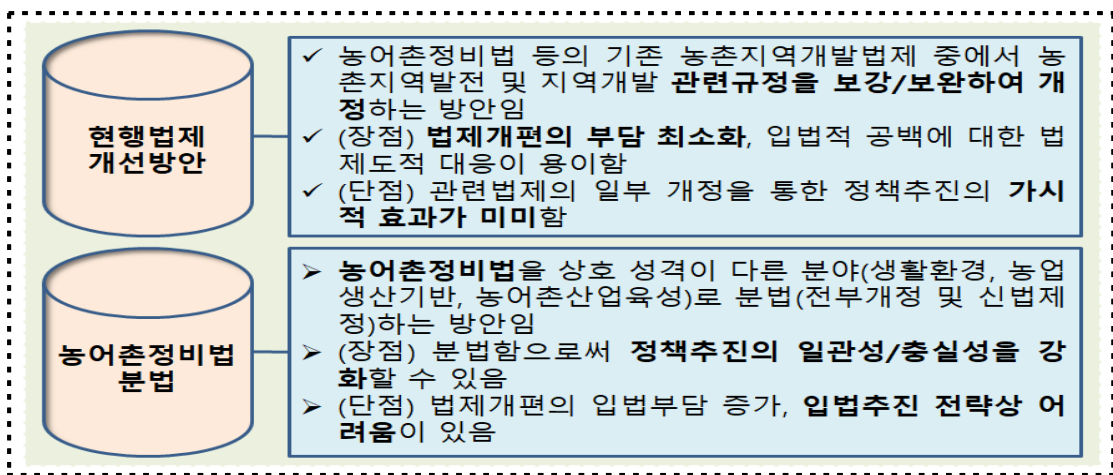
【그림-9】 농어촌지역개발 법제개선의 선택가능 기본방향



(나) 장단점 분석

- 현행 농촌지역개발 관련 법제를 일부개정을 통하여 개선하는 방안의 경우, 입법적 부담은 최소화되나,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단점을 가짐
- 한편, 농어촌정비법을 생활환경,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산업육성 등 서로 다른 분야별로 분법하는 것은 개선의 효과는 크나 입법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단점을 가짐

【그림-10】 현행법제 개선방안과 분법화방안의 장단점 분석



[3] 정비 방안 · 규모설정

(가)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나) 입법연혁적 이유

-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1994년 12월에 제정되어, 가장 오랜 연혁을 가지며, 2007년과 2009년에 걸쳐 2차례의 전부개정을 거쳐 추진체계의 일원화, 중복 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해 왔음
-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도농교류법, 농촌융합산업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구체화 또는 추가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으로 제정·운용되어 왔다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유사사업의 통합을 통한 추진체계의 일원화라는 측면과 별도 개별법

령의 제정이라는 측면이 혼합적으로 존재하므로, 관련법제의 정비에는 두 측면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

(L) 입법체계적 이유

- 농어촌정비법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영역과 규율 내용의 경우, 여전히 중복성이 나타남으로써, 포괄적·체계적 사업추진 및 지원과정의 완결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농촌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촌지역의 체계적·효율적 개발·발전을 위한 실무적 여건, 관계부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입법체계 정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즉,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규율사항이 다양한 개별법제에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접근방식이 아닌 급격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나) 합리적 정비방향 설정

(ㄱ) 가능한 방식

- 농촌지역개발 관련법제의 입법체계 정비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식으로는 개별 법률상 관련조항의 일부개정, 개별 법률상 관련조항의 단일법 통합 등을 들 수 있음
- 후자인 개별 법률상 관련조항의 단일법 통합 방식의 경우, 분야별 융복합·통합 및 연계협력적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에의 단일법 통합이 될 것임
- 개별 법률상 관련조항의 일부개정의 방식은 입법부담의 최소화, 입법공백에 대한 즉시적 대응 등에는 유리하나, 정책추진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이라는 정책적 거대담론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음
- 농어촌정비법에의 단일법 통합 방식은 위의 거대담론에는 유리하나, 입법추진의 곤란성, 실무적 입법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시급한 정책현안의 해결에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음

(ㄴ) 분법화 방안

- 상술한 개별 법률의 일부개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의 단일법 통합 외의 다른 입법적 접근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서 농어촌정비법의 분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법령 내에서 용어정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다른 법률상 규율내용과 중복되며, 계획과 사업절차가 각 장별로 혼재하고 있어, 법령체계의 복잡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법률로 분법함으로써, 각 사업별 계획수립 및 사업절차를 체계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ㄷ) 분법의 규모(4개 법률)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됨
- 이 중에서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은 용역(서비스)의 제공,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의 이용, 농어촌 소득증가 등의 공통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농어촌산업 육성사업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즉, 농어촌정비사업의 종류별로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으로 재편하여, 각각 3개의 개별법으로 분법·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 다만, 제2장(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및 제7장(마을정비구역)의 경우,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장으로서, 3개의 개별법에 각각 규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즉, 3개의 개별법에 공통적인 사항을 각각 규율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이 각

개별법에 중복적으로 규율됨으로써, 중복적 입법 또는 소모적인 입법 등의 입법정책적 저항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제2장과 제7장을 구분하여, “마을정비구역”을 “농어촌정비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법적 법률로서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따로 분법할 필요가 있음

2. 분법을 위한 유사사례 · 기준 분석

(1) 분법사례의 분석

(가) 개관

- 지금까지 행해진 분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육법, 소방법,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지방세법, 항공법 등을 들 수 있음

【표-43】 주요 분법사례의 개요

법률명	분법이유	분법내용
교육법 (1949.12, 제정) (1997.12,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이후 38회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 또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3개 법률로 분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소방법 (1958.3, 제정) (2003.5,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체계와 내용의 이해도가 저하됨 • 이러한 점에서,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필요성에서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4개 법률로 분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법
산림법 (1961.12, 제정) (2005. 8,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이후 수목원조성및진흥에 관한법률 제정(2001.3.28), 산림기본법 제정(2001.5.24),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정(2001. 12.31), 산지관리법 제정(2002.12.30) 등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개 법률로 분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법의 규율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산림관련 모법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어 분법화	
문화재보호법 (2010.2,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2년 법제정후 34회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서로 상이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분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법률로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10.3,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지방세법을 분야별·기능별로 분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법률로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원자력법 (1958, 제정) (2011,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의 안전규제 체제와 원자력의 이용 및 진흥 체제에 관한 서로 상이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규범상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의 요청을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법률로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항공법 (1961.3, 제정) (2016.3,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법에는 항공정책, 항공-운송사업, 항공안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공항건설-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레저스포츠에 관한 사항 등 서로 상이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어, 체계의 일관성이 없고, 일반인이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워,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법률로 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나) 소방법의 분법

- 소방법은 1958년 제정된(1958.3.11, 법률 제458호) 이후 2003년 분법되기 이전까지 4차례의 전문개정(1967.4.14, 1973.2.8, 1975.12.31, 1991.12.14)과 21차례의 부분개정 등 총 25회의 제·개정이 있었음
- 그러나,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온 결과 복잡하고 내용이해가 어려워 분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특히, 소방법은 하나의 법률에 안전법, 사업법, 구조구급법 등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함으로써,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44】 분법이전의 소방법 체계(2002.1.26, 법률 제6627호)

장·절	조문개요	비고
제1장 총칙	3개조 (제1조-제3조)	
제2장 화재의 예방	14개조 (제4조-제14조)	•가치번호 3개(제8조의2-제8조의4)
제3장 위험물의 취급	16개조 (제15조-제29조)	•가치번호 1개(제17조의2)
제4장 소방시설 등의 기준 및 점검 등	13개조 (제30조-제43조)	•가치번호 1개(제30조의2) •삭제조항 2개(제36조, 제43조)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 승인 등	5개조 (제50조-제51조)	•가치번호 3개(제50조의2-제50조의4) •삭제조항 6개(제44조-제49조)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 제2절 도급계약 제3절 소방설비기사 제4절 감독	15개조 (제52조-제65조)	•가치번호 2개(제61조의2-제61조의3) •삭제조항 1개(제55조)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11개조 (제65조의2-제65조의12)	•삭제조항 1개(제65조의8)
제7장 화재의 경계	4개조 (제66조-제70조)	•삭제조항 1개(제68조)
제8장 소화활동 등	9개조 (제71조-제80조)	•삭제조항 1개(제80조)
제9장 화재의 조사	5개조 (제81조-제85조)	
제10장 의용소방대	6개조 (제86조-제92조)	•삭제조항 1개(제92조)
제11장 구급 및 구조	2개조 (제93조-제94조)	
제12장 소방력기준 등	2개조	

	(제95조-제96조)	
제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 소방검정공사 제 1 절 한국소방안전협회 제 2 절 한국소방검정공사	8개조 (제97조-제104조)	
제14장 보칙	6개 (제105조-제109조)	•가지번호 1개(제107조의2)
제15장 벌칙	12개 (제110조-제119조)	•가지번호 2개(제111조의2-제111조의3)
15개장	129개조	•삭제조항 13개 •가지번호조항 13개

- 이로부터 정부에서는 현행 소방법을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즉,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의 법으로 분법하고, 2002년 10월 1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45】 국회제출 소방법 분법안의 주요내용

법안명	주요내용	조문구조
소방기본법안	•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의용소방대, 소방관련 단체 등 소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10장 56개 조문 (6개조문 신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관한 사항	8장 47개 조문 (4개조문 신설)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안	•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7장 40개 조문 (3개조문 신설)
위험물안전관리법안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장 38개 조문 (4개조문 신설)

-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특별한 지적은 없었으나,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안의 경우는 제명 중에 소방시설공사가 의미하는 바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대한지

적공사와 같은 특수법인(기관)을 의미할 수 있고,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당해 업종의 시공기술관리·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안의 명칭이 각각 전기공사법과 정보통신공사법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법안의 제명도 본래의 뜻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법” 또는 “소방시설법”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러한 검토의견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관리법”이라는 제명을 “소방시설공사법”으로 변경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년 4개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된 이후, 이들 소방관련 법제는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그 기본적인 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며, 2003년에 분법된 소방법의 분법내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11】 소방법의 분법내용

법률명	주요 내용
소방기본법 (2003.5.29, 법률 제689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장 56개조로 구성 • 소방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6개조를 신설하고 2개조를 정리하여 제정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3.5.29, 법률 제689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장 53개조로 구성 • 소방법 제2장과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28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4개조를 신설하고 9개조를 정리하여 제정
소방시설공사법 (2003.5.29, 법률 제689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장 40개조로 구성 • 소방법 제6장과 제6장의2, 제52조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25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3개조를 신설하고 18개조를 정리하여 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2003.5.29, 법률 제689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장 39개조로 구성 •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4개조를 신설하고 16개조를 정리하여 제정

- 이와 같이 소방법의 분법은 기존의 소방법을 폐지하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형식을 취함

- 일반적으로 법률의 분리는 ① 기존의 방대한 법률에 이질적인 요소가 누적됨에 따라 이를 서로 유사한 내용을 개별 법률로 나누어 규정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률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② 방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해소하며, ③ 법률의 수용자인 국민의 편에서 이해하기 쉽고 법령의 제명으로 쉽게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짐
- 분법 당시 행정자치부도 4개 법령의 제정취지를 소방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개별법이 연계성을 가지면서 업무분야별로 전문화·세분화된 법령체계를 유지하도록 정리하고, 일반국민도 해당분야의 법령만 보면 되므로 소방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쉬워지고, 실생활에 적용이 쉽도록 하며, 소방조직·안전관리·소방시설·위험물 사용 등 기능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소방산업육성과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함
- 다만, 4개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면, 과연 4개 법률이 소방기본법을 토대로 하여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는지, 4개 법률의 상호관계는 어떠한지, 동일한 소방현상에 대하여 4개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법령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동일한 현상을 건축물(소방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측면과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측면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어 그 용어의 사용 및 해석에 있어서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2개의 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유사한 시기에 새로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과 새롭게 제정된 소방관련 4개 법률의 관계에 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문화재보호법의 분법

- 문화재보호법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1962년 1

월 10일 제정된 이래 현행 법체계로 분법되기 이전까지 1982년 12월 31일과 2007년 4월 11일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34차례의 일부개정(타법에 의한 개정 포함)을 거침

* 제7차 전부개정(1982.12.31.)에서 문화재보호 관리체제 개선(지정 앞에 시·도 표시), 문화재정의 보완(동물서식지·도래지 등도 천연기념물로 보호, 매장문화재 개념 확대),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화(무형문화재를 보전·육성 의무규정), 외국문화재보호 및 문화재보호단체 지원 육성 규정 신설, 동산문화재 가지정제도 폐지 등을 규정함

* 제29차 전부개정(2007.4.11)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으로 정비(법률의 한글화, 용어 순화, 어문규범 준수, 간결·명확화)한 것임

- 이러한 개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방대해지고 입법체계가 복잡해짐으로써, 법제 상호간의 모순저촉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며, 문화재의 보존관리제도나 정책이 체계화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또한 근래에 인류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대와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요구증대 등 국내·외적인 문화재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의 시급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표-46】 분법이전의 문화재보호법 체계(2009.1.30, 법률 제9401호)

장 · 절	조문개요
제 1 장 총칙	4개조 (제1조-제4조)
제 2 장 국가지정문화재 제 1 절 지정 제 2 절 관리와 보호 제 3 절 공개 제 4 절 조사	43개조(제5조-제46조)
제 3 장 등록문화재	7개조 (제47조-제53조)
제 4 장 매장문화재	12개조 (제54조-제65조)
제 5 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5개조 (제66조-제70조)
제 6 장 시·도지정문화재	5개조 (제71조-제75조)
제 7 장 보칙	26개조(제76조-제100조)
제 8 장 벌칙	17개조 (제101조-117조)
8장	119개조

-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문화재보호법제의 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문화재보호법의 정비방향으로서 크게 ① 현행법을 분법하여 기본법 및 개별법률로 제정하는 방안, ② 현행법의 전문개정을 통한 정비방안 등 2 가지로 가닥을 잡고, 전문가와 연구검토를 시작함
- 당시에 논의되었던 분법방안과 전문개정방안의 개용 및 장단점 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47】 문화재보호법 정비방안의 개요 및 장단점

정비방안	분법방안	전문개정방안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에 관한 실체적 효력을 가지는 총괄적인 기본법 제정 • 현행법을 중요 문화재유형별 및 특별한 규정내용별로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리업무 체계별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유형별 재편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체계의 명확화 및 통일성 확보 • 각 개별 문화재 등의 특성에 맞는 법규사항 규정용이 • 현행 행정체계 및 실무운영과 조화를 이루면서 업무단위별 법령관리 가능 • 단위 문화행정별 법령관리 및 해석용이 • 기본법을 통한 전체 문화재행정의 정책방향과 체계의 수립, 조정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관리보호방법 및 절차상의 통일성과 형평성 제고 • 문화재 일반관리에 중심을 두고, 특별관리보호를 부가하는 방식이므로 문화재행정의 외연확산과 종합적 관리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직제 및 문화재위원회 등의 행정체계 및 실무운영과 일치 • 문화재관리보호규정 및 절차 등이 각 문화재유형별로 정리, 명확화 •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이 용이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법률에서 수개의 법률로 확대되어 법령관리업무 증가 • 각 개별법률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조항 중복 불가피 • 기본법 또는 개별법률에 포함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독립된 법률로 규율하기 곤란한 다양한 보충적 사항의 입법화가 법체계상 편제곤란 • 기본법의 성격과 문화재청의 정부조직상 위상이 관계 • 타법에서 문화재관련법을 인용하여야하는 경우에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행정조직 체계와 실무행정 단위의 불일치 • 관련 문화재행정의 단위별 파악 및 운용 등에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보호방법 및 절차관련 규정의 준용규정이 각 문화재유형별로 필요 • 문화재행정의 통일성 및 형평성 확보와 관련하여 각 규정간의 조정이 곤란

-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전문개정보다는 분법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분법의 방식으로는 문화재 유형별에 따른 분법방식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하되, 규정내용의 특성에 따른 분법을 고려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시안을 마련함

【표-48】 문화재보호법 단계법 분법시안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 기본법(안) • 무형문화재 보호법(안)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매장문화재 보호법(안) • 문화재등록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보존 기금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 기본법(안) • 동산문화 보호법(안) • 건조물문화재 보호법(안) • 궁·능·원 보존법(안) • 민속마을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재외한국문화재 수집·수리 및 전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세계유산의 등록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기록화 및 정보화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 기본법(안) • 전통공예기술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국가귀속문화재 보상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보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복제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보존 처리법(안) • 문화재주변 경관보존 및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 동산문화재반출입법(안) • 청소년문화재교육지원법(안) • 문화재보존 시민참여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 소방방재 및 방법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6개 법률(안)	9개 법률(안)	12개 법률(안)

- 한편, 정부에서는 법제처의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3건의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06. 12. 6)함
- 그 중에 문화재보호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은 2007년 4월 11일에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됨
-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은 ①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으며,

- ②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폐총”을 “조개무덤”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쉽게 바꿈
- 또한 ③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데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였으며, ④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그리고 ⑤ 여러 가지의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정부에서는 문화보호법의 전면개정작업을 실시하여, 2008년 11월 28일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 그러나 이들 3법은 2009년 12월 30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부 폐기됨
 -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재보호법을 분법하는 입법형식보다는 기본법성격의 “문화재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재 유형별·사항별로 개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됨
 - 그 후 정부는 2009년 12월 29일에 이러한 3개의 법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2010년 2월 4일에 시행되었으며, 분법된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12】 문화재보호법의 분법내용

법률명	주요 내용
문화재보호법 (2010.2.4, 법률 제1000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장 104개조로 구성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 • 문화재보호 기본계획, 국외문화재 관리근거 마련 등 문화재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변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2.4, 법률 제100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장 38개조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에 13개 조문으로 규정(제55조 내지 제65조, 제91조)되어 있는 규정을 토대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으로 분법 •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0.2.4, 법률 제999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장 62개조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에 16개 조문으로 규정(제1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114조)되어 있는 규정을 토대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분법 •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㉔) 지방세법의 분법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대비되는 개념에 해당함
- 지방세법은 이러한 지방세의 기본적인 원리와 세목,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규율하는 단일법으로서 1949년 5장 75개조의 간단한 형식으로 제정됨
- 지방세법은 1961년 한차례 폐지제정(1961.12.8 법률 제827호)된 이후 120여차례의 잦은 일부개정을 거쳐 분법화되기 전과 같은 5장 328개조의 방대한 형태에 이르게 됨

- 이에 따라 법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방세제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히, 접근성 측면에서 국세관계법 준용규정이 과다하고, 비과세·감면규정의 경우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로 산재되어 있으며, 세목이 총 16개로 과다하여 납세자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 실무자의 이해와 활용마저 어려운 실정이었음
- 또한 지방세제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20여 개의 법률로 나누어져 규정되고 있음에 비하여, 지방세법은 기본적 원리와 부과징수처벌, 세목, 비과세 및 감면 관련 규정이 모두 하나의 법률에 혼재되어 있는 단일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었음
- 이로부터 법개정 시 불요불급한 조항의 개정이 수반되는 등 국세와 같은 “분법주의”에 비하여 법 개정이 곤란하고,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취함
- 따라서 국세관련 법규에 의존하지 않는 일관성있고 통합적인 지방세법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과 실무자가 알기 쉬운 수요자 중심의 법률을 구현하는 한편, 제정 당시와는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전문적인 지방세법 정비를 위한 지방세법 분법조치를 추진함
- 이를 위하여 연구용역 및 전문가·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9년 3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분법 이전의 지방세법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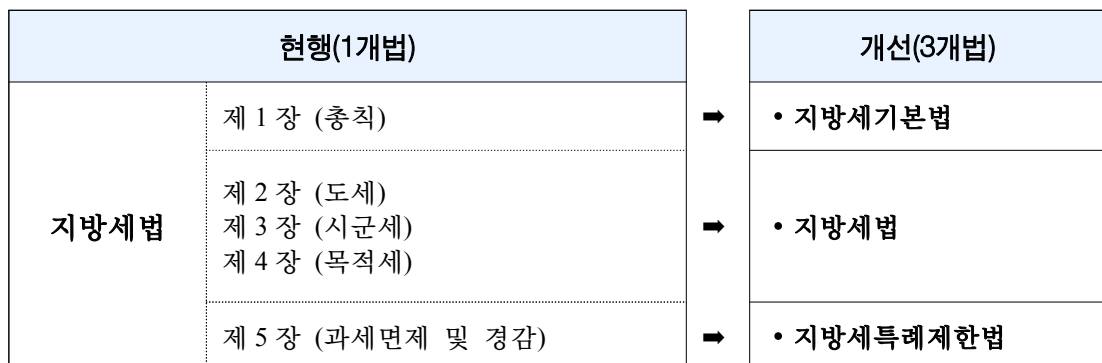
【표-49】 분법이전의 지방세법 체계(2009.2.6, 법률 제9433호)

장·절	조문개요	비 고
제 1 장 총칙	113개조 (제1조-제89조)	삭 제 조 문 : 11개 가지번호조문 : 22개
제 2 장 도세	99개조 (제90조-171조)	삭 제 조 문 : 33개 가지번호조문 : 17개

제 3 장 시·군세	139개조 (제172조-제234조의35)	삭 제 조 문 : 45개 가지번호조문 : 76개
제 4 장 목적세	34개조 (제235조-제260조의6)	삭 제 조 문 : 1개 가지번호조문 : 8개
제 5 장 과세면제 및 경감	40개조 (제261조-제295조)	가지번호조문 : 5개
5개장(46개절)	425개조	삭 제 조 문 : 90개 가지번호조문 : 128개

- 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 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지방세법을 분야별 및 기능별로 나누어 전문화·체계화를 시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① 지방세에 관한 공통적·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방세기본법과 ② 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③ 감면규정을 통합·정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하는 한편,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
- 이러한 지방세법의 기본적인 분법방향 및 구체적인 분법내용을 나타내면 각각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13】 지방세법의 분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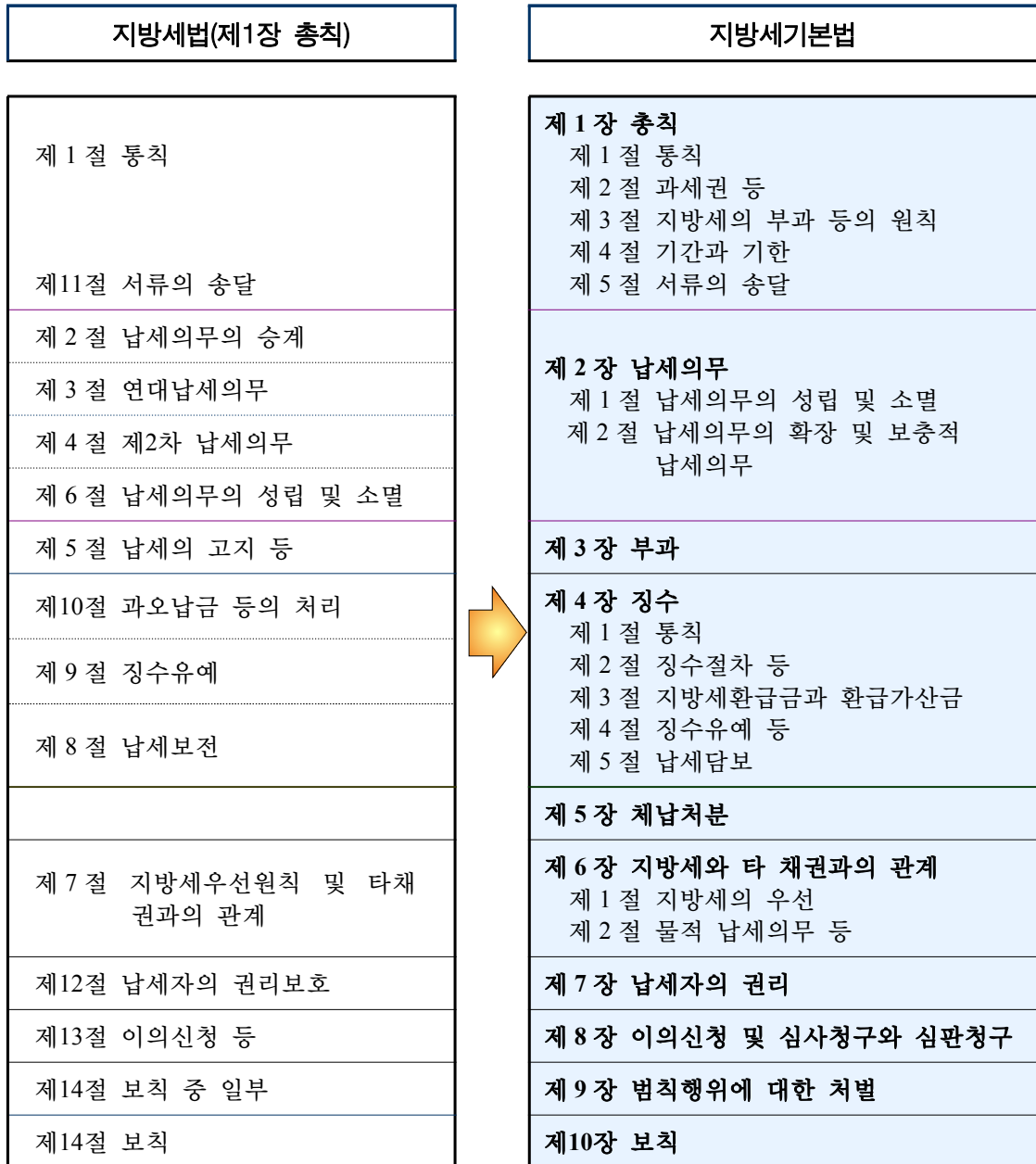
【그림-14】 지방세법의 분법내용

법률명	주요 내용
<p>지방세기본법 (2010.3.31) (법률 제1021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장 147개조로 구성 • 현행 「지방세법」 제1장(총칙)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 기존에 「국세기본법」등을 준용하고 있던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 • 수정신고제도 개선, 기한 후 신고대상 확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근거 마련 등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
<p>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장 154개조로 구성 • 현행법의 제1장(총칙)과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을 삭제하고 제2장~제4장의 세목분야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요건에 대한 통합법으로 개편 • 유사.중복 세목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을 10개로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세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계층간 세목 및 세율의 조정 등을 규정
<p>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법률 제1022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장 99개조로 구성 • 현행 지방세법의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독립 • 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감면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감면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감면 규정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지방세기본법안은 현행 지방세법 제1장(총칙)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시킨 것으로서, 기존에 국세기본법 등을 준용하고 있던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수정신고제도 개선, 기한 후 신고대상 확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근거 마련 등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함
- 현행법 제1장 총칙 부분은 14개절 10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방세기

본법안은 이를 개별법으로 분리시킨 총 10장 14절 145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장 14절 147조로 확정됨(2010.3.31 법률 제10219호, 시행일 2011.1.1)

【그림-15】 지방세기본법의 분법체계



○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1장(총칙)과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을 삭제하고 제2장~제4장의 세목분야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취득세·재산

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요건에 대한 통합법으로 개편함

- 한편, 유사·중복 세목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을 10개로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세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치계층 간 세목 및 세율의 조정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음
- 개정 전 법률 제2장부터 제4장은 총 3장 18절 18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개정안은 이를 총 11장 16절 139개 조문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12장 23절 154개 조문으로 확정됨(2010.03.31 법률 제10221호 시행일 2011.1.1.)
- 지방세특례제한특별법은 현행 지방세법의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독립시킨 것으로서, 그동안 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감면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감면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감면 규정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현행법 제5장은 총 6절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은 이를 3장 7절 100개조로 이를 구체화하여 60개조가 증가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3장 8절 99개조로 확정됨(2010.3.31, 법률 제10220호)

(라) 환경보전법의 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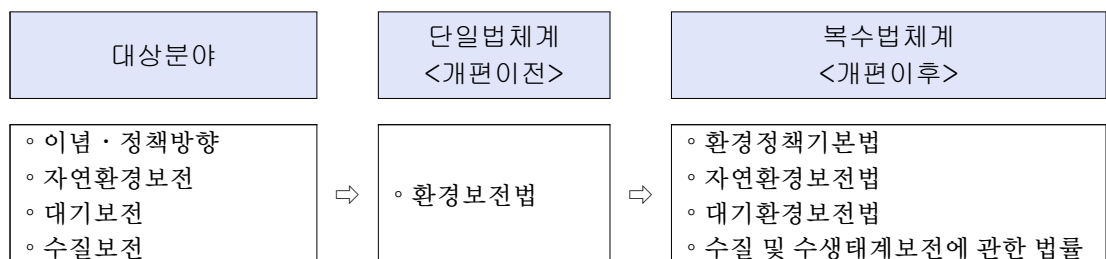
- 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환경의 개념적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환경법의 개념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환경법이란 환경에 관한 법 또는 환경의 이용·관리·보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사업화·도시화는 다양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3년 11월에 공해방지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최초의 환경법이 탄생함
- 1971년에는 공해방지법을 대폭적으로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

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여 더욱 종합적·적극적인 공해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음

- 1977년 12월에는 공해방지법에 대신하는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기준, 총량규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에 대처하고자 함
- 환경오염이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됨
- 이로부터 1980년에 헌법은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3조)고 하여 환경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게 됨
-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선언함
- 또한 1987년 헌법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화를 법률에 위임함
- 이와 같이 환경권의 구체화를 법률에 위임한 것은 환경문제의 복잡성, 원리적·개별적 문제해결의 곤란성, 역동적인 자연과학적 지식 및 사업·기술상의 발전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하여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그 후 계속되는 인구의 증가와 고도의 산업사회의 경제구조는 환경문제를 다양화·심각화를 초래함으로써 기존의 환경보전법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됨
- 이로부터 1990년 8월 1일에는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 이른바 “환경6법”으로 복수법의 체계를 취하게 됨

- 이와 같이 환경법이 복수법으로 됨에 따라 토양환경보존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자연환경보존법 및 호소수질관리법 등 법률이 제정됨
- 여하튼 현행 환경법의 체계는 헌법 제35조 등의 환경권 관련조항과 이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및 각종 분야별 관계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법의 입법방식으로는 모든 환경문제를 하나의 법률에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단일법주의, 오염종류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독립된 법을 제정하는 복수법주의, 2개의 입법주의를 절충하여 단일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단일법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개별법에 따로 규정하는 절충주의를 들 수 있음
- 선진국가의 경우, 대부분 복수법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경험하면서 당시에 발생하는 가시적인 환경오염을 개별적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예방·규제해 왔기 때문임
- 이에 대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화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오염을 어느 시점에서 일시에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은 단일법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강하며, 복수법체제로 되기 전의 우리나라의 경험이 이에 속함
- 즉,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법인 환경보전법에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다양한 오염현상을 규제함으로써 법운용의 경직성이 초래되었고, 오염대상별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
- 이로부터 환경보전법을 복수법화하고,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이념을 정립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개별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

【그림-16】 환경법령체계의 복수법화



대상분야	단일법체계 <개편이전>	복수법체계 <개편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규제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오염방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 ◦ 오수·분뇨·축산폐수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지수저재활용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사업법 ◦ 환경관리공단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환경공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범죄처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현행 환경법령의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법령의 헌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오염분야별 대책입법의 성격을 가지는 환경관계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같이 환경법령은 단일법체계가 아닌 복수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환경관계법은 5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법령의 복수법체계에 대하여는 환경법령의 비체계성으로 인한 복잡성과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진 복수법체계를 취하고 있어 환경보호 및 개선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는 법체계가 오염매체별로 이루어진 분할법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 법체계가 지나치게 규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과도하게

직접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임

- 여하튼 환경법령의 복수법체계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법령체계의 복잡성, 규제내용의 산만성, 개별법률 간의 형평성 결여, 하위법령에의 지나친 위임방식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이로부터 각종 환경법령 간의 중복모순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불균형, 환경법령의 복잡성,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과의 관계적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환경법령을 통합하거나 법전화하자는 지적도 있음
- 즉, 환경관계법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적은 규범으로 많은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이고도 정연한 법체계상의 정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환경법령이 단일화, 즉 통합법전화가 되면 간단하고 개괄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환경법이 됨으로써 집행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고, 국민의 환경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이러한 견해는 유사한 환경법령의 통폐합을 통한 체계의 단순화합리화를 의도하고, 종국적으로는 통합법전화를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복수법체계로 된 환경법령의 단순화합리화는 관계법률의 체계정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며, 통합법전화는 우리나라 법령체계의 특징으로부터 보아 시기상조라 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은 환경법령의 복수법체계는 다양한 환경오염의 유형에 따라 오염매체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단일법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비된 복수법체계를 다시 변경하여 단일법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입법비용시간의 낭비나 체계정비의 시행착오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또한 지나치게 단순화합리화된 법령체계도 이해의 곤란성, 법집행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은 항상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비판적 견해의 충분한 분석과 적절한 체계정비를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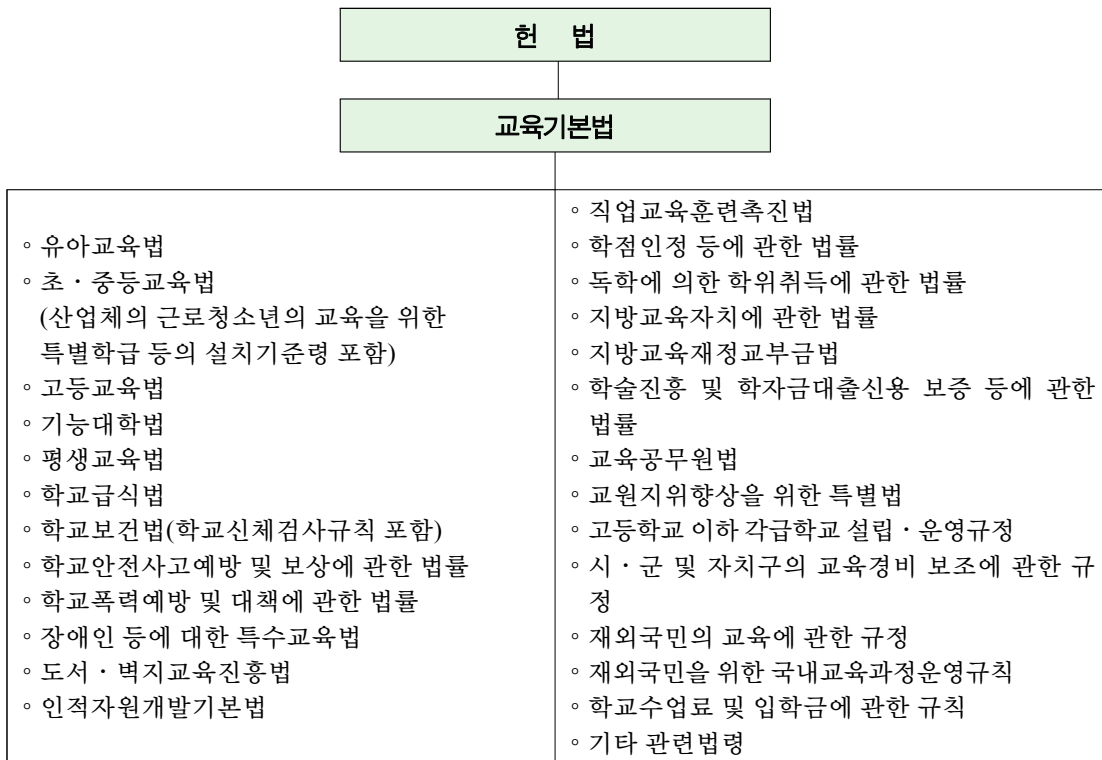
복수법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함

(바) 교육법의 분법

- 교육법이란 교육에 관한 법으로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또는 교육부문에서 법으로 정한 기본원칙에 관한 법령조항의 체제를 의미함
- 교육은 인간의 소질을 개발하고, 지적 능력을 조성하여 문화적·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치창조의 활동이므로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이러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해서는 각급학교의 교육목적·방법 및 운영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교육법(법률 제86호)이라는 하나의 실정법에서 규율함
- 이 교육법에 대하여는 제정·공포된 이후 38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대응하지 못하며,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이로부터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법의 분법화, 즉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교육3법)으로 구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현실화되기에 이룸
- 이와 같이 1997년 12월에 기존의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3법이 제정됨으로써 개별법체제로 접어들었으며, 이것은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약 50년 만에 경험한 우리나라 교육법체계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함
- 이러한 교육법체계의 전면적 개편은 단순한 법률체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에 관한 철학적 전환을 동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교육법체계의 전면적 개편은 농어촌정비법의 입법체계 개편에서도 단순히 법률체계의 변화가 아닌 농촌공간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관한 철학적 전환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여하튼 현행 학교교육관계법령을 중심으로 교육관계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17】 교육관계법의 기본체계



- 이러한 교육관계법 중에서 특히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교육기본법은 재편된 교육법체계가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적 질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즉,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계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에 해당함
- 따라서 교육기본법은 법체계적으로 보아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헌법상의 교육조항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고, 개별적 교육관계법과의 관계에서는 “교육에 관한 헌장 내지 근본규범”에 해당함
-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국

민중심의 교육으로서의 변화를 위한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제정됨

-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에 있어서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고와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됨
- 한편, 1949년의 교육법은 제정 이후 교육법령이 분리·제정된 1998년 3월 1일까지 변화하는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접근방법에 있어서 적정관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당시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형태로 대중요법적인 차원에서 38차례의 개정을 거침
- 이로부터 법률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게 되었고, 상하법령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모순이 발생하는 등 교육법령 간의 전체적 통일성이 미흡하게 됨
- 이와 같이 1949년의 교육법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같이 규정하여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로부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교육법을 거쳐 평생교육법 등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이와 같이 현행 교육법령은 복수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서로 다른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가진 학교 급별 특성을 각각의 복수법령에 반영함으로써 교육법령 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됨

(바) 항공법의 분법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체계가 복잡하고, 방대하며, 사업·안전·시설·분야를 단일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법률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능별로 분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즉, 법률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만 확인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항공법 전체 조문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여 왔음
- 또한 분야별로 서로 상이한 업무내용과 개정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입법과정과

업무추진에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제동향 및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즉,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경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이 혼재된 복잡한 구성체계(준용규정 등)와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어 신속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부터 2016년 3월 29일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이 분법 제정되기에 이룸
-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사업,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항공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 등록, 항공기 운항, 항공기 종사자 자격 및 교육, 안전성 인증 및 안전관리,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을 규정함
-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운영,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추후 보완)

(사) 원자력법의 분법

- 1958년 제정된 원자력법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7월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법됨
-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의 독립성이 요구되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 등에서도 원자력안전기관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자력의 안전규제 체계와 원자력이용 및 진흥체계를 분리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원자력의 이용·진흥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진흥법에서 규율하게 됨(추후 보완)

[2] 분법기준의 도출

(가) 일반적 기준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을 분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체계, 분법법령의

조문 수, 분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법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법제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체계 간결화를 위한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2011)”(이하 “**법제처 분법기준**”이라 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법제처 분법기준에서는 ㉠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운 경우(이해도 기준), ㉡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일관성 기준), ㉢ 특정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이해도 기준),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통일성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제처 분법기준은 “수요자 중심의 법체계 간결성 확보 또는 법제 리모델링”으로서, 법체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법령의 분법화에 있어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함
- 이하에서는 위 ㉠과 ㉢을 이해도 기준으로 통합한 후, ㉡ 일관성 기준, ㉢ 통일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나) 이해도 기준

- 이해도 기준은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해당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와 특정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해당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특정분야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하나의 법령에 규정하여 단일법령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함으로써, 법체계상·법리상 일관성이 있는 분야로 세분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법하는 경우를 말함
- 대표적인 사례로는 항공정책, 항공운송사업, 항공안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공항건설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레저스포츠에 관한 사항까지 총망라하고 있는 전술한 항공법의 분법을 들 수 있음

【표-50】 항공법의 분법이유

법률명	분법이유	분법내용
항공법 (1961.3, 제정) (2016.3, 분법)	항공법에는 항공정책, 항공·운송사업, 항공안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공항건설·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레저스포츠에 관한 사항까지 총망라하고 있어, 체계의 일관성이 없고, 일반인이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워, 각 분야별로 세분하여 분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 둘째, 특정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유사한 성격의 분야별로 세분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분야에 대하여 단일법령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분업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로 발전하고, 단일법령을 유지하면 법체계상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령을 알기 쉽도록 유사한 성격의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에 해당함
-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술한 소방법의 분법을 들 수 있으며, 소방과 관련하여 소방법이라는 하나의 단일법령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소방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소방시설 등의 의무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분법한 것임

【표-51】 소방법의 분법이유

법률명	분법이유	분법내용
소방법 (1958.3, 제정) (2003.5, 폐지)	소방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소방에 관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사업법

(다) 일관성 기준

- 이 기준은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분법이 가능하다는 일관성 기준에 해당함

- 즉, 유사하지 않은 다수의 제도를 무리하게 하나의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이나 분야를 기준으로 세분하는 경우에 해당함
-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음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사제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하나의 법률에서 부동산가격공시와 감정평가사 시험·업무·징계 등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제도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하나의 법률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업무·징계 등의 내용과 부동산거래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유사하지 않은 2개의 제도를 무리하게 하나의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이나 분야를 기준으로 분법하되, 2개 사항의 성격이 유사하여 하나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라) 통일성 기준

-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본이 되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가 이미 분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기본이 되는 법체계와의 차이에 따라 준용규정 등의 체계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일반인의 법에 접근성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어, 기본이 되는 법체계를 고려하여 분법하는 경우를 말함
- 이 통일성 기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술한 지방세법의 분법을 들 수 있으며, 그 분법이유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52】 지방세법의 분법이유

법률명	분법이유	분법내용
지방세법 (2010.3.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구분하여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필요에 따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을 많이 준용하고 있었음에도 지방세의 법체계는 국세와 달라 이를 고려하여 분법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혼재된 지방세법(총 295개조)을 분야별·기능별로 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바) 기타의 기준

- 첫째,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를 들 수 있음
- 단일법령 체계 안에서 특정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정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법체계의 균형이 깨지고, 다른 분야에 대한 형평성이 부각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산업의 육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법할 수도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나 분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분법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축산법, 수산업법의 경우를 들 수 있음
- 즉, 축산법의 경우, 축산법의 단일법률 체계에서 축산업 중 말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축산법과 말산업육성법 2법 체계로 변화됨
- 수산업법의 경우도 단일법률 체계에서 수산업 중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르는 어업육성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수산업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2법체계로 변화됨

- 둘째,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 특정분야에 관한 개별적인 보호나 체계정비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나, 이 분야에 대한 제도 보완을 기존 법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이나 체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분야의 제도를 위한 개별법의 제정이 가능하나 현행법에서의 규율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특정분야에 대한 개별법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는 의료법, 기상업무법 등을 들 수 있음
- 즉, 의료법의 경우, 의료법의 단일법 체계였으나,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기상업무법의 경우도, 기상법의 단일법 체계였으나, 기상청 등 19개 기상관측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상관측의 품질향상과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함

(바) 검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의 분법에서는 분법의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후, 분법의 수와 내용 및 그 내용의 관련성, 분법의 시기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분법의 필요성이 있어 분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지 않아야 하며, 분법화된 법령의 조문수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사성이나 관련성이 있는 내용, 분야, 기능 등으로 분법이 되도록 하고,

법령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예컨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하였으나, 특례 규정의 남발 등으로 법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다시 분법하는 방안이 논의 된 바 있음
- 특히 서로 내용과 분야가 다르거나 하나의 법령에 너무 많은 사항이 규정되어 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분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약사법의 경우, 약사에 관한 사항과 의약품에 관한 사항으로 대별되는데, 함께 규정함으로써 법이 복잡하게 되고, 결국 법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의사와 진료)과 의료기기법과 같이 따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끝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이해도 기준, 일관성 기준, 통일성 기준 등 법령분법의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18】 법령의 분법기준

기준	분법기준의 주요내용	요약
1	특정분야 관련사항을 단일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법령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내용의 복잡성 및 이해곤란성
2	내용이나 분야가 다른(유사성이 없는)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법령체계의 일관성 유지 곤란
3	특정분야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세부분야, 유사한 성격의 분야별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체계의 복잡성 및 이해곤란성
4	기본이 되거나 유사한 법령체계와의 통일성을 강화하여, 관련법령체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일반인의 법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사 법령체계와의 통일성 결여
5	특정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특정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필요
6	특정한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	특정분야 중요성의 효

기준	분법기준의 주요내용	요약
	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울적 해결
종합	특정분야 관련사항의 망라적 규정⇒법령내용·체계의 일관성·통일성 저하 및 복잡화⇒일반국민의 이해·접근곤란성⇒각 분야 및 기능별 분법⇒법령의 준수성 및 관련행정의 효율성 강화	

3. 농어촌정비법의 분법화 방안 제시

(1) 분법방안의 개요

(가) 분법규모

- 농어촌정비법을 농업생산기반정비법(가칭),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가칭), 농어촌산업 육성법(가칭),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가칭)로 총 4개의 법률로 분법
- 농어촌정비법 137개조를 위 4개 법률로 분법하는 경우, 각각 37개조, 68개조, 35개조, 44개조로 총 184개조(47개조 증가)로 됨

(나) 참고사항 : 농촌과 어촌의 분법

- 위 4개의 분법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농촌과 어촌을 기준으로 분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를 이해서는 관련법령상 농촌과 어촌의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53】 농촌지역개발법제상 농촌과 어촌의 개념

법률명	정의규정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5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 <u>농촌</u>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u>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u>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제2조 제1호)</p>	<p>1. “<u>농어촌</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p> <p>2. “<u>준농어촌</u>”이란 광역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u>광역시 자치구</u>”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u>농지법</u>」에 따른 <u>농업진흥지역</u>과 「<u>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u>」에 따른 <u>개발제한구역</u>을 말한다.</p>
<p>농어업인삶의질법 (제3조 제1호)</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농어촌</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5호와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p>
<p>도농교류법 (제2조 제1호)</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농어촌</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p>
<p>농촌융합산업법 (제1조 제1호)</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농촌</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p>
<p>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 제1호)</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6. “<u>어촌</u>”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항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p>가. 읍·면의 지역</p> <p>나. 동의 지역 중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p>
<p>귀농귀촌법 (제2조 제2호)</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u>농어촌</u>”이란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p>

-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서는 “농촌”과 “농어촌” 및 “어촌”을 규율범위로 하고 있으며, 게다가 농어촌정비법의 경우는 “준농어촌”까지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을 정책·사업이 아니라 지역·구역(농촌 및 어촌)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경우, 과연 실무적으로 엄격하게 구분이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지역·지구”의 애매한 구획으로 지역·구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농어촌 관계법의 전체적인 구조로 보아, 농어촌정비법을 “농촌”

과 “어촌”으로 구분하여 분법하는 경우는 다른 관계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입법추진의 거대한 부담이 존재함

- 게다가 농어촌 관계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농어촌 관계법상의 “농촌”이나 “어촌” 또는 “농어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을 “농촌”과 “어촌”으로 분법하는 방안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농어촌 관계법의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다) 분법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3장을 분리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법**, 제4장을 분리하여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을 제외한 제5장과 제6장의 내용을 분리하여 **농어촌산업 육성법**, 제2장과 제7장 및 한계농지등 정비사업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54】 농어촌정비법의 분법내용

법률명	분법내용
농업생산기반 정비법(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규정(제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제3조)을 신설하고, 기존 정의조항(제2조)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용어를 이관하여 정의함 ❖ 기존 제1절, 제2절, 제3절의 내용을 각각 제2장, 제3장, 제4장으로 변경하고, 해당 규정을 각 장별로 이관하여 규정 ❖ 보칙(제5장)의 장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교육(제19조), 준용규정(신설),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09조) 등을 이관하여 규정 ❖ 벌칙(제6장)의 장을 신설하여, 기존 농어촌정비법 벌칙규정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관련 조항을 분리·이관하여 규정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규정(제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제3조)을 신설하고, 기존 정의조항(제2조) 중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용어를 이관하여 정의함 ❖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실시(제2장),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관리·운영 등(제3장)을 신설하여 관련조항을 이관하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칙(제5장)의 장을 신설하여, 준용규정(신설),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09조), 청문(제118조) 등을 이관하여 규정 ❖벌칙(제6장)의 장을 신설하여, 기존 농어촌정비법 벌칙규정에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관련조항을 분리·이관하여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 산업 육성법(가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규정(제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제3조)을 신설하고, 기존 정의조항(제2조)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용어를 이관하여 정의함 ❖농어촌정비법 제5장의 제1절과 제2절을 각각 제2장과 제3장으로 이관하고, 제6장의 제1절을 제4장으로 이관하여 규정 ❖보칙(제5장)의 장을 신설하여, 지도·감독 등(제8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09조), 청문(제118조) 등을 이관하여 규정 ❖벌칙(제6장)의 장을 신설하여, 기존 농어촌정비법 벌칙규정에서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조항(제5장, 제6장)을 분리·이관하여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가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 제2장과 제7장의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의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분법되는 4개의 법률에 동일한 규정이 공통적으로 필요함 ❖다만,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각각 4개의 법률에 거듭되는 것은 소모적 입법, 중복입법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이 경우, 기존“마을정비구역”을 분법의 특성을 고려하여“농어촌정비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함 ❖농어촌정비법 제2장을 그대로 이관하고, 제7장을 제3장으로 변경하여 이관하였으며, 제4장을 신설하여 사업지역·지구의 고시(제105조) 등 관련조항을 이관하여 규정 ❖제5장을 신설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장의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에 관한 조항을 이관함 ❖보칙(제5장)의 장을 신설하여, 보고와 검사(제11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109조), 청문(제118조) 등을 이관하여 규정 ❖벌칙(제6장)의 장을 신설하여, 기존 농어촌정비법 벌칙규정에서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조항(제5장, 제6장)을 분리·이관하여 규정

[2] 구체적 분법시안

(가) 전체적 입법체계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가칭)		농업생산기반 정비법(가칭)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가칭)		농어촌산업 육성법(가칭)	
분법안	조	분법안	조	분법안	조	분법안	조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신설 2	제1조(목적)	신설 2	제1조(목적)	신설 2	제1조(목적)	신설 2
제2조(정의)	신설	제2조(정의)	신설	제2조(정의)	신설	제2조(정의)	신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등		제2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2장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		제2장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농어촌정비 종합계획 등)	3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6	제4조(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원칙)	52	제4조(농어촌산업의 육성·지원)	72
제5조(자원 조사)	4	제5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7	제5조(농어촌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53	제5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73
제6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5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8	제6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54	제6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74
제3장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	74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9	제7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내용)	55	제7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75
제7조(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101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10	제8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56	제8조(평가)	76
제8조(농어촌정비구역 지정 및 농어촌정비계획의 변경)	102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11	제9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57		
제9조(농어촌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03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2	제10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58		
제4장 농어촌정비사업의 관리·운영 등	111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59	제3장 농공단지외의 개발	
		제10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		제12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60	제9조(농공단지 개발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77

제10조(사업지역·지구 고시 등)	13	제1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61	제10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78
제11조(인·허가 등의 의제)	14	제14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62	제11조(생산제품의 판매지원)	79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4의2	제15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63	제12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80
제13조(자금지원)	15	제16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67	제4장 농어촌 관광휴양지역의 개발	
제14조(농어촌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16	제1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68	제13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81
제15조(허가 취소 등)	17	제18조(조성용지의 용도)	69	제14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82
제16조(지정 해제)	18	제19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70	제15조(관광농원의 개발)	83
제1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18의2	제20조(간선시설의 설치)	70의2	제16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84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19	제3장 빈집의 정비		제1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85
제1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20	제21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64	제18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86
제20조(선수금)	21	제22조(빈집실태조사)	64의2	제1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86의2
제21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22	제23조(빈집예의 출입)	64의3	제2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87
제22조(측량·설계·공사감리 등의 위탁)	23	제24조(빈집예의 출입에 따른 손실 보상)	64의4	제21조(지도·감독)	88
제23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24	제25조(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64의5	제22조(사업장 폐쇄 등)	89
제24조(다른 등기의 정지)	24	제26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4의6	제23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90
제25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24	제27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들의 책무)	65	제5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관리·운영 등	
제26조(부처 간 협조체계 유지)	110의2	제28조(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65의2	제24조(사업지역·지구 고시 등)	105
제27조(농어촌 정비협약)	110의3	제29조(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65의3	제25조(인·허가 등의 의제)	106
제28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126	제30조(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65의4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104
제29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127	제31조(정비명령 등)	65의5	제27조(자금지원)	108
제30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91	제32조(이행강제금)	65의6	제28조(허가 취소 등)	116
제31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92	제33조(자진철거자에 대한 지원)	128	제29조(지정 해제)	117
제32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93				
제33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94				
	95				
	96				

제34조(준용규정) 제35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36조(투자) 제37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38조(사업지구의 고시 등) 제39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4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41조(자금지원) 제42조(허가 취소 등) 제43조(지정 해제)	97 98 99 100 105 106 104 108 116 117	제28조(무단점용료의 징수) 제29조(불법시설품의 철거) 제4장 환지 및 교환·분할·합병 등 제30조(환지계획) 제31조(환지계획의 인가) 제32조(환지업무의 대행) 제33조(환지사의 자격) 제34조(환지사의 자격사유) 제35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제36조(환지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37조(환지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제38조(관리변동의 신고) 제39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40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제41조(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가능 교환)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4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44조(토지가격의 평정) 제45조(수해자총회)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 제47조(환지처분에 따른 등기) 제48조(교환·분할·합병의 시행) 제49조(교환·분할·합병의 결정방법) 제50조(교환·분할·합병의 효과) 제51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할·합병) 제52조(교환·분할·합병의 청산금 등)	128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제4장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관리·운영 등 제34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3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36조(기술회원 등) 제37조(자금지원) 제38조(허가 취소 등) 제39조(지정 해제) 제5장 보칙 제40조(준용규정) 제4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2조(청문) 제43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	106 104 71 108 116 117 신설 109 118 129 130 131 132	제7장 보칙 제30조(준용규정) 제○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조(청문) 제○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조(벌칙) 제○조(양벌규정) 제○조(과태료)	신설 109 118 129
제44조(보고와 검사) 제45조(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제4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7조(청문) 제48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119 120 109 118 129 130 131 132			제5장 보칙 제40조(준용규정) 제4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2조(청문) 제43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	신설 109 118 129 130 131 132		

(나) 구체적 분법시안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생산기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생활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어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p> <p>3.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업생산기반 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p> <p>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p> <p>다. 「농어촌산업 육성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p>	<p>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p> <p>3.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말한다.</p> <p>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p> <p>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p> <p>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p> <p>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p>	<p>을 말한다.</p> <p>3.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말한다.</p> <p>4.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향상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p> <p>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p>	<p>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을 말한다.</p> <p>3.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말한다.</p> <p>4.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관광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p> <p>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호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p> <p>라. 제6호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p> <p>4. “농어촌정비구역”이란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0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p> <p>5.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p> <p>6.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p>	<p>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p> <p>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답수호 등 호수와 높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p> <p>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p> <p>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p> <p>5.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p>	<p>개발사업</p> <p>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p> <p>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p> <p>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p> <p>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p>	<p>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제공하는 사업</p> <p>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p> <p>다. 주말농원사업: 주말농장과 체험농장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 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정비에 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법」과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및 「농어촌산업 육성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2장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p> <p>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p>	<p>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 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溜),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 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p> <p>6.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7.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p>	<p>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p> <p>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p> <p>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p> <p>차. 슬레이트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p> <p>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5.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한</p>	<p>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p> <p>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촌 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산부장관은 제5조제3조에 따른 자 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세우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 지역의 현황 3.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4. 추정사업비 	<p>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8.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개수·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p> <p>9.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p>	<p>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6.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구청장(광역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p> <p>7. “특정빈집”이란 제6조에 따른 빈집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을 말한다.</p>	<p>를 따른다.</p> <p>제2장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p> <p>제4조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 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72조에 따라 농어촌산</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보완·발진시키려면 제5조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p> <p>제5조제3조(자원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정비를 위하여 토지·마을 및 연안해면(沿岸海面)의 이용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 조사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p> <p>③ 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연안해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p>	<p>산기반의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p>제2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p> <p>제4조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2. 재배 작목(作物) 	<p>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태</p> <p>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상태</p> <p>다.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상태</p> <p>라.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지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촌 생활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p>	<p>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p> <p>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p> <p>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 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p>	<p>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p> <p>4. 제7조제9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p> <p>제5조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같은 법 제4조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p>	<p>제2장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의 시행</p> <p>제4조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p>	<p>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p> <p>4. 제10조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 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p> <p>5.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 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인,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장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p> <p>제7조제101조(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농어촌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을</p>	<p>야 한다.</p> <p>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p> <p>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p> <p>제6조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p>	<p>②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p> <p>제6조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p>	<p>장은 제5조제73조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 기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p> <p>1. 농어촌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p> <p>2. 농어촌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p> <p>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p> <p>4.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제2</p>	<p>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야 한다.</p> <p>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p> <p>2.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할 시·도시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본조사를 생략할</p>	<p>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p>	<p>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3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조제5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사업 중 가목과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p> <p>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p> <p>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p> <p>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p> <p>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p> <p>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p> <p>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p> <p>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p>	<p>수 있다.</p> <p>제7조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조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p> <p>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축산</p>	<p>수 있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 정비계획 수립 또는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제1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8조제76조(평가) ① 농림축산식품</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관련 사항</p> <p>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14. 지역특화발전전에 관한 사항</p> <p>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p> <p>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p> <p>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p> <p>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p> <p>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농어촌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농어촌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p>	<p>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제9조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受惠面積)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부 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p>	<p>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p> <p>2. 성과 목표 및 지표</p> <p>3.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p> <p>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p> <p>5. 치산녹화 등 구도보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p> <p>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4호 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p> <p>7.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p> <p>8. 교육·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p> <p>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p>	<p>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p> <p>1.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p> <p>2.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p> <p>제3장 농공단지의 개발</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농어촌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⑥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어촌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p>	<p>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의신청일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 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p> <p>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p> <p>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p> <p>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제8조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p>	<p>제9조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우야 한다.</p> <p>제10조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한다.</p> <p>⑦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농어촌정비구역에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⑧ 농어촌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농어촌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p>	<p><u>기법</u>에 따른 <u>한국농어촌공사</u>라 <u>사</u>이하 「<u>한국농어촌공사</u>」라 <u>한다</u>」</p> <p>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4호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p> <p>3. 제9조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4호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p> <p>4.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p>	<p>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농어촌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농어촌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p>			<p>제11조제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익계약(隨惠契約)을 체결</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8조제102조(농어촌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농어촌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7조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7조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9조제103조(농어촌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어촌</p>	<p>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제5호라목의 농업 주산단지 조성 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p> <p>제9조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7조제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그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p>	<p>“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4호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p> <p>5.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4호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3조에 따른 농어촌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4</p>	<p>할 수 있다.</p> <p>제12조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장 농어촌 관광휴양지역 개발</p> <p>제13조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p> <p>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p> <p>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p> <p>2.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제9조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p>	<p>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p> <p>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p> <p>3.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p> <p>4.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제10조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산화 추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농지 규모를</p>	<p>호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p> <p>1. 제38조제116조제1항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p> <p>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p> <p>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p> <p>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p> <p>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의 개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마을정비조합(「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p> <p>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제9조제57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p>	<p>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특정 용도의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9조제34조에 따라 창설환지(創設換地)를 정할 수 있다.</p> <p>제11조제13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배수·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p>	<p>제9조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농어촌정비구역에서 제2조제4호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p> <p>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법」 제2조제4호 제10호)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 정비계획 수립 및 농어촌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p> <p>제4장 농어촌정비사업의 관리·운영 등</p> <p>제10조제105조(사업지역·지구의 고시</p>	<p>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p> <p>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p> <p>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2조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p>	<p>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 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p>	<p>제15조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p> <p>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또한 같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등) 제7조제101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구역·단지·지구(이하 “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p>제11조제106조(인·허가 등의 의제)</p> <p>① 제7조제101조에 따라 농어촌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확정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조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p>	<p>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p> <p>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p> <p>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p>	<p>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1조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6조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10조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1조에</p>	<p>제16조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p> <p>제17조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15조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p> <p>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p>	<p>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p> <p>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p> <p>3. 임대·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③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p> <p>2.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p> <p>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p>	<p>다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p> <p>5. 「도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p> <p>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p> <p>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p>	<p>로 정하는 용도</p> <p>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p> <p>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p> <p>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조제4호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대장(臺帳)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12조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p> <p>① 제7조제101조에 따른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p>	<p>니한다.</p> <p>제13조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 화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2조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 효과 9. 세부 설계도서 10.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내용,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 	<p>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3조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p>	<p>한다)</p> <p>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3조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11조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제14조제62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4호제10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p>	<p>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19조제86조제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8조제86조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원발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p> <p>제14조제11조(농어촌정비구역 등에 서의 행위 등의 제한) ① 지역·지구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p> <p>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p>	<p>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p> <p>제15조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p> <p>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p>	<p>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5조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p> <p>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8조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p> <p>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p> <p>제16조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p>	<p>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0조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p> <p>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지구등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p>	<p>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p> <p>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p> <p>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p>	<p>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4호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발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농어촌주택개발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p> <p>③ 농어촌주택개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p> <p>1. 제2조제4호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p>	<p>승계한다.</p> <p>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p> <p>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p> <p>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p> <p>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p> <p>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5조제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p>	<p>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p> <p>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p> <p>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p>	<p>는 용자</p> <p>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는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p> <p>4. 제31조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p> <p>5. 농어촌주택개발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p> <p>제17조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p> <p>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p>	<p>재산의 매각</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15조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1조제88조(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p> <p>가. 제14조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p> <p>나. 제7조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p> <p>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p>	<p>할 때</p> <p>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p> <p>제16조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5조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1. 사·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p> <p>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p>	<p>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1조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p> <p>제19조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용지를 공급받은 용도로 농어촌 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를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p>	<p>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제22조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입식</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제17조(지정 해제) ①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1. 제7조제101조에 따른 농어촌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p> <p>2. 지역·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p>	<p>제 및 제방</p> <p>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p> <p>2. 시장·군수·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p> <p>제17조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p>	<p>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조성용지의 공급 당시 가액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조성용지를 환매할 수 있다.</p> <p>제20조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p>	<p>작목(入殖作目)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13조제81조제2항에 따른 규 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p> <p>4. 제15조제83조제2항에 따른 승 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p> <p>5. 제20조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 도·양수한 경우</p> <p>6. 제21조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p> <p>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 우</p> <p>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 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이 완료된 날</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으면 해당 농어촌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p> <p>③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p>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p> <p>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 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p>법」 제28조를 준용한다.</p> <p>제3장 빈집의 정비</p> <p>제21조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p>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시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17조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정비,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3.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p>제18조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p>	<p>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p> <p>제18조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p> <p>제19조제19조(안전관리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재원조달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p>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p>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3조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제8조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③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 남은 자투리땅)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p>	<p>제20조제20조(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p> <p>①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p>	<p>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p>	<p>내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22조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을 승계한다.</p> <p>1. 제17조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18조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p> <p>2. 제20조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의 세목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 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p> <p>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경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p>	<p>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준용한다.</p> <p>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p>	<p>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지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①</p>	<p>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장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관리·운영 등</p> <p>제24조제105조(사업지역·지구의 고시 등) 제14조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구역·단지·지구(이하 “지</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⑦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중 “협의매수”는 “보상”으로 본다.</p> <p>제19조제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溉用水路), 배수로, 제방(堤), 구거(道梁),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및 「</p>	<p>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p> <p>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p> <p>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0항</p> <p>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p>	<p>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2조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p>	<p>약·거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p>제25조제106조(인·허가 등의 의제)</p> <p>① 제14조제82조 및 제15조제83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p> <p>②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p> <p>③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p>	<p>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p>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4조제64조의4(빈집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p>	<p>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p> <p>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p>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제20조제113조(선수급)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p> <p>제21조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p>	<p>수질측정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구축·운영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p> <p>제22조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p>	<p>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p> <p>제25조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2조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p>	<p>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p> <p>4. 삭제</p> <p>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p> <p>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회의 승인</p> <p>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p> <p>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p> <p>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p>	<p>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p> <p>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p>	<p>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p>	<p>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p> <p>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하여야 한다.</p> <p>④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0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해당 준공검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p>	<p>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p> <p>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3조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p>	<p>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p>	<p>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p> <p>1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p> <p>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p> <p>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p> <p>⑥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 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22조제115조(측량·설계·공사감리</p>	<p>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p> <p>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 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p>	<p>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빈집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p>	<p>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p> <p>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p> <p>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진흥·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p> <p>1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등의 위탁) 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농업생산기반 정비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량·설계·공사감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 및 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p>	<p>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p>	<p>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제65조(빈집에 대한 유지등의 책무) 소유자들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p> <p>제28조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9조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p>	<p>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p> <p>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 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p> <p>2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p> <p>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p> <p>2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수신부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별) ①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異動)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뒤따르는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 후 지체 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토지 분할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한다.</p> <p>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p>	<p>인을 받아 제16조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p> <p>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p> <p>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p> <p>3. 천체지면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2조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p>고 및 확인·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제2조제7호제12호의2에 따른 특정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0조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p>	<p>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 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p> <p>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p> <p>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p> <p>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4조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한 환경계획,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사업시행지역 토지와 연안해면은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또는 등적을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나 등적을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나 등적을 한 신청인이 확정일부(確定日附)가 있는 서류로써 환경계획,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고시 전에 등기 또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5조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수몰이주민(저수지 축조·개수 또는 보수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하여야 한다.</p> <p>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p> <p>제31조제65조의5(정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정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p>	<p>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p> <p>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p> <p>31.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적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25조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26조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p> <p>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p>	<p>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p>	<p>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p> <p>② 제17조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p> <p>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p> <p>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점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p>
<p>제26조제124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농어촌정비구역에 우선적으로 연계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제27조제125조(농어촌 정비협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간에 농어촌정비사업이 농어촌지역에서의 교육·의료·교통·문화 및 환경 등 개발업무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정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정비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있다.</p> <p>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등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p> <p>제27조제126조(수리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 제11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p>	<p>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p>	<p>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26조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p> <p>① 제14조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5장 한계농지등의 정비</p> <p>제28조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 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 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p> <p>제29조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 류) 제31조제94조에 따라 한계농 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 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 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농 어촌생활환경 정비법」에 따른 농 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정</p>	<p>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수리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 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 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p>	<p>야 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 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 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 여야 한다.</p> <p>제32조제65조의6(이행강제금) ①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65조의5 에 따라 철거, 수리 등 정비명령 을 받은 후 건축, 개보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기간까지 그 정비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빈집철거</p>	<p>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행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 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 다고 인정하면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은 의견을 들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7조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에 관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헌관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p>따라 경비 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채 납치분의 예에 따라 정수할 수 있다.</p> <p>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p> <p>제28조제127조(무단점용료의 정수)</p> <p>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p>	<p>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정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정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p>	<p>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③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p> <p>제28조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30조제1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료를 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p>	<p>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명령을 받은 자가 정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제33조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31조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민집의 소유자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16조</p>	<p>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78조제1항·제14조제82조제2항 및 제15조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p> <p>2.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제14조제82조제2항 및 제15조제</p>
<p>제31조제1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의 지정 및 고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②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있다.</p> <p>제29조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p> <p>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 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 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 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p>	<p>제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 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 다.</p> <p>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관리·운영 등</p> <p>제34조제106조(인·허가 등의 의제)</p> <p>① 제10조제58조 또는 제11조제59 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 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p>	<p>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 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 ① 제31조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 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계 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p>	<p>제4장 환지 및 교환·분할·합병 등</p>	<p>제29조제117조(지정 해제) ① 제14조</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제33조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제2항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한계농지등의</p>	<p>제30조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비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p> <p>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p> <p>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p> <p>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p>	<p>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p> <p>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p>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p>	<p>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p> <p>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p> <p>③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정비사업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4조제97조(준용규정) 제29조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분할·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법, 제4장(제30조부터 제56조까지)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5조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p> <p>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1조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p> <p>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p>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p> <p>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p> <p>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p> <p>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p> <p>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동</p>	<p>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p> <p>4. 삭제</p> <p>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p> <p>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p> <p>7. 「공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p> <p>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p>	<p>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30조(준용규정)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 정비사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본다.</p> <p>제31조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 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농업인 및 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p>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 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p> <p>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 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 (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 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 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 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 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5조제 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p>	<p>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 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 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p> <p>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 고</p> <p>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p>	<p>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점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 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 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제36조제 499조(투자)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 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p> <p>제37조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33조제96조에 따라 지정 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p>			<p>제32조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제7조제75조제5항에 따른 농어 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취소</p> <p>2. 제22조제89조에 따른 농어촌관</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33조제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38조제105조(사업지구의 고시 등) 제31조제94조 또는 제32조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p>	<p>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p> <p>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p> <p>제31조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그 사업의 성질상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농</p>	<p>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p> <p>1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p> <p>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p> <p>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p>	<p>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p> <p>3. 제28조제116조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조치</p> <p>제33조제12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7장 벌칙</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조에 따른다.</p> <p>제39조제106조(인·허가 등의 의제)</p> <p>① 제33조제96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로 한 것으로 본다.</p> <p>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p>	<p>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환지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해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p>	<p>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p> <p>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p> <p>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p>	<p>제34조제1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7조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18조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p> <p>3. 제20조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22조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또는 신고</p> <p>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p>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법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p> <p>4. 삭제</p>	<p>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제정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p>	<p>1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p> <p>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p> <p>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p> <p>2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p> <p>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p>	<p>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p> <p>5. 제22조제8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작한 게시물·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p> <p>제35조제13조(양벌규정) 범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p> <p>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p> <p>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p> <p>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p>	<p>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p> <p>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p> <p>1.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주소·성명·지번</p>	<p>2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p> <p>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p> <p>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p> <p>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p>	<p>니하다.</p> <p>제36조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7조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18조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18조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p> <p>3. 제19조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p> <p>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 고</p> <p>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 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점도구역 (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의 협의 또는 승인</p> <p>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p>	<p>(地番) 및 지목(地目) 등 단순 한 기계 사항의 착오 및 누락</p> <p>2.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외의 권 리 및 처분 제한의 변경 또는 설정</p> <p>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사 도지사가 제7항 단서에 따라 농 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 터 환지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p> <p>제32조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농 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p>	<p>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 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안 료의 신고</p> <p>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 인 또는 신고</p> <p>31.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 16조·제24조·제27조 및 제34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 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 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p>	<p>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을 한 자</p> <p>4. 제21조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5. 제22조제89조·제4항에 따른 조 치를 방해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1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p> <p>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p> <p>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p> <p>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p>	<p>환지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인이 환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농어촌공사 2. 3명 이상의 환지사(換地士)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p>제33조제28조(환지사의 자격) ① 제32조제27조제2호에 따른 환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여 환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p>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p> <p>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p> <p>1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p> <p>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p>	<p>견인</p> <p>2.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p> <p>3.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제35조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34조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p>	<p>제35조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36조제71조(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설계</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천적용 등의 허가</p> <p>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 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p> <p>21. 「수산지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p> <p>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p> <p>2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p>	<p>제36조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32조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p> <p>제37조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기술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37조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호</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p> <p>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p> <p>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p> <p>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p> <p>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3.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고 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31조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p>	<p>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③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4호 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p> <p>31.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적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적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p>	<p>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9조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p>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제1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② 제17조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p> <p>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신고</p> <p>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신고</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경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p>	<p>시설의 용지</p> <p>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p> <p>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금액을 지급하</p>	<p>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p> <p>가. 제9조제57조제1항에 따른 인가</p> <p>나. 제6조제54조제1항·제9조제57조제2항·제11조제59조제2</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군수·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40조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p> <p>① 제31조제94조 또는 제32조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p>	<p>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p> <p>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p>	<p>항에 따른 승인</p> <p>2. 사정이 바뀌어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제13조제61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행자는 이 법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1조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p>	<p>다.</p> <p>제40조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30조제25조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지상권·임차권 및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p>	<p>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제117조(지정 해제) ①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1. 제11조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p> <p>2. 지역·지구등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p> <p>③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p> <p>③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p>	<p>진 자가 있으면 그 권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조에 따른 환지 지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 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환지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p>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p>제42조제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p>	<p>제41조제36조(국·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p>	<p>제40조(준용규정)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은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p> <p>제41조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p>	<p>제5장 보 칙</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95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사정이 바뀌어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제33조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p>	<p>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제42조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② 제39조제34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31조제26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p>	<p>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제42조제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3. 제9조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제17조(지정 해제) ① 제31조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1.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p>	<p>취득한 것으로 본다.</p> <p>③ 제41조제36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⑤ 제31조제26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p> <p>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p>	<p>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p> <p>4. 제31조제65조의5 제1항에 따른 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령</p> <p>7. 제38조제116조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조치</p> <p>제43조제129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09조제1항,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4조제6항 및 제22조제115조제1항·제2항(제15조제63조에 따라 준용되어 적용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p> <p>2.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서의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p> <p>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 칙</p>	<p>에게는 제45조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p> <p>제43조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p> <p>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p>	<p>규정에 따른 별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별 칙</p> <p>제44조제130조(별칙) ① 제19조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25조제6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5조제131조(양벌규정) 범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44조제119조(보고와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5조에 따라 환지계획에 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외</p>	<p>제44조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6조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45조제120조(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가 농어촌정비사업에 관 하여 토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 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와 연안해면 의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 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 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의 임 직원이나 그 위탁을 받은 자 4. 환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 	<p>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 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 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중 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 용·수익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경우에는 중전의 토 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 진 자는 중전의 토지를 사용하거 나 중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 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 부터 제31조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 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 에서 수익하지 못한다.</p> <p>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5조제3 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 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 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9조제2 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 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 료를 제출한 자 4.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20조에 따른 측량이나 검사를 거부하 거나 방해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토지 및 연안 해면을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군·구·읍·면·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도서의 열람이</p>	<p>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p> <p>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4조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p>	<p>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나. 복사 또는 등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관서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p> <p>제46조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조사하여 결정한다.</p> <p>제45조제40조(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p> <p>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47조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116조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48조제12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7조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1조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환지 처분과 관련된 토</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49조제130조(별칙)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0조제131조(양벌규정) 범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p>	<p>지 및 건물의 등기를 축탁(囑託)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등기를 축탁하기 위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를 갈음하여 변경등기를 축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로 본다.</p> <p>③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48조제43조(교환·분할·합병의 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니하다.</p> <p>제51조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8조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p>2. 제22조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p> <p>3. 제32조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p>	<p>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할·합병(이하 “교환·분할·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p> <p>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p> <p>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자</p> <p>4. 제34조제120조에 따른 측량이 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p>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49조제44조(교환·분할·합병의 결정 방법) ① 제48조제43조에 따라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작성할 경우에 농지 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면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면적 및 가격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그 권리가 임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정하지 못한다.</p> <p>③ 농지 소유권의 교환·분할·합</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병계획에는 교환·분할·합병으로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환·분할·합병 계획의 결정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제45조(교환·분할·합병의 효 과) 제48조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할·합병계획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되고 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며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되고, 지역권(地役權)은 설정되거나 소멸된다.</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51조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할·합병)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할·합병을 할 때에는 제49조제44조와 제50조제45조를 준용한다.</p> <p>제52조제47조(교환·분할·합병의 청산금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8조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분할·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농어촌공사는 제48조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분할·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p> <p>제53조제48조(지료 등의 감액·반환 또는 증액 청구)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p> <p>제54조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借主)는</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p> <p>제55조제50조(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31조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p> <p>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제48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56조제51조(지료 등의 청구 제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5조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53조제48조부터 제</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55조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p> <p>제5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관리·운영 등</p> <p>제57조제105조(사업지역·지구의 고시 등) 제7조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구역·단지·지구(이하 “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58조제106조(인·허가 등의 의제)</p> <p>① 제7조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p> <p>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p> <p>4. 삭제</p> <p>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p> <p>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p> <p>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p> <p>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시계획의 인가</p> <p>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p> <p>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의 인가</p> <p>1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지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p> <p>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p> <p>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p> <p>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p> <p>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지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p> <p>17.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p> <p>1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p> <p>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지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 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p> <p>21. 「수산지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p> <p>2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p> <p>2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p> <p>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업계획의 승인</p> <p>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p> <p>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p> <p>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p> <p>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인 또는 신고</p> <p>31.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경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59조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다고 인정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들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60조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③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출 수 있다.</p> <p>제61조제16조(허가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p> <p>가. 제27제26조 제1항·제48조제43조 제2항에 따른 인가</p> <p>나. 제23조제23조 제1항에 따른 허가</p> <p>다. 제7조제9조 제7항·제12조제14조 제2항·제24조제24조 제1항에 따른 승인</p> <p>2. 사정이 바뀌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제7조제9조 제8항에 따른 승인</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 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62조제17조(지정 해제) ① 지역·지구등은 지역·지구등에서의 해</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당 사업이 완료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③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해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63조(준용규정)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본다.</p> <p>제64조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제65조제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제30조 본문에 따른 환지사 자격의 취소 2. 제37조제32조에 따른 환지업무 대행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3. 제61조제116조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조치 <p>제66조제129조(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사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p> <p>제67조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7조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 		

(가칭)농어촌경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p> <p>③ 제17조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68조제13조(양벌규정) 범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p>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9조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제63조에 따라 준용되어 적용된 경우에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10조제2항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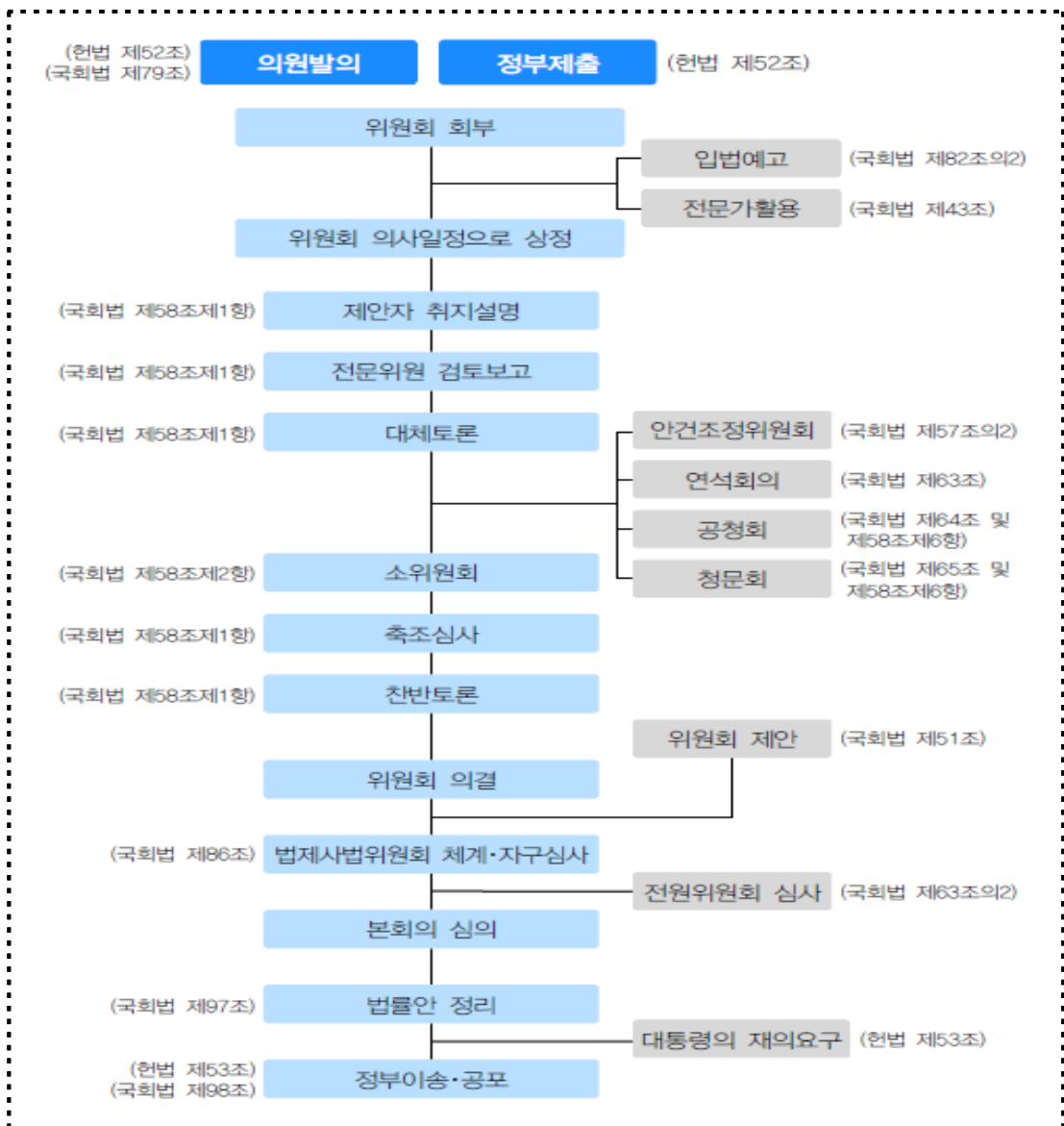
(가칭)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가칭)농업생산기반 정비법	(가칭)농어촌생활환경 정비법	(가칭)농어촌산업 육성법
	<p>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p> <p>3.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p> <p>4. 「농어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20조에 따른 측정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1. 입법절차 및 추진전략

(1) 국회의 입법절차

-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의 경우 모두 현행 입법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참고로 우리나라 입법절차의 개요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19】 우리나라 입법절차



[2] 정부입법의 추진

- 농어촌정비법 분법 개정안을 2020년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안한다는 전제에서 관련절차를 살펴보면, 관계부처/당정협의, 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의 일반적인 입법절차로 추진해야 함

【표-55】 정부입법 추진 계획 및 절차(2020년 추진)

단계	내용	세부계획
(1단계) 입법계획 수립 /법률안 입안	•입법안 마련/ 법리적 검토 완료	•3월말 : 농어촌정비법 분법시안 관련 정부 입법 안 마련 •개정수요사항·제도도입사항 검토
(2단계) 관계부처/당정 협의	•부처별 입장반 영 •당정의견 반영	•평균 30일~60일 소요 •당정의견 수립 •5월말 : 부처협의 및 정부안 확정
(3단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와 동시진행 가능	•평균 40일~60일 소요 (단축가능) •법제처 심사 동시 진행 가능 •7월말 : 입법예고 완료
(4단계) 규제심사/법제 처심사	•동시진행 가능	•규제심사(평균 15일~20일 소요) •법제처심사(평균 20일~30일 소요) •8월말 : 최종 법안 완성
(5단계) 차관회의/국무 회의 심의	•약 7일~10일 /약 5일	•국무회의 심의·대통령재가 이후 국회로 이송 (평 균 7일~10일 소요) •2020년 9월 정기국회 정부발의
▶상기 정부입법 발의절차 경우 이후 이하의 의원입법절차로 연계(정부발의안의 국회제 출 이후 의원입법절차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로 연계) ▶의원입법의 경우 상기 절차 없이, 이하의 의원입법 절차로 진행		

[3] 의원입법의 추진

(가) 법률안의 제출

- 농어촌정비법 분법의 경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며, 분법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함
- 즉, 해당 국회의원 의원실과의 업무연락, 대표발의자 섭외 이후,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공동발의하게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입법취지 및

입법필요성 설명, 쟁점사항 검토, 자구수정 등이 행해짐

(나) 위원회 회부 및 심사

○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제안자(발의의원) 취지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법률안의 필요성·문제점에 관한 대체토론의 순으로 진행됨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전문적·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함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로부터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심사·보고 등을 통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됨

○ 그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소위원회 심사결과가 보고되고, 소관 상임위원회 축조심사→원안의결·수정의결·폐기·대안의결 여부에 대하여 표결함

* 위원회 축조심사는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이 아닌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음

(다) 법사위 및 본회의 심사

○ 법사위에서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 타법과의 저촉 여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 일관성 등 자구를 검토함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후 그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법률안 심사보고서를 작성, 국회의장에게 제출함

○ 일반적으로 법안이 법사위에 제출된 이후에는 법사위의 법안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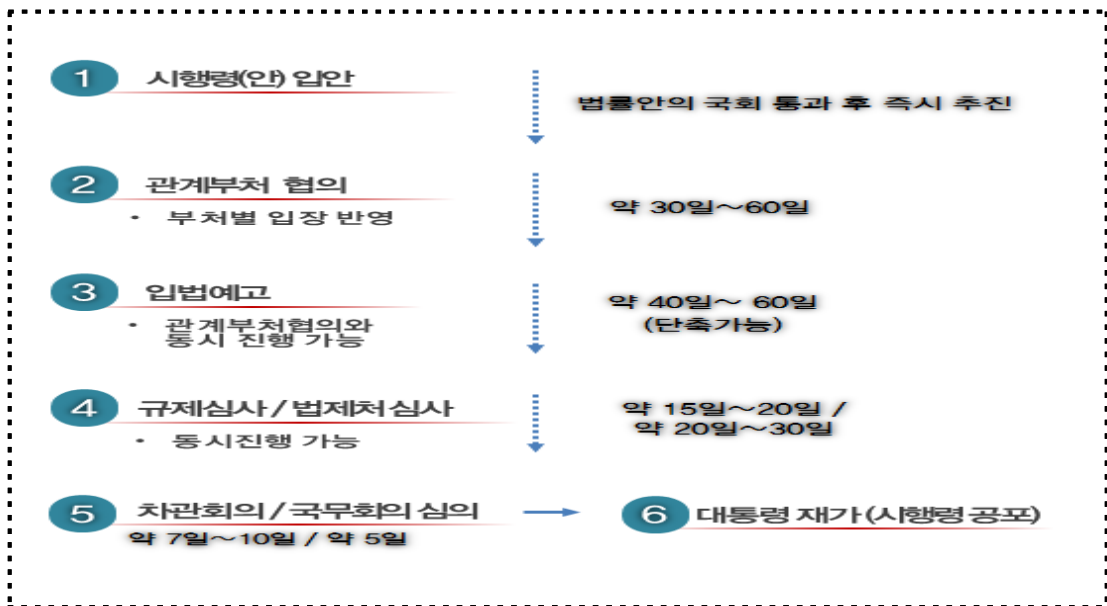
이외에는 수정사항의 요청이 불가능하고, 쟁점법안이 아니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거의 변수 없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음

- 본회의에서는 심사 보고 또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함

(라) 하위법령 개정절차

- 국회의 법안 추진과정에서도 개략적인 시행령 초안은 법안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행령의 개정절차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20】 농어촌정비법 분법 개정안 시행령 추진절차



2.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1) 분법의 기대효과

- 농어촌정비법의 분법을 통해서 ㉠ 법령에 대한 해석·운용자 및 수범자의 이해도·접근성 제고, ㉡ 법규범의 해석·운용상 혼선예방 및 관련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 급격한 개편의 역효과 방지 및 농어촌 관계법의 독자적인 입법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그림-21】 농어촌정비법 분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구분	분법의 필요성	분법의 기대효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산업 육성 등 <u>다양한 분야의 사항을 단일법률(농어촌정비법)에서 규율함으로써, 법률의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도가 저하됨</u> •<u>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u> 세부 분야 또는 유사 성격의 분야별로 <u>농어촌정비법을 분법할 필요가 있음</u> 	<p>법령에 대한 해석·운영자 및 수법자의 이해도·접근성 제고</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식품기본법(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근거법), 농어촌정비법(절차법)의 <u>기능적 성격이 모호(프로그램규정과 실체규정이 혼재)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의 한계로 작용함</u> •농촌융합산업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는 유사한 내용이 중복적·분산적으로 규정됨으로써, <u>체계적인 정책추진의 한계로 작용함</u> 	<p>법규범의 해석·운영상 혼선 예방 및 관련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농어촌 관계법의 급격한 전면개편의 역효과(실무적 여건, 관계부처와의 관계 등)를 고려하여 <u>농어촌정비법의 전략적 분법을 통하여 향후 입법체계 정비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u> •또한 유사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추진체계의 일원화, 개별법 분법을 통한 복수법화 등 <u>농어촌 관계법의 연혁적 특징 및 독자적 입법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u> 	<p>급격한 개편의 역효과 예방 및 농어촌 관계법의 독자적인 입법문화 존중·유지</p>
종합	<p>특정분야 관련사항의 망라적 규정→법령내용·체계의 복잡화→일반국민의 이해·접근근관성→각 분야 및 기능별 전략적 분법→법령의 준수성·실효성 및 관련 행정·정책의 체계성·효율성 강화</p>	

[2] 정비의 향후과제

(가) 연구의 한계

- 이 연구는 “농어촌정비 관련법령 입법체계 정비방안”이 아니라 “농어촌정비법 분법방안”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현행 농어촌정비법의 “기계적 분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음
- 다만, 농어촌 관련법령의 전반적 입법체계 정비의 경우, 관련법령의 입법연혁과 실무적 상황 및 급격한 개편으로 인한 역효과 등을 고려하면, 농어촌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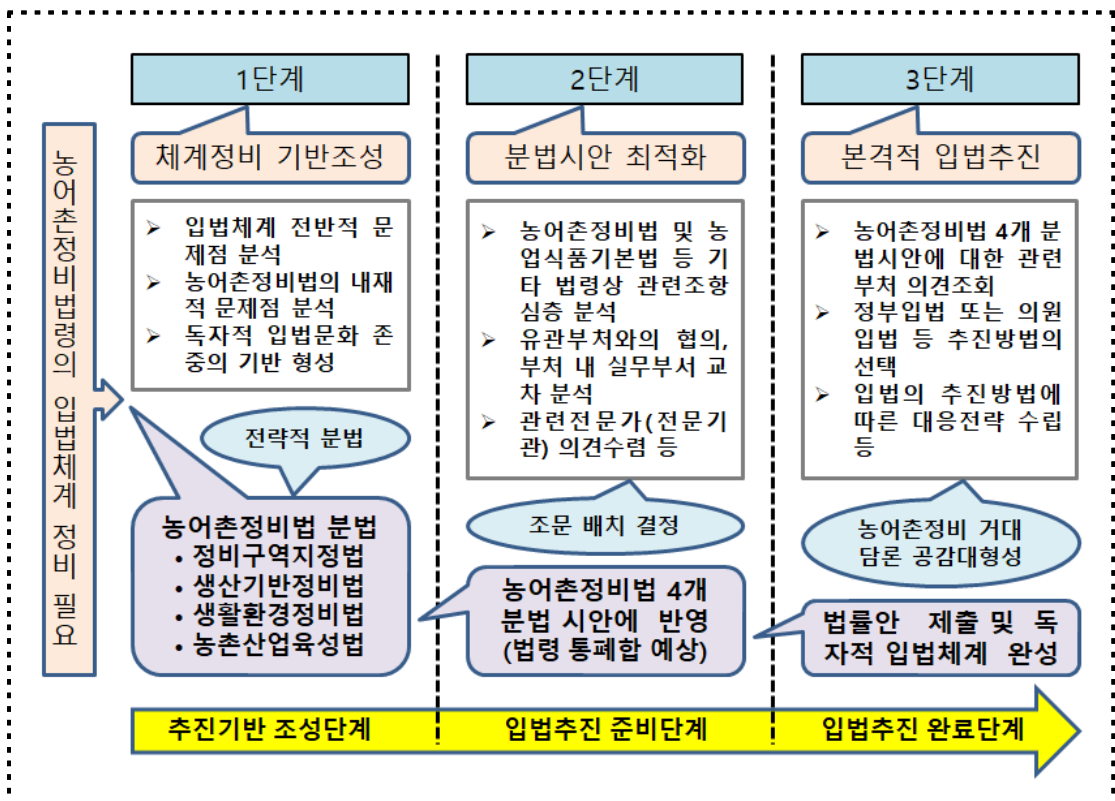
법의 전략적 분법(기계적 분법)을 통한 기대효과도 단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예컨대,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촌융합산업법, 도농교류법 등 관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대다수의 관련조항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재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을 선택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경우, 과연 분류된 관련조문을 어디에 재배치하여 담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관련조문의 “담을 그릇의 부재”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임
- 또한 농지법, 농외소득법 등 더욱 많은 농어촌정비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담을 그릇의 부재”라는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게 됨
- 그렇다고 하여 농어촌정비의 핵심적 법률에 해당하는 농어촌정비법을 그대로 둔 채, 일부개정 방식으로 체계정비를 선택하는 경우, 실무환경적·입법기술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우선 과연 관련조문을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명확하게 분리하여 재배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임기응변적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으며, 오히려 법령체계의 복잡성·산만성을 가중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농어촌정비 관련법령의 입법체계 정비에서는 복잡·다기하게 연계되어 있는 관련조문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즉 입법체계 정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연구는 농어촌정비법의 기계적 분법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농어촌정비 관련법령 입법체계 정비기반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농어촌정비법의 사업별 분법시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정비기반의 조성 후 앞으로의 농어촌정비 관련법령 입법체계 정비의 핵심적 과제는 “단계별 추진을 통한 독자적 입법문화의 구축·유지·발전”이라고 할 수 있음

(나) 단계별 추진

- 이 연구에서 농어촌정비 관련법령 입법체계 정비기반 조성 차원에서 제시한 “4개 분법시안”(1단계)에 기초하여, 앞으로는 “분법시안의 최적화”(2단계), “본격적 입법추진”(3단계) 등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단계별 추진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22】 입법체계 정비의 단계별 추진과제



- 첫째, 입법체계 정비기반 조성단계(1단계)로서, 입법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농어촌정비법의 내재적 문제점, 입법연혁 등을 분석하여 전략적 분법시안으로서 농어촌정비구역법, 농업생산기반정비법, 농어촌생활환경정비법, 농어촌산업육성법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조문 재배치의 틀을 제공함
- 둘째, 1단계에서 제시된 4개 분법시안의 최적화 단계(2단계)로서,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식품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관련조항 심층분석,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부처 내 실무부서 교차분석 등을 통하여 조문의 재배치를 결정하고, 농어촌정비법의 4개 분법시안에 각각 반영함으로써, 본격적인 입법추진을 위한 법령안을 마련함

* 2단계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의 4개 분법시안에 대한 관련조문의 재배치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법령의 통폐합이 예상되며, 적절한 조문의 재배치를 통한 최적의 입법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

- 셋째, 본격적인 입법추진 단계(3단계)로서, 1단계 및 2단계를 거쳐 최적화된 농어촌정비법의 4개 분법시안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등 추진방법 선택, 입법추진에 따른 전략적 대응 등을 통하여 입법을 완성함으로써, 농어촌정비에 관한 독자적인 입법체계·문화를 구축함
- 이상에서 서술한 단계별 추진과제는 단계별 최소 1년 정도, 총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정비의 거대 담론에 관한 공감대 형성도 병행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㉔) 외국법 조사

- 전술한 1단계, 2단계 및 3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농어촌정비에 관한 독자적인 입법체계의 내용적 보완, 즉 준비된 그릇에 담을 내용을 발굴하기 위하여 미리 외국법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외국법제 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한 법제에 관한 조사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대부분 10년 이상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국토계획 등 공간계획 중심의 조사에 그치고 있어, 농어촌정비에 관한 제도적 콘텐츠 발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
- 또한 전기·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육상 및 해상 운송 등 물류 분야, 관광 분야 등의 경우 방대한 외국법제 조사결과를 보유하고 있음에 대하여 농어촌정비 분야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요외국의 공간계획 관련법제에 더하여 농어촌정비 관련법제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 법령을 선정한 후,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그릇에 담을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주요외국의 농어촌정비 관련법제의 조사결과는 “주요외국의 농어촌정비 관련 법제(가칭)”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발간함으로써, 향후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